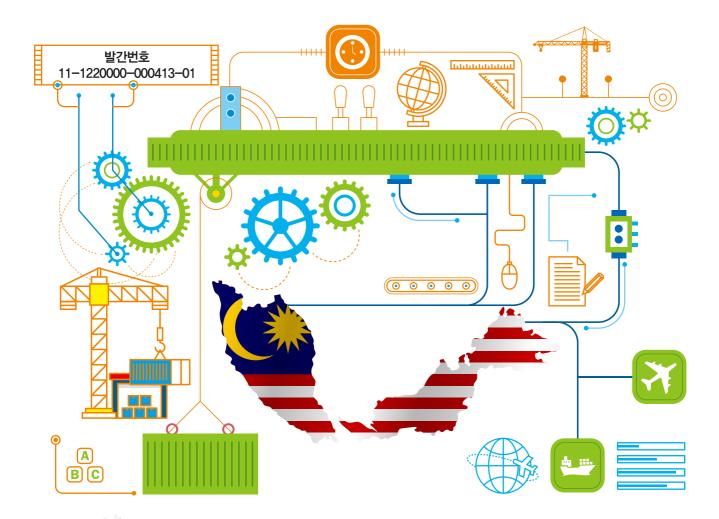


# 신남방국 통관 · 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말레이시아 Malaysia







# 신남방국 통관 · 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말레이시아 Malaysia









# Intro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여건 하에서도 한국의 2018년 수출액은 6천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세계 6위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이는 주력시장인 對중국·미국으로의 수출과 신(新)남방지역인 인도·아세안· 베트남 등으로의 수출이 함께 역대 최대 무역액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실현한 결과입니다.

특히 2018년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新)남방정책은 인도 및 아세안 10개국과의 협력수준을 높여 공조와 협력을 통한 상생번영을 추구하고, 나아가 한반도 경제 영역의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의 핵심 외교·경제 정책입니다.

이에 본 E-book은 2018년 旣발행된 베트남을 제외한 신(新)남방정책의 주요 국가 중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한-아세안 FTA의 활용 및 말레이시아의 최신 통관통상환경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작성 시점에서 최신 버전으로 필요한 내용을 수록 하였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무역환경 가운데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E-book을 말레이시아 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출처원문이나 관련법령,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책자가 말레이시아에 진출하려는 우리기업들의 FTA 활용 및 말레이시아 현지의 최신 통관통상 환경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CONTENTS

# 제 I 절 | 도 입

말레이시아 개황	08
말레이시아 주요 경제지표 ·····	09
말레이시아 시장환경·특성 ·····	10
말레이시아 FTA 체결현황 ·····	14
말레이시아 통관 · 통상환경 ·····	15

# 제Ⅱ절 | 말레이시아의 무역현황 및 한-아세안 FTA 활용방안

1. 말레이시아의 무역현황 ·····	18
2. 한-말레이시아의 교역현황	24
3. 한-아세안(말레이시아) FTA 개관 ·····	30
4. 한-아세안(말레이시아) FTA 적용절차 ·····	33
5. 한-아세안(말레이시아) FTA 활용 산업별 수출현황 ······	38
6 하_아세어(막게이시아) FTA 스추으마푸모 및 으마사언	.41

# 제Ⅲ절 | 말레이시아의 통관제도

1. 통관 조직 및 관련법	54
2. 수출입 통관	69
3. 관세일반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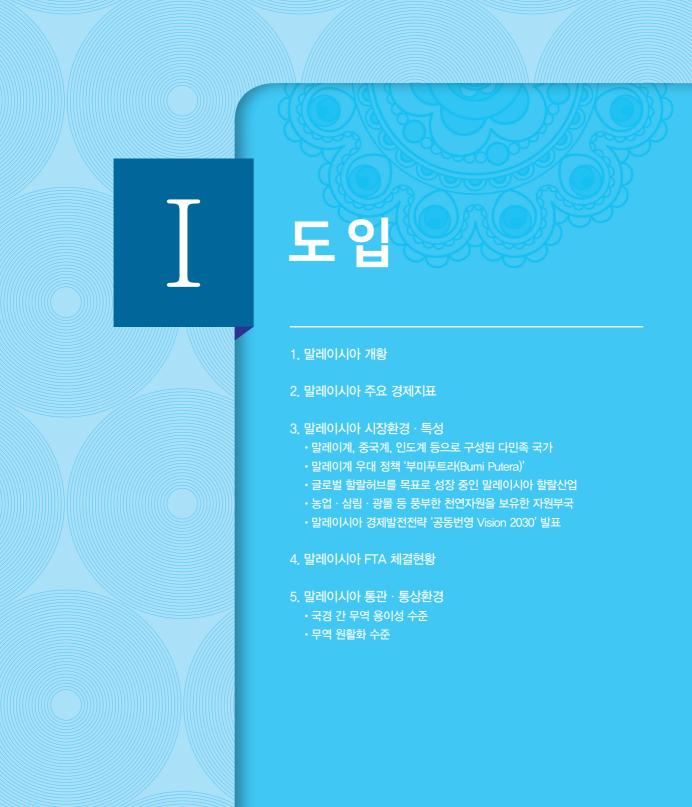
# 제Ⅳ절 | 말레이시아의 통상정책

1.	최근 말레이시아의 통상정책 동향	114
2.	말레이시아의 수입규제	<b>12</b> 4
3.	말레이시아의 수출규제	154
4	말레이시아의 전자상거래	156

# 제 V 절 | 우리기업의 對말레이시아 수출 애로 및 대응방안

1. 세관발행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사례	162
2.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오류로 인한 C/O 불인정 사례 ······	164
3. 품목분류 상이로 인한 애로 사례	168
4. 서명권자 불일치 관련 사례 ·····	169
5. 원산지증명서 소급발행문구 미기재에 따른 애로 사례	171





# 1. 말레이시아 개황



국가명	말레이시아 연방(Federation Malaysia)
수 도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인 구	약 3,153만(2018, World Bank)
면 적	330,345k㎡(한반도의 1.5배 / 2018, World Bank)
종 교	이슬람교(국교), 불교, 힌두교 등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 보장)
민 족	말레이계(62%), 중국계(22%), 인도계(7%), 기타(1%), 외국인(8%)
언 어	말레이어(공용어), 영어(상용어) 外 140개 이상 언어 사용
시 차	우리나라 기준 -1시간
정체(정부형태)	선임제 입헌군주제(의원내각제)
GDP(GDP 성장률)	약 3,543억 불(2018, World Bank) (4.7%)
화폐단위	링깃(MYR) [美 1달러(USD) = 4.14링깃, 2019년 평균(한국은행)]

자료: World Bank, Kotra,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Google map data(2019, 12월 기준)



# 2. 말레이시아 주요 경제지표(전망치)



주요지표	2018	2019	2020(f)	2021(f)
명목 GDP(억 달러)	3,586	3,653	3,815	4,095
실질 GDP 성장률(%)	4.7	4.5	4.4	4.9
1인당 명목 GDP(달러)	11,072	11,137	11,485	12,172
GDP 대비 투자 비중(%)	23.6	22 <u>.</u> 5	23.1	23.1
GDP 대비 저축 비중(%)	25.7	25.6	25.0	25.0
물가상 <del>승률</del> (%)	0.97	1.02	2.08	2,22
실업률(%)	3.3	3.4	3.4	3.4
수출증기율(상품, %)	6.8	-1.8	0.4	5.0
수입증기율(상품, %)	4.9	-4.2	2.6	4.5
수출증가율(상품 및 서비스, %)	3.3	0.4	0.9	4.4
수입증기율(상품 및 서비스, %)	4.1	-1.7	2.4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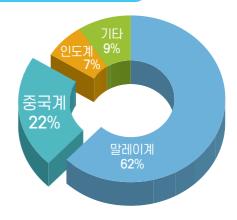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9년 기준

# 3. 말레이시아 시장환경 · 특성



## 말레이계(62%), 중국계(22%), 인도계(7%) 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sup>1)</sup>

- 그 중 약 22%의 비중을 차지한 중국계(화교)가 말레이시아 상권을 장악함
  - 이들은 동남아 화교 네트워크는 물론, 중국 본토와 대만, 홍콩 등지의 화교 경제권과도 연계되어있음
  - 따라서 말레이시아 시장 마케팅 활동에 있어 화 교와의 유대관계 형성은 매우 중요한 요인임



## 말레이계 우대 정책 '부미푸트라(Bumi Putera)'

- 말련 정부는 말레이계 자국민을 우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말레이계 말레이인을 우대하는 정책을 '부미푸트라(Bumi Putera)'정책이라고 함
  - 부미푸트라(Bumi Putera)는 말레이시아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말레이계 지분이 높은 기업들에게 은행대출 요건이나 이율 우대 적용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말함<sup>2)</sup>
- 따라서 말레이시아에서 프로젝트 공공 공사 관련 수주에 있어 말레이계 기업 우대 관행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실제 말레이시아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대기업들은 직수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부가 말레이계 즉 자국 기업에 가능한 많은 사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수입보다 중간수입업체를 통한 납품을 일반화하였기 때문임<sup>3)</sup>
  - 최근 부미푸트라 정책이 거의 없어졌다고는 하나, 국영기업이 발주하는 프로젝트나 공공 공사 수주 시에는 여전히 유효하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글로벌 할랄허브를 목표로 성장 중인 말레이시아 할랄산업4)

- 말레이시아는 국가 문화적 특성상 글로벌 할랄 허브로서의 가능성을 지님
  - 말레이 사회에서 이슬람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이에 이슬람의 기본 교리와 가치는 말레이 사회를 하나로 묶는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음
  - 1982년, 말레이시아 이슬람교 개발부(JAKIM)가 처음으로 할랄 인증을 시행한 이후, 현재 까지 JAKIM은 국제 할랄 인증의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음

## 할랄(Halal)이란?

- 할랄(Halai)은 이슬람 교도가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통칭하는 말이며, 할랄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서는 할랄 인증을 취득해야 함
- 할랄 인증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가공 과정의 준비, 재료 사용, 청소, 취급 및 가공을 모두 준수해야 함
- 말련 정부는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국가 문화적 특성을 활용해 자국 할랄시장을 글로벌 할랄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할랄 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 중임
  - '할랄산업 개발 마스터플랜(2008~2020)'은 말레이시아 할랄 산업과 이와 연계된 혁신· 무역·투자의 글로벌 성장을 목표로 한 정부의 대표적인 할랄 산업 육성 정책
  - 또한 11차 경제계획(11th Malaysia 2016-2020)에서는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 GDP 중 할랄산업의 비중을 8.7%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말레이시아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한국기업들은 할랄메카로 자리매김 하고자 하는 말레이시아의 정책적 접근과 할랄시장의 높은 성장전망에 발맞추어 경쟁력 있는 관련 산업 및 제품군의 개발이 필요함

# 농업 · 삼림 · 광물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sup>5)</sup>

- 말레이시아는 천연고무와 팜 오일의 주요 수출 국가로, 이 외에도 주석, 원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국가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고 있음
  - 국토의 50%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다양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원이 풍부하여 에너지 및 자원 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갖춤
- 팜 오일의 경우, 최근 화장품 및 바이오디젤의 주원료로 주목을 받으며 외국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말레이시아 천연자원 및 광물에 개발에 관심 있는 우리기업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들의 경우, 말레이시아 현지 회사들과 조인트 벤처를 구성할 수 있음
  -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대부분의 땅이 주 정부 소유이며, 주 정부 중에는 국내 및 해외 업체에게 채굴 허가를 주기 꺼려하는 곳들도 있어, 광업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탐사 허가권을 받고 주 정부로부터 채굴권을 받기까지 수년에 이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함

## 말레이시아 경제발전전략 '공동번영 Vision 2030' 발표<sup>6)</sup>

- 기존 말레이시아의 외자 유치를 통한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은 저비용 생산국의 등장에 따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음
  - 이에 말련 정부는 2019년 10월, 기존의 Vision 2020을 대체할 '공동번영 Vision 2030(Shared Prosperity Vision 2030)'을 발표함

# 〈공동번영 Vision 2030〉

-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 산업 다양성의 부족, 제조업 등에 첨단기술 도입 미비, 소득격차 확대, 저임금, 말레이시아인의 경제참여비중 저조, 부패와 권력남용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말레이시아의 2021년~2030년 장기 국가발전 로드맵으로 '공동번영 Vision 2030'을 추진함
- 이로 '공동번영 Vision 2030'에서는 주요 목표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눔: ① 모두를 위한 발전 실현(Development for All), ② 부·소득격차 해소(Addressing Wealth & Income Disparities), ③ 단결되고 번영하며 존엄 있는 국가 건설(United, Prosperous & Dignified Nation)
- 말레이시아에 진출(예정) 중인 우리기업은 공동번영 Vision 2030 주요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추진분야의 확인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성장 가능성 있는 산업 및 경제 분야를 가늠해 볼 수 있음

#### 말레이시아 공동번영 Vision 2030 전략적 추진분야 및 세부 목표

전략적 추진분야	세부 추진 목표(일부 예시)
(1) 기업 · 산업 생태계	<ul><li>제조업 · 서비스업 영위 첨단 중소기업 30% 신규 창출</li><li>각 산업부문별 부미푸트라 첨단 중소기업 비중 최소 20% 이상</li></ul>
(2) 핵심 경제성장활동	- 기계 · 장비 부문에 총 투자액의 40% 투자 - 이슬람금융허브2.0, 신재생에너지, 녹색경제 등 신규 경제성장활동 구축
(3) 인적자본	<ul><li>고숙련 일자리 및 미래경제 분야 부미푸트라 노동력 비중 확대</li><li>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훈련에 인적자원개발기금 40% 투자</li></ul>
(4) 노동시장 · 피고용자 보수	<ul><li>평균 인금인상률을 연간 생산성 증가율의 75%까지 인상</li><li>각 산업별 한도 설정을 통한 전체 외국인 노동자 수 축소</li></ul>
(5) 사회복지	<ul><li>능력기반 평균 임금비율</li><li>모든 지역 내 보육시설 설치</li></ul>
(6) 지역 포용성	<ul><li>클랑밸리 이외 새로운 경제거점 구축</li><li>국가 중요 인프라 개발계획(병원, 학교, 다리 등) 실현</li></ul>
(7) 사회적 자본	<ul> <li>사회적 자본 관련 평가지수(청렴 · 반부패지수, 범죄예방지수, 국민건강지수, 지역사회화합지수 등) 개선</li> </ul>

자료: KOTRA,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 홈페이지 및 말레이시아 정부 발표 내용

# 4. 말레이시아 FTA 체결현황



2019. 12월 기준

구분	상대국	발효일	기타
	일본	2006년 7월	
	파키스탄	2008년 1월	
	뉴질랜드	2010년 8월	
양자	인도	2011년 7월	
971	칠레	2012년 2월	
	호주	2013년 1월	
	터키	2015년 8월	
	EU	_	협상 중
	한국	2006년 7월	
	일본	2009년 2월	
다자	중국	2003년 7월	
(ASEAN)	인도	2010년 1월	
	호주 뉴질랜드	2010년 1월	
CPTPP	11개국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일본, 말레이시아)	2018년 3월	서명
RCEP	16개국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2019년 11월	협정문 타결 (인도 제외)

자료: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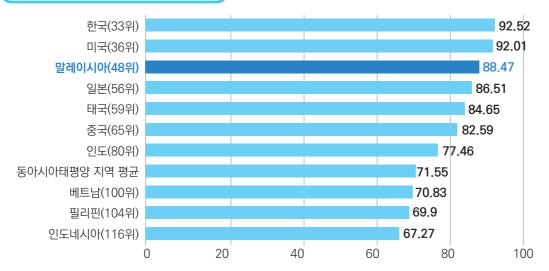
ōI

# 15

# 5. 말레이시아 통관·통상환경



## 국경 간 무역 용이성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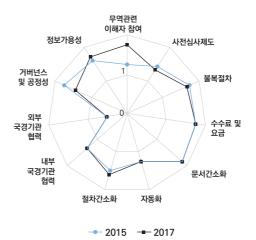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9 - Trading across Borders

## 무역원활화 수준

### 한국-말레이시아 무역원활화 수준 비교

#### 정보가용성 거버넌스 무역관련 이해자 참여 및 공정성 외부 사전심사제도 국경기관 협력 내부 국경기관 불복절차 수수료 및 절차간소화 자동화 문서간소화 <del>--</del> 한국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2015 대비 2017년 무역원활화수준



자료: OECD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검색일자: '19년 10월)





# 말레이시아의 무역현황 및 한-아세안 FTA 활용방안

- 1. 말레이시아의 무역현황
  - 말레이시아의 수출입 동향
  - 말레이시아 통화(MYR)가치 변화 추이
  - 말레이시아의 국가별 수출입 동향
  - 말레이시아의 품목별 수출 동향
  - 말레이시아의 품목별 수입 동향
- 2. 한-말레이시아의 교역현황
  -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수출입 동향
  -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교역 비중(세계)
  -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교역 비중(아세안)
  -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품목별 수출 동향
  -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품목별 수입 동향
- 3. 한-아세안(말레이시아) FTA 개관
  - 추진 경과
  - •체결 의의
  - 한-아세안 FTA 협정문 구성
  - 주요 내용 및 특징
- 4. 한-아세안(말레이시아) FTA 적용절차
  - 한-아세안(말레이시아) FTA 활용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C/O) 작성 시 유의사항
  - 말레이시아 특혜 원산지 제도
- 5. 한-아세안(말레이시아) FTA 활용 산업별 수출현황
  -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FTA 수출활용률(2018)
  -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산업별 FTA 활용 수출 현황(2018)
- 6. 한-아세안(말레이시아) FTA 수출유망품목 및 유망산업
  - ・對말레이시아 FTA 활용 수출유망품목 및 유망산업 추천
  - 말레이시아 수출유망품목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1. 자동차용 에어백 커버
- 2. 폴리에틸렌 필름
- 3. 알루미늄 합금의 것
- 4. 알루미늄 박의 것
- 5. 유압브레이커
- 6. 조제접착제
- 7. 정제한 구리의 선
- 8. 배전반
- 9. 프레싱용 공구
- 1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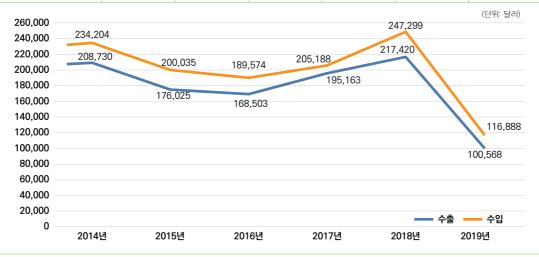
# 1. 말레이시아의 무역현황



### 말레이시아의 수출입 동향

[ 단위 : 백만불, % ]

구분	수출		수입		총교역액	
TŒ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수지
2019년 6월	116,888	_	100,568	_	217,456	16,321
2018년	247,299	20.5%	217,420	11.4%	464,719	29,879
2017년	205,188	8.2%	195,163	15.8%	400,351	10,025
2016년	189,574	-5.2%	168,503	-4 <u>.</u> 3%	358,077	21,071
2015년	200,035	-14.6%	176,025	-15.7%	376,060	24,011
2014년	234,204	2.1%	208,730	0.9%	442,934	25,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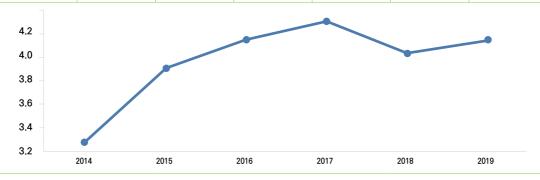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 ■ 최근 5년간 말레이시아 수출입 동향을 살펴본 결과, 2015년부터 수출입 모두에서 하락 세를 보이다가 최근(2017년) 다시 증가세를 회복함

- 2015년 이후 국제유가 하락과 이로 인한 경기침체 및 말레이시아 화폐(링깃화)의 가치하락으로 말레이시아 수출입은 '15년~'16년 연달아 각각 - 15%, -5% 가량 하락함
- 그러다 2017년,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말레이시아 화폐가치와 경기도 서서히 회복되어 수출입 모두 전년대비 약 11% 이상 상승하여 호조세를 회복하기 시작함

## 말레이시아 통화(MYR)가치 변화 추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 US 달러(\$) =	3.27	3.91	4.15	4.30	4.04	4.14



주1: '14~'19년 말레이시아 통화가치는 연평균 기준 자료임

주2: 소수자리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함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 ■ 최근 5년간 US 1달러 대비 말레이시아 링깃화 가치는 2015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7년 최대폭락 후, 현재는 가치가 서서히 회복 중임

- '14년~'17년 국제유가의 하락 및 말레이시아 경제 침체로 링깃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였으나, '17년~'18년 사이에는 국제유가의 안정과 말레이시아의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화폐가치가 다소 회복추세를 보임 $^{7}$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링깃화는 현재도 아시아 개도국들의 통화가치 하락을 대표하는 통화로 평가받고 있음



# ■ 말레이시아 링깃(MYR)<sup>8)</sup>

- 말레이시아 링깃(Malaysia Ringgit) 또는 링깃은 말레이시아 통화 의 공식명칭으로 약자는 MYR 또는 RM을 쓰고 있음
- 1말레이시아 링깃(MYR)은 원화로 약 282.94원 정도에 해당함 (2019.11월 기준)

## 말레이시아의 국가별 수출입 동향

[ 단위 : 백만불, % ]

		수	출			수 입					
순	국가	금액			비중	순	국가	금액			비중
위	4/1	2017년	2018년	합계	112	위	4/1	2017년	2018년	합계	비ठ
	전체	205,188	247,299	452,487	100%		전체	195,163	217,420	412,583	100%
1	중국	29,410	34,381	63,791	14%	1	중국	38,323	43,331	81,654	20%
2	싱가포르	23,246	34,447	57,693	13%	2	싱가포르	21,628	25,489	47,117	11%
3	미국	20,669	22,527	43,196	10%	3	미국	16,113	16,085	32,198	8%
4	일본	17,413	17,127	34,540	8%	4	일본	14,807	15,744	30,551	7%
5	홍콩	11,158	18,477	29,635	7%	5	대만	12,762	15,732	28,494	7%
6	태국	11,763	14,073	25,836	6%	6	태국	11,214	12,042	23,256	6%
7	인도	8,038	9,004	17,042	4%	7	인도네시아	8,797	9,972	18,769	5%
8	한국	6,681	8,334	15,015	3%	8	한국	8,481	9,642	18,123	4%
9	베트남	6,437	8,479	14,916	3%	9	인도	6,265	6,550	12,815	3%
10	호주	5,497	8,258	13,755	3%	10	독일	6,120	6,539	12,659	3%

자료: 한국무역협회

# ■ 최근 2년간 말레이시아의 국가별 수출입 동향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입 모두 10위권 내에 위치한 말레이시아 주요 교역국 중 하나로 나타남

- (수출) '17~'18년 말레이시아의 총 수출액은 약 USD 4,524억불로, 주요 수출 상대국은 중국 (637억불, 14%), 싱가포르(576억불, 13%), 미국(431억불, 10%) 등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는 약 150억불(3%)로 말레이시아 주요 수출 대상국 중 8위를 차지함
- (수입) '17~'18년 말레이시아의 총 수입액은 약 USD 4,125억불이며, 주요 수입 상대국은 중국(816억불, 20%), 싱가포르(471억불, 11%), 미국(321억불, 8%) 등으로, 우리나라는 약 181억불(4%)로 말레이시아 주요 수입 대상국 중에서도 8위를 차지함

# 말레이시아의 품목별 수출 동향

[ 단위 : 백만불, % ]

	[ 년위 : 맥난울, % ]						
			수 출				
순위	산업분류	HS코드	품명	금	액	'17–'18	
프퓌	ਦੁਸ਼ਦਜ	11011	百〇	2017년	2018년	증감률	
			전체	205,188	247,299	20.5%	
1	반도체	854231	전자집적회로 –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17,802	26,329	47.9%	
2	석유제품	271019	기타 석유와 역청유 및 조제품 (원유 제외)	8,452	12,455	47.4%	
3	반도체	854239	전자집적회로 – 기타(프로세서와 컨트롤러 · 메모리 · 증폭기 제외)	6,992	10,831	54.9%	
4	천연가스	271111	천연가스(액화)	9,410	9,925	5.5%	
5	원유	270900	석유와 역청유(원유)	6,177	9,434	52.7%	
6	식물성물질	151190	팜유의 분획물	7,677	6,734	-12.3%	
7	반도체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LED)	3,936	4,512	14.6%	
8	의류	401519	고무제 장갑, 벙어리 장갑(외과용 제외)	3,243	4,010	23.7%	
9	컴퓨터	847180	사운드카드 등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3,078	3,944	28.1%	
10	반도체	854232	전자집적회로 – 메모리	2,297	3,864	68.2%	
11	석유제품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3,374	3,783	12.1%	
12	컴퓨터	847170	기억장치	3,482	3,499	0.5%	
13	컴퓨터	852351	반도체 매체 – 솔리드 스테이트 (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2,610	3,162	21.1%	
14	반도체	854290	전자집적회로 – 부 <del>분품</del>	2,950	3,028	02.7%	
15	컴퓨터	847330	제8471호(자동자료처리기계)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2,281	2,563	12.4%	
16	유선통신기기	851762	음성 ·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 · 수신용 등 기기	2,431	2,479	2.0%	
17	사무기기	844399	인쇄기 · 복사기 · 팩시밀리 등의 부분품과 부속품	2,441	2,459	0.7%	
18	식물성물질	151110	팜유(조유)	1,767	1,953	10.6%	
19	반도체	854233	전자집적회로 – 증폭기	337	1,707	406.3%	
20	식물성물질	151620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1,887	1,655	-12.3%	

주: 2018년 기준 수출금액 상위 20대 품목[산업분류 MTI 3단위, HS 코드 6단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 말레이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HS 854231 등), LED(HS 854140), 컴퓨터(HS 847180 등) 및 통신기기(HS 851762) 등의 전자기기류와 원유(HS 270900) 및 석유제품 (HS 271019), 팜유 등 식물성 기름(HS 151190, 151620 등)의 천연자원 관련 제품으로 나타남
  - '18년 기준 전년대비 수출이 급증한 품목은 반도체 제품류이며, 전자집적회로의 증폭기(HS 854233)의 경우 '17년 337백만불이었으나 '18년 1,707백만불로 수출액이 크게 증가한 바 있음
- 말레이시아 산업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원유, 천연가스, 팜오일, 천연고무, 주석 등이 풍부하며 동남아 주요 산유국이자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주요한 LNG 공급원임
  - 동시에 말레이시아는 글로벌 기업이 밀집되어 있어 전기 ·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실적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말레이시아의 품목별 수입 동향

[ 단위 : 백만불, % ]

	수 입								
순	산업분류	HS코드	품명	금	.액	'17–'18			
위	선립군규	<u>⊔277</u> —	품경	2017년	2018년	증감률			
			전체	195,163	217,420	11.4%			
1	반도체	854231	전자집적회로 -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12,319	12,358	0.3%			
2	석유제품	271019	기타 석유와 역청유 및 조제품 (원유 제외)	9,768	11,620	19.0%			
3	반도체	854239	전자집적회로 – 기타(프로세서와 컨트롤 러 · 메모리 · 증폭기 제외)	6,667	10,117	51.7%			
4	석유제품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6,934	8,587	23.8%			
5	반도체	854290	전자집적회로 – 부분품	8,508	7,862	-7.6%			
6	원유	270900	석유와 역청유(원유)	3,953	5,712	44.5%			
7	반도체	854232	전자집적회로 – 메모리	3,423	4,189	22.4%			
8	석탄	270119	그 밖의 석탄	2,464	2,936	19.2%			
9	무선통신기기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2,355	2,666	13.2%			

			수 입			
순	산업분류	HS코드	품명	금	'17–'18	
위	СВЕТ	110	80	2017년	2018년	증감률
10	항공기 및 부품	880240	자체중량 15,000kg 초과의 비행기와 기타 항공기	1,820	2,247	23.4%
11	컴퓨터	847330	제8471호(자동자료처리기계)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1,975	2,246	13.8%
12	기구부품	853400	인쇄회로	1,944	2,216	14.0%
13	동제품	740311	정제한 구리 - 음극과 음극의 형재	2,131	2,022	-5.1%
14	금은 및 백금	710812	가공하지 않은 모양의 금	2,063	1,882	-8.8%
15	항공기 및 부품	880330	비행기 · 헬리콥터의 기타 부분품	1,459	1,601	9.7%
16	자동차	870323	승용자동차	1,128	1,473	30.6%
17	컴퓨터	847170	기억장치	1,144	1,345	17.5%
18	알루미늄	76011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809	1,296	60.2%
19	반도체	854190	반도체 디바이스의 부분품	1,410	1,240	-12.0%
20	농약 및 의약품	300490	기타 의약품	925	1,111	20.1%

주: 2018년 기준 수입금액 상위 20대 품목[산업분류 MTI 3단위, HS 코드 6단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 말레이시아 '17년, '18년 전체수입은 각각 1,951억불, 2,174억불로, '18년 기준 전년대비 11.4% 증가한 수치임
- 말레이시아의 주요 수입 품목은 반도체류(HS 854231, 854239, 854290), 석유제품 (HS 271019, 271012), 컴퓨터(HS 847170 등) 및 원유(HS 270900), 석탄(HS 270119), 동제품(HS 740311), 금은 및 백금(HS 710812) 등으로 전기전자 제품과 천연자원의 수입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18년 말레이시아의 수입 상위품목 20개 중, 전자집적회로의 부분품(HS 854290), 동제품(HS 740311), 금은 및 백금(HS 710812), 반도체 디바이스의 부분품(HS 854190) 등 4개의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품목은 전년대비 수입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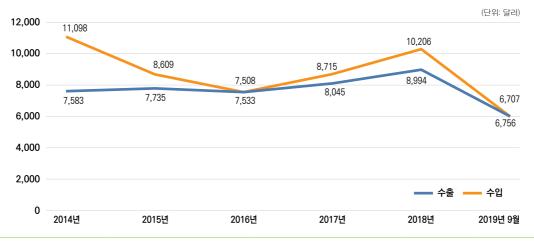
# 2. 한-말레이시아의 교역현황



###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수출입 동향

[ 단위 : 백만불, % ]

78	수	출	수	입	총교역액		
구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수지	
2019년 9월	6,756	0.1%	6,707	-10.1%	13,463	49	
2018년	8,994	11.8%	10,206	17.1%	19,200	-1,212	
2017년	8,045	6.8%	8,715	16.1%	16,760	<del>-</del> 670	
2016년	7,533	-2.6%	7,508	-12.8%	15,041	25	
2015년	7,735	2.0%	8,609	-22.4%	16,344	-874	
2014년	7,583	-11.7%	11,098	0.0%	18,681	-3,515	



자료: 한국무역협회

-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수출실적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14년: 76억불 → '18년:90억불), 수입은 '14년 최고치(110억불)를 기록함
  - '18년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사아 교역은 수출의 경우 전년대비 11.8%, 수입은 17.1% 증가하여 각각 90억불, 약 102억불을 기록함
  - 또한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말레이시아 제조업이 기술집약형 특징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발달한 우리나라 제조 기업들이 해외 이전기지로서 노동력이 풍부하고 동남아 시장의 중심에 위치한 말레이시아로 활발히 진출한데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됨

##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교역 비중(세계)

[ 단위 : 백만불, % ]

		수	출					수	입		
순 위	국가		금액		비중	순 위	국가	금액			비중
위	471	2017년	2018년	합계	미공	위	471	2017년	2018년	합계	미중
	전체	573,694	604,860	1,178,554	100%		전체	478,478	535,202	1,013,680	100%
1	중국	142,120	162,125	304,245	25 <u>.</u> 8%	1	중국	97,860	106,489	204,349	20.2%
2	미국	68,610	72,720	141,330	12.0%	2	일본	55,125	54,604	109,729	10.8%
3	베트남	47,754	48,622	96,376	8.2%	3	미국	50,749	58,868	109,617	10.8%
4	홍콩	39,112	45,996	85,108	7.2%	4	사우디	19,590	26,336	45,926	4.5%
5	일본	26,816	30,529	57,345	4.9%	5	독일	19,749	20,854	40,603	4.0%
6	대만	14,898	20,784	35,682	3.0%	6	호주	19,160	20,719	39,879	3.9%
7	인도	15,056	15,606	30,662	2.6%	7	베트남	16,177	19,643	35,820	3.5%
8	호주	19,862	9,610	29,472	2.5%	8	대만	18,073	16,738	34,811	3.4%
9	싱가포르	11,652	11,782	23,434	2.0%	9	러시아	12,040	17,504	29,544	2.9%
10	필리핀	10,594	12,037	22,631	1.9%	10	카타르	11,267	16,294	27,561	2.7%
11	멕시코	10,933	11,458	22,391	1.9%	11	쿠웨이트	9,594	12,794	22,388	2.2%
12	독일	8,484	9,373	17,857	1.5%	12	인도네시아	9,571	11,161	20,732	2.0%
13	인도네시아	8,404	8,833	17,237	1.5%	13	말레이시아	8,715	10,206	18,921	1.9%
14	말레이시아	8,045	8,994	17,039	1.4%	14	UAE	9,557	9,287	18,844	1.9%
15	태국	7,467	8,505	15,972	1.4%	15	싱가포르	8,905	7,974	16,879	1.7%

자료: 한국무역협회

# ■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의 對세계 수출입 비중에서 모두 15위권 내에 드는 주요 교역국에 해당함

- (수출) '17~'18년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은 약 USD 1조 1,785억불이며, 주요 수출국은 중국 (3,042억불, 25.8%), 미국(1,413억불, 12%), 베트남(963억불, 8.2%) 등으로, 말레이시아는 약 170억불(1.4%)로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 중 14위를 차지함
- (수입) '17~'18년 우리나라의 총 수입액은 약 USD 1조 136억불이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 (2,043억불, 20.2%), 일본(1,097억불, 10.8%), 미국(1,096억불, 10.8%) 등으로, 말레이시아는 약 189억불(1.9%)로 우리나라 주요 수입국 중 13위를 차지함

##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교역 비중(아세안)

[ 단위 : 백만불, % ]

		수	출					수	입		
순 위	국가	금액			비중	순	국가	금액			비중
위	<del>-</del> 1/1	2017년	2018년	합계	49	위	7/1	2017년	2018년	합계	119
Α	SEAN 전체	95,249	100,113	195,362	100%	Α	SEAN 전체	53,821	59,626	113,447	100%
1	베트남	47,754	48,622	96,376	49.3%	1	베트남	16,177	19,643	35,820	31.6%
2	싱가포르	11,652	11,782	23,434	12.0%	2	인도네시아	9,571	11,161	20,732	18.3%
3	필리핀	10,594	12,037	22,631	11.6%	3	말레이시아	8,715	10,206	18,921	16.7%
4	인도네시아	8,404	8,833	17,237	8.8%	4	싱가포르	8,905	7,974	16,879	14.9%
5	말레이시아	8,045	8,994	17,039	8.7%	5	태국	5,205	5,582	10,787	9.5%
6	태국	7,467	8,505	15,972	8.2%	6	필리핀	3,702	3,569	7,271	6.4%
7	캄보디아	604	660	1,264	0.6%	7	브루나이	795	610	1,405	1.2%
8	미얀마	573	534	1,107	0.6%	8	미얀마	463	537	1,000	0.9%
9	라오스	92	84	176	0.1%	9	캄보디아	261	314	575	0.5%
10	브루나이	64	62	126	0.1%	10	라오스	27	30	57	0.1%

자료: 한국무역협회

## ■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아세안 간 수출입 비중에서도 주요 상위 교역국에 해당

- (수출) '17~'18년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전체 수출액은 약 USD 1,953억불이며, 주요 개별 수출국으로는 베트남(963억불, 49.3%), 싱가포르(234억불, 12%), 필리핀(226억불, 11.6%) 등으로,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서 5위를 차지함
- (수입) '17~'18년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전체 수입액은 약 USD 1,134억불이며, 주요 개별수입국으로는 베트남(358억불, 31.6%), 인도네시아(207억불, 18.3%), 말레이시아(189억불, 16.7%) 등으로,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수입 비중에서는 3위를 차지함
-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및 세계교역에서 이미 우리나라의 주요한 교역국이지만, 추후 양자 FTA 발효 시 말레이시아와의 교역비중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 있음

#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품목별 수출 동향

[ 단위 : 백만불, % ]

			 수 출			· ¬c2, ~ ]
순			1 2	귿	·액	'17–'18
위	산업분류	HS코드	품명	2017년	· 2018년	증감률
		l	전체	8,404	8,833	5%
1	석유제품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304	776	155%
2	석유제품	271019	기타 석유와 역청유 및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원유 제외)	638	529	-17%
3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890610	군함	727	342	-53%
4	반도체	854232	메모리	115	227	97%
5	건설광산기계	842952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채굴용 · 굴착용 · 다지기용 기계	89	143	61%
6	편직물	60041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144	131	-9%
7	합성고무	400219	기타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 · 카르복 시화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XSBR)	152	117	-23%
8	무선 <del>통</del> 신기기	852990	기타 전기기기 부분품	118	117	-1%
9	합성수지	390230	프로필렌 <del>공중</del> 합체	89	110	24%
10	합성고무	400220	부타디엔 고무(BR)	135	106	-21%
11	반도체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45	104	131%
12	기타석유 화학제품	292910	이소시아네이트	96	103	7%
13	아연제품	790111	합금하지 않은 아연(아연 99. 99%이상)	95	92	-3%
14	철강판	72083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cm 이상, 코일모양, 열간압연, 두께 3mm 미만)	168	91	-46%
15	편직물	600622	면으로 만든 기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염색한 것)	100	87	-13%
16	합성수지	39033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 (ABS)	67	85	27%
17	정밀화학원료	280300	탄소(카본블랙 및 탄소 물품 포함)	57	77	35%
18	편직물	600632	합성섬유로 만든 기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염색한 것)	89	73	-18%
19	합성수지	390769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54	66	22%
20	철강판	720917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cm 이상, 코일모양, 냉간압연, 두께 0.5~1mm)	101	66	-35%

주: 2018년 기준 수출금액 상위 20대 품목[산업분류 MTI 3단위, HS 코드 6단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 ■ '18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수출 상위 품목은 석유제품,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반도체 제품으로 나타남

- 이 중, 경질(經質)석유와 조제품(HS 271012), 프로세스와 컨트롤러(HS854231)의 경우 전년 대비 수출액이 각각 155%, 131%씩 큰 폭으로 증가함
- 반면 군함(HS 890610) 경우 '18년 기준 수출액이 전년대비 -53%('17년:727백만불 → '18년:342백만불)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품목별 수입 동향

[ 단위 : 백만불, % ]

	수 입								
순	산업분류	HS코드	품명	금	.액	'17–'18			
위	건성군규	ПОТТ	百百	2017년	2018년	증감률			
			전체	9,571	11,161	17%			
1	석탄	270112	유연탄	2,116	2,254	7%			
2	천연가스	271111	천연가스(액화)	1,253	1,498	20%			
3	동광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356	699	96%			
4	원유	270900	석유와 역청유(원유)	448	563	26%			
5	석탄	270119	그 밖의 석탄(무연탄, 유연탄 제외)	444	332	-25%			
6	임산부산물	400122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344	285	-17%			
7	강반제품 및 기타철강제품	720712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탄소 0.25/100 미만, 횡단면 직사각형인 것)	145	262	81%			
8	주석제품	800110	합금하지 않은 주석	210	241	15%			
9	목재류	441231	열대산 목재의 합판(대나무 제외)	175	241	38%			
10	제지원료	470329	활엽수 화학목재펄프	204	228	12%			
11	식물성물질	151190	팜유와 그 분획물(조유 제외)	163	222	36%			

			수 입			
순	산업분류	HS코드	품명	금	액	'17–'18
위			. <u> </u>		2018년	증감률
12	석유제품	271019	경질유와 조제품을 제외한 기타 석유와 역 청유(원유 제외) 및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 제품	144	177	23%
13	합금철 선철 및 고철	720260	페로니켈(ferro-nickel)	65	174	168%
14	기타금속광물	711299	금 · 백금을 제외한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한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scrap)	3	150	4900%
15	신변잡화	640399	기타 신발류	105	127	21%
16	철강판	721913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cm 이 상, 두께 3~ 4.75mm)	0	115	_
17	기타정밀 화학제품	382319	기타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	76	83	9%
18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901380	그 밖의 액정 디바이스 및 광학기기	49	78	59%
19	식물성물질	151319	야자(코프라)유와 그 분획물(조유 제외)	81	73	-10%
20	의류	620193	인조섬유제의 남성용 또는 소년용 방한용 외투	50	73	46%

주: 2018년 기준 수출금액 상위 20대 품목[산업분류 MTI 3단위, HS 코드 6단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 '18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수입 상위 품목은 유연탄·천연가스· 구리광· 원유 등을 포함한 광산물과 팜유와 그 분획물(조유 제외), 야자(코프라)유와 그 분획물 (조유제외)이 해당됨
  - 이 중, 기타 금속광물(HS 711299)은 전년대비 수입액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페로 니켈(HS 720260)의 경우 수입액이 전년대비 168% 증가하여 그 다음을 차지함

# 3. 한-아세안(말레이시아) FTA 개관



#### 추진 경과

• 2007년 6월 1일 발효된 한-아세안 FTA는 2020년 발효 14년차에 접어듦



## 체결 의의<sup>9)</sup>

### ■ 우리나라의 거대 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FTA

- 아세안은 총 10개 회원국에 5억의 인구를 가진 거대시장이자 우리에게는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시장 중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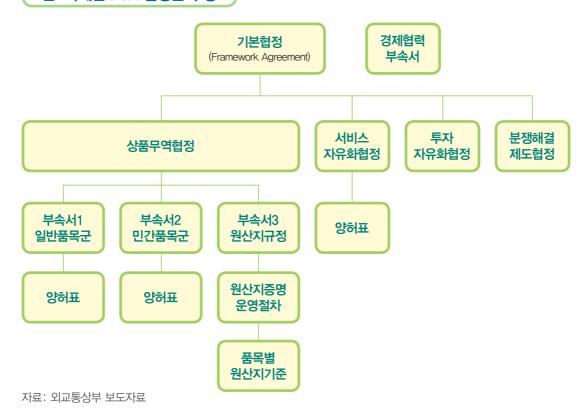
#### ■ 주변국보다 아세안 시장접근에 우위확보 기회 제공

- 일본은 우리나라나 중국과 달리 아세안 전체가 아닌 개별 회원국과의 개별적인 FTA를 추진
-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3년 일찍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한─아세안 FTA에서 2010년까지 일반 품목군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함으로써 시기적으로는 결과가 거의 동등

#### ■ 아세안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점

-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거대 시장인 아세안 시장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점 기회 제공

## 한-아세안 FTA 협정문 구성



## 주요 내용 및 특징

- (협정문 구성) 한-아세안 FTA는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한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상인 관계로, 기존의 FTA에서 사용되는 단일협상방식이 아니라 모법이 되는 기본협정을 기틀로 하여 상품무역협정과 서비스 · 투자협정 및 분쟁해결제도협정으로 나누어 구성됨
  - (기본협정) 한-아세안 FTA 협정의 법적 적용범위 및 그 밖의 협정과의 관계,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분쟁해결, 경제협력 등 양측이 FTA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와 실시에 대한 기본적인 틀 제시
  - (상품무역협정) 본문 및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그리고 원산지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부속서로 구성
  - (분쟁해결제도협정) 당사국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관하여 적용되는 분 쟁해결 절차 구성

- (개별협상) 한-베트남 FTA에 이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등 아세안 개별 회원국 간의 양자 FTA를 협상 · 추진 중에 있음
  - (한-말레이시아 FTA)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19. 3월)에서 양국 정상이 한-말레이시아 FTA 추진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2019년 6월부터 FTA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됨

일 시	내 용
2019. 09	한-말레이시아 FTA 제3차 협상 개최(서울)
2019. 08	한-말레이시아 FTA 제2차 협상 개최(서울)
2019. 07	한-말레이시아 FTA 제1차 협상 개최(쿠알라룸푸르)
2019. 06	한-말레이사아 FTA 개시 선언



지난 2019년 9월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차 한-말레이시아 FTA(자유무역협정) 공식 협상」에서 수마티 발라크리시난 말레이시아 다자정책 협상국 과장(左)과 김영만 산업통상자원부 FTA상품과장(右)이 악수하고 있다(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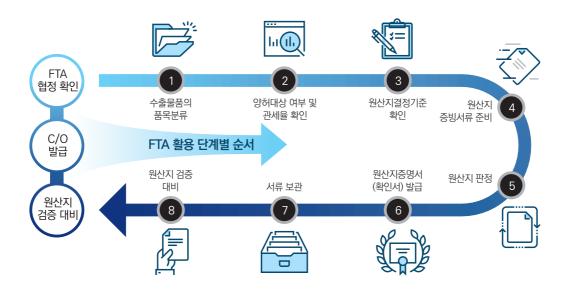
- 양국은 한-말레이시아 FTA 체결 시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 한류-할랄 협력 등 경제협력의 토대이자 말련 마하티르 정부의 新동방정책(Look East Policy 2.0)과 우리 정보의 新남방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4. 한-아세안(말레이시아) FTA 적용 절차



## 한-아세안(말레이시아) FTA 활용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 한-아세안(말레이시아) FTA 활용 단계별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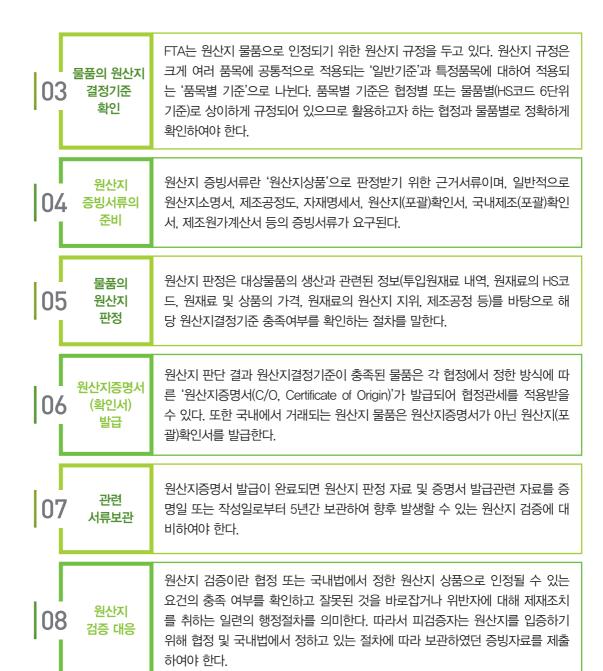
• 한-아세안(말레이시아) FTA 단계별 유의사항

01 <sup>수출물품의</sup> 품목분류

품목분류는 물품에 HS코드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품의 HS코드에 따라 양허 관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FTA 활용의 첫 단계로서 이를 잘못 수행하면 이후 원산지 판단 및 FTA 업무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수입국(말레이시아) 기준의 HS코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은 투입 원재료의 HS코드도 정확히 확인하여야한다.

물품의 양허대상 여부 및 관세율 확인

발효된 협정상 해당 물품이 양허대상인지 또는 어느 정도 관세가 경감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일부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관세 인하율이 미미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양허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관세율이 양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적용될 세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C/O) 작성 시 유의사항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HS 2017 개정)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2019년 9월 1일부터 HS 2017 기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
  - 단, HS 2017 기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 서는 과도기간을 허용하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완전이행
    - (국내절차 완료 국가) 한국, 필리핀,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 (**국내절차 미완료 국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2019년 11월 기준)

- 이에 따라 과도기간 중 한-아세안 FTA 당시국별 HS 2017 기준 품목별 원산지기준 운영여부가 상이하기 때문에 한-아세안 FTA 수출당시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HS 품목번호 기재방법이 변경됨에 유의
- (수입국이 필리핀,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인 경우) 수출물품의 HS 2017 품목번호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
  - \*단, FTA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4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표에서 HS 2017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요
- (수입국이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인 경우) 현행과 같이 수출물품의 HS 2017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HS 2012 품목번호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에 기재

자료: 관세청

(2019년 11월 기준)

#### 참고사항

- 통관 관련 규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무역환경특성상 개정이 매우 빈번하며 복잡하고 다양한 것이 특징임
- 따라서 각 기업의 통관 관련 실무 담당자들은 수시로 통관법령 및 규정 업데이트 소식을 확인하여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말레이시아 통관 관련 규정 및 최신 소식은 말레이시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my)에서 확인 가능

#### 말레이시아 특혜 원산지 제도

- 물품의 원산지가 말레이시아산임을 인정받고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가 체결한 각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 직접운송요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함
- (원산지결정기준) 말레이시아가 체결한 아세안-중국, 아세안-한국, 아세안-인도,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아세안-일본 협정에서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개별기준인 PSR(품목별기준, Product Specific Rules)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PSR이 규정되지 않은 물품은 일반기준\*이 적용됨
  - \* 완전생산물품이 아닌 물품 중 개별 품목별 기준이 규정되지 않은 물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2019. 11월 기준

구분	일반기준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ACFTA)	RC(BU) 40% or MC 60%
아세안-한국 자유무역협정(AKFTA)	RC(BD/BU) 40% or CTH
말레이시아-칠레 자유무역협정(MCFTA)	_
아세안-인도 자유무역협정(AIFTA)	RC(BU) 35% + CTHor MC 65% + CTSH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ANZFTA)	RC(BD/BU) 40% or CTH
말레이시아-인도 자유무역협정(MICECA)	_
아세안-일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AJCEP)	RC(BD) 40% or CTH

주: RC: 역내부가가치비율(Regional Contents), BD: 간접법(Build-Down), BU: 직접법(Build-Up), MC: 비원산지재료 비율(iMproted Contents), CTH: 4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ing), CTSH: 6단위 세번변경기준(Cange of Tariff Subheading)

자료: 말레이시아 통상부

- (직접운송요건) 각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이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서는 직접운송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함
- 직접운송이란 특혜관세 대상이 되는 물품이 수출국을 출발하여 비당사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거나, 또는 비당사국을 거쳐 운송되더라도 비당사국 경유·환적요건\*이 충족한 경우를 말함
  - \* 지리 · 운송상 정당한 경우에 한함(경유국 거래 및 소비 불인정)

-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결정기준 및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한 물품은 각 협정별 규정된 원산 지증명서(C/O) 발급기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함
- 한-아세안(말레이시아) FTA 협정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AK 서식으로 작성됨

2019. 11월 기준

구분	양식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ACFTA)	Form E
아세안-한국 자유무역협정(AKFTA)	Form AK
말레이시아-칠레 자유무역협정(MCFTA)	CMFTA FORM
아세안-인도 자유무역협정(AIFTA)	Form Al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ANZFTA)	Form AANZ
말레이시아-인도 자유무역협정(MICECA)	Form MICECA
아세안-일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AJCEP)	Form AJ

자료: 말레이시아 통상부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으로(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3호), 말레이시아의 경우 C/O 발급기관은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임

구분	발급기관
브루나이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상공회의소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
필리핀공회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세관,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등 증명서발급기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제외), 개성공단 물품의 경우 세관

자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

### 5. 한-아세안(말레이시아) FTA 활용 산업별 수출현황

### 

####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FTA 수출활용률(2018)

[ 단위: 백만불. % ]

수출	특혜적용금액	특혜대상금액	FTA활 <del>용률</del> 1)	전체수 <del>출금</del> 액
한-0h세안 FTA <sup>2)</sup>	6,795	13,036	52.1%	38,345
– 말레이시아	1,022	1,769	57.8%	8,989
– 인도네시아	2,431	4,739	51.3%	8,833
– 필리핀	1,218	2,520	48.3%	12,020
– 태국	2,124	4,008	53.0%	8,503

- 1) FTA활용률=특혜적용금액/특혜대상금액×100
- 2) 한-아세안 FTA는 베트남 제외한 수치이며, 표기되지 않은 개별국가는 '18년 수출실적 없음
- '18년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한-아세안 FTA 수출활용률은 약 57.8%로 전체 한-아세안 FTA 활용률(52.1%)을 상회하며, '18년 우리나라 수출실적이 있는 아세안 개별국가운데 가장 높은 FTA 활용률을 나타냄
  - 그러나 전체수출금액(약 89억불) 대비, 특혜대상금액(약 17억불)은 매우 낮은 상황
  - 특혜대상금액은 '18년 우리나라 수출실적이 있는 아세안 개별국가 가운데 가장 최하위를 차 지하였으며, 따라서 특혜적용금액(약 10억불)도 가장 낮게 나타남
  - 베트남의 경우 한-아세안 FTA 체결 이후 추가적으로 양자 FTA를 체결하면서 한-아세안 FTA의 민감·초민감품목을 대상으로 협상을 추진하여, 추가관세 철폐로 자유화 수준을 아래 와 같이 확대한 바 있음

국가명	기준	한-아세안 FTA	추가개방	한-베트남 FTA
한국	수입액	91.7%	3%	94.7%
인독	품목수	11,169개	499개	11,668개
베드나	수입액	86.3%	6.1%	92.4%
베트남	품목수	8,245개	272개	8,517개

•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에서도 상품시장 추가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한-말 FTA 발효시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수출 및 FTA 활용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우리나라의 對말레이시아 산업별 FTA 활용 수출 현황(2018)

[ 단위: 백만불, % ]

					1. 백단골, 10]
산업: MTI 1단위	분류 <sup>1)</sup> MTI 3단위	특혜적용 금액	특혜대상 금액	FTA 활 <del>용률</del> 2)	전체미화 금액
화학공업제품	합성고무	25	31	82.1	564
 ===============================	동제품	5	15	34.6	417
	_				
기계류	선박해양 구조물및부품	0	2	23.2	411
철강금속제품	철강판	249	346	71.9	406
화학공업제품	정밀화학원료	17	25	68.6	371
화학공업제품	합성수지	53	63	84.4	283
기계류	기타산업기계	27	31	87.1	233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플라스틱 제품	35	175	20.0	206
전자전기제품	건전지및축전지	80	112	71.1	190
화학공업제품	종이제품	62	107	58.3	165
기계류	자동차	112	123	91.3	124
철강금속제품	선재봉강 및 철근	85	90	94.4	124
철강금속제품	알루미늄	28	80	35.5	89
기계류	기타기계류	0	2	17.3	81
철강금속제품	형강	49	52	94.8	74
기계류	자동차부품	15	68	22.3	73
전자전기제품	전력용기기	9	32	26.8	65
기계류	급형	4	9	42.0	64
기계류	기계요소	6	14	39.7	57
기계류	건설광산기계	26	50	51.7	56
기타	품목	133	341	38.9	4935
힙	계	1,022	1,769	57.8	8,989

<sup>1)</sup> 동 표의 금액은 독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백만불 단위로 기입됨에 따라 실제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음

<sup>2)</sup> FTA활용률=특혜적용금액/특혜대상금액×100

## ■ '18년 한국의 對말레이시아 주력수출 품목은 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전자전기제품임(MTI 1단위 기준)

• 화학공업제품 : 합성고무, 정밀화학원료, 합성수지 등

• 기계류: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기타산업기계, 자동차 등

•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플라스틱 제품

• 철강금속제품 : 동제품, 철강판, 선재봉강 및 철근, 알루미늄, 형강

• 전자전기제품: 건전지 및 축전지, 전력용기기

# ■ FTA 특혜대상금액이 가장 높은 품목은 철강판, 플라스틱 제품, 자동차이며, 수출활용률은 각각 71,9%, 20%, 91,3%임(MTI 3단위 기준)

- 평균 FTA 활용률(57.8%)을 상회하는 품목은 형강(94.8%), 선재봉강 및 철근(94.4%), 자동차 (91.3%), 기타산업기계(87.1%), 합성수지(84.4%)
- 한편,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특혜대상금액이 높은편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률이 20%로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18년 전체수출금액 대비 특혜대상금액 비중

#### FTA활용률이 말레이시아 평균(57.8%) 이하인 품목은?



\* '18년 FTA 활용률 기준

### 6. 한-아세안(말레이시아) FTA 수출유망품목 및 유망산업



#### 對말레이시아 FTA 활용 수출유망품목 및 유망산업 추천

- 對말레이시아 한-아세안 FTA 수출유망품목 선정과정
  - 1. 2018년 말레이시아 100대 수입물품 추출(HS 6단위 기준)
  - 2. 우리나라가 '18년 수출한 내역이 있는 품목 선정
  - 3. FTA 활용이 가능한 품목: 특혜대상금액이 '0'이 아닌 품목 즉, 한-아세안 FTA 양허대상 품목인 동시에. '18년 기준 특혜대상금액이 5백만불 이상인 품목 선별
  - 4. 위 단계까지 거친 품목 중 특혜대상금액은 높으나, 특혜적용금액은 낮아 활용률이 말레이시아 평균(57.8%)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을 한-아세안 FTA 활용 對말레이시아 수출 유망품목으로 선정
  - 위 선정절차에 따라 한-아세안 FTA 활용가능성이 높은 對말레이시아 수출유망품목은 다음과 같음

[ 단위: 백만불, % ]

순번 <sup>1)</sup>	HS6	품명	2018년 말레이시아 수입품목 순위	2018년 특혜대상금액	2018년 FTA활용률 <sup>2)</sup>
1	870899	자동차용 에어백 커버	2	31,536,540	26.5
2	392010	폴리에틸렌 필름	3	28,640,141	8.4
3	760612	알루미늄 합금의 것	4	27,627,069	2.7
4	760719	알루미늄 박의 것	6	22,141,787	2.8
5	843149	유압브레이커	8	15,805,344	40.2
6	350691	조제접착제	9	14,632,848	2.6
7	740819	정제한 구리의 선	10	14,025,098	34.9
8	853720	배전반	11	11,202,705	11.3
9	820730	프레싱용 공구	15	9,450,216	42.0
10	87084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26	6,679,203	0.7

<sup>1) &#</sup>x27;18년 특혜대상금액순

<sup>2)</sup> FTA활용률=특혜적용금액/특혜대상금액×100

#### 말레이시아 수출유망품목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 1. 자동차용 에어백 커버



HS코드(FTA활용률)	제8708.99호(26.5%)
세부품명	자동차용 에어백 커버

- 자동차용 에어백 커버\*
  - \* 트랙터,10인 이상의 차량,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수용도차량의 부분품

수출 세율정보 (2019)

세율

기본세율 : 5% FTA 세율: 0%

#### 주요 원재료 (예시)

원재료명	HS 품목번호	원산지	가격비중(%)
프로필렌 공중합체	3902.30	한국	22
점조액상	3208.90	미상	9
비금속 사인판	8310.00	미상	21
THINNER	3814.00	한국	0.1

#### 원산지결정기준 및 해설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조 공정 자동차용 에어백 커버는 원재료를 건조하여 수분을 제거한 후에 사출기를 이용해 원료를 녹이고 녹인 원료를 금형에 넣어 제품의 형상을 만든다. 이후 사출된 제품에 페인트 처리를 하여 조립 및 검사 포장하여 생산한다.

원산지 판단 원산지결정기준이 역내부가가치비율 45% 이상이므로 원재료 중 비원산지재료가 사용된 비중이 상품가격의 45%이상이어야 한국산으로 인정된다. 원산지 미상으로 원산지 지위를 알 수 없을 때는 비원산지 재료로 취급되므로 비원산지 재료가 상품가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지위확인에 주의가 필요하다.

• 참고로 사용된 비원산지재료비의 비중이 높을 경우에는 국내재료를 사용한 후 원산지(포괄)확인 서를 생산자에게 발급받아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면 원산지 재료 사용으로 원산지 충족 기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 2. <del>폴</del>리에틸렌 필름<sup>10)</sup>

Physical Control of the Control of t	HS코드(FTA활용률)	제3920.10호(8.4%)	
	세부품명	폴리에틸렌 필름	
	폴리에틸렌 필름	름으로 완제품 보호용 필름에 사용되는 것	
수출 세율정보	ШО	기본세율 : 20%	
(2019)	세율	FTA 세율: 0%	

#### 주요 원재료 (예시)

원재료명	HS 품목번호	원산지	가격비중(%)
PE 1	3901.10	미상	_
PE 2	3901.10	미상	_
ZS	2915.70	미상	_
종이지관	4482.90	미상	_
AM	3824.90	미상	_

#### 원산지결정기준 및 해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제조 공정

원재료 배합 후 원단을 압출하고 규격별로 폭을 재단하여 원하는 길이만큼 권취 및 숙성한다. 이후 전수 검사 및 포장하여 출하한다.

#### 원산지 판단

동 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수 있다. 제시된 모든 원재료의 4단위 품목번호가 완제품과 상이하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충족에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제시된 원재료 모두 비원산지재료로 사용하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 만약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하는 경우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제시된 원재료 내역을 바탕으로 볼 때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하여 원산지 판단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동 제품은 원산지가 쉽게 판정될 수 있는 특정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한 「원산지증명 간이발급 대상물품」에 해당하므로 FTA 활용 시 이를 확인하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 3. 알루미늄 합금의 것

	HS코드(FTA활용률)	제7606.12호(2.7%)	
	세부품명	알루미늄 합금의 것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 일반 산업용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판, 건축물		
	내 · 외장재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의 시트가 해당됨		
수출 세율정보 (2019)	세율	기본세율 : 30%	
	세팔	FTA 세율: 0%	

#### 주요 원재료 (예시)

원재료명	HS 품목번호	원산지	가격비중(%)
알루미늄 코일	7606.12	미상	_
보호필름	3920.62	한국	_
폴리에틸렌	3901.10	한국	_

#### 원산지결정기준 및 해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제조 공정

재료인 알루미늄 코일을 상품에 적합한 규격의 폭으로 절단하고 전단된 소폭의 코일을 rewinding 하여 제품화한 후 검품 및 포장하여 출하한다.

원산지 판단 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완제품과 동일한 호(7606)에 속하는 원재료가 존재하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원재료는 반드시 원산지 지위를 보유하여야 한다. 만약 알루미늄 코일(7606.12)이 비원산지 재료인 경우 완제품의 가격비중의 10%이하라면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 충족이 가능 할 것이다.

• 만약 알루미늄 코일이 최소허용기준의 범위를 넘는 비중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선택하여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 이상이 되어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상품가 격(FOB가격)에서 원산지재료의 비중이 역내부가가치 4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 4. 알루미늄박의 것<sup>11)</sup>

	HS코드(FTA활용률)	제7607.19호(2,8%)	
	세부품명	알루미늄 박의 것	
	알루미늄 박으로 자동차 내장제 부착용 (흡음, 차음, 방음, 쿠션의 기능)으로 사용되는 것		
	기본세율 : 25%		
수출 세율정보(2019)	수출 세율정보(2019) 세율	FTA 세율: 0%	

#### 주요 원재료 (예시)

원재료명	HS 품목번호	원산지	가격비중(%)
알루미늄 괴	7601.10	미상	_
알루미늄 합금	7601.20	미상	_
알루미늄 관	7608.10	미상	_

#### 원산지결정기준 및 해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조 공정 동 제품은 원재료인 알루미늄 괴를 압연 및 연화(annealing), 분단(slitting)하여 뒷면을 붙이지 않은 상태의 알루미늄 박이다.

원산지 판단 동 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수 있다. 제시된 모든 원재료의 4단위 품목번호가 완제품과 상이하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충족에 어려움이 없고, 따라서 제시된 원재료 모두 비원산지재료로 사용하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제품은 모든 재료를 비원산지재료로 사용하더라도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상품이 될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제조된 사실을 소명하고 기타 제반의 원산지증명절차를 충족하면 FTA 활용이 매우 용이한 품목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한-아세안 FTA 외에도 동일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협정은 동일하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므로 다른 협정으로의 확대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 5. 유압브레이커

THE PARTY OF THE P	HS코드(FTA활용률)	제8431.49호(40.2%)
	세부품명	유압브레이커
	굴삭기에 장착해 사용하는 유압브레이커	
수출 세율정보	세율	기본세율 :5%
(2019)	(2019)	FTA 세율: 0%

#### 주요 원재료 (예시)

원재료명	HS 품목번호	원산지	가격비중(%)
CYLINDER	7214.99	미상	9
BACK HEAD	7214.99	미상	4
PISTON	7214.99	미상	4
FRONT HEAD	8431.49	한국	16
TOOL	8431.49	한국	3

#### 원산지결정기준 및 해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제조 공정

동 제품은 유압을 이용하여 치즐에 연속적 타격을 가함으로 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물품으로 Head Cap, Seal Bush, Cylinder, Piston 등으로 조립 및 생산된다.

원산지 판단 동 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시된 원재료 중에서 front head와 tool에 완제품과 4단위가 동일한 원재료가 사용되었지만 한국산으로 원산지 재료이므로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되는데 무리가 없다. 다만이들 재료가 비원산지 재료인 경우에는 최소허용기준의 범위 내에서만 세번변경기준의 충족이 가능할 것이다.

• 만약 front head와 tool이 최소허용기준의 범위를 넘는 비원산지재료로 사용되었다면 부가가치기 준을 선택하여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 이상이 되어야만 원산지 지위획득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경우 비원산지 주요 원재료 가격 비중이 역내부가가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 6. 조제접착제<sup>12)</sup>

	HS코드(FTA활용률)	제3506.91호(2.6%)	
	세부품명	조제접착제	
	Ī	고무를 기제로 한 조제접착제	
수출 세율정보	세율	기본세율 : 25%	
(2019)	9) ^li ==	FTA 세율: 0%	

#### 주요 원재료 (예시)

원재료명	HS 품목번호	원산지	가격비중(%)
Pet Film	3920,62	미상	_
Polyester Resin	3907.99	미상	_
첨가제	3824.90	미상	_
필러 1	2811,22	미상	_
난연제	2909.30	미상	_
필러 2	3206.11	미상	_
H42M	2818.30	미상	_
용제	2914.12	미상	_
용제 톨루엔	2902.30	미상	_

#### 원산지결정기준 및 해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조 공정 동 제품은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기제로 한 조제 접착제로서 원재료 배합공정, 밀링 및 코딩 공정, 재단공정을 거쳐 생산된다.

원산지 판단 동 제품의 한-아세안 협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수출자가 충족이 용이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시된 모든 원재료의 4단위 품목번호가 완제품과 상이하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충족에 어려움이 없으며 제시된 원 재료가 모두 비원산지재재료이더라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 만약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하는 경우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동제품은 원산지가 쉽게 판정될 수 있는 특정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한 「원산지증명 간이발급 대상물품」에 해당하므로 FTA 활용 시 이를 확인하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 7. 정제한 구리의 선

AST Cutting mat	HS코드(FTA활용률)	제7408.19호(34.9%)
	세부품명	정제한 구리의 선
		정제한 구리의 선
수출 세율정보	<b>ا</b> لا	기본세율 : 25%
(2019)	세율	FTA 세율: 0%

#### 주요 원재료 (예시)

원재료명	HS 품 <mark>목</mark> 번호	원산지	가격비중(%)
동 잉곳	7403.19	미상	_
기타의 화학공업제품	3824.90	미상	_
알루미늄제의 기타의 제품	7616.99	미상	_
플라스틱 케이스	3923.40	미상	_

#### 원산지결정기준 및 해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7407호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제조 공정

구리 원재료를 용해하여 신선 후 팔라디움 도금하여 열처리 및 권선과정을 거쳐 최종 생산 한다.

원산지 판단 동 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중에서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한데, 동 제품은 완제품과 4단위가 동일한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아 비원산지재료 사용 시에도 원산지 지위 획득이 가능하므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제7407호의 원재료가 사용될 경우 원산지상품이 사용되어야 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만약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제시된 원재료 내역을 바탕으로 검토하였을 때,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세번변경 충족이 용이하므 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여 FTA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동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들의 경우 한-아세안 FTA 외에 동일하게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한-중 FTA, 한-인도 CEPA, 한-미 FTA 등을 활용하여 시장확대를 검토해보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 8. 배전반

	HS코드(FTA활용률)	제8537.20호(11.3%)
	세부품명	배전반
	발전설비, 변전설비, 공장설비 등에 사용되는 배전반	
수출 세율정보	ullQ	기본세율 : 15%
(2019)	세율	FTA 세율: 0%

#### 주요 원재료 (예시)

원재료명	HS 품 <mark>목</mark> 번호	원산지	가격비중(%)
SAPDV	8535.40	미상	_
GPT	8504.31	미상	_
CT 1	8504.31	미상	_
PT	8504.31	미상	_
CT 2	8504.31	미상	_
전자식반도 원형튜브 1	3917.29	미상	_
전자식반도 원형튜브 2	3917.29	미상	_
전자식반도 원형튜브 3	3917.29	미상	_
XXD 열수출튜브	3917.29	미상	_

#### 원산지결정기준 및 해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제조 공정 동 제품은 원자재 및 부자재에 파워보드 및 알루미늄 덮개 등을 장착하고 파워부를 조립한 후 배터리, 제어함 외관, 리셉터클 장착 후 컨트롤의 각 구성품을 확인하여 전체를 조립하여 생산하고 각 컨트롤의 동작시험 후 최종 생산한다.

원산지 판단 해당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선택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수출자에게 용이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완제품과 4단위가 동일한 원재료가 사용 되지 않아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비원산지재료 사용 시에도 쉽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 만약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제시된 원재료 내역을 바탕으로 검토하였을 때, 모두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세번변경 충족이 용이하므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여 FTA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 9. 프레싱용 공구

	HS코드(FTA활용률)	제8207.30호(42%)
	세부품명	프레싱용 공구
	프레스기에 결합되어 자동차용 콘댄서부품을 찍어내는 용도로 사용되는 철강제의 공구(프레싱용 공구)	
수출 세율정보	세율	기본세율 : 5%
(2019)	<u> </u>	FTA 세율: 0%

#### 주요 원재료 (예시)

원재료명	HS 품목번호	원산지	가격비중(%)
LOWER DIE/CAST	8207.30	미상	_
LOWER PIEB LOCK1	7211.23	미상	_
LOWER STEEL1	7211.23	미상	_
EMBO PUNCH	8207.30	미상	_
LINER	8207.30	미상	_

#### 원산지결정기준 및 해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제조 공정

동 제품을 프레스기에 장착하여 접촉면의 압력에 의해 자동차용 부품을 찍어내는 공구로 금형 설계 후 패턴 및 주물을 제작하여 주물에 부품 및 각종 부속품을 조립하여 연마 후 최종 생산한다.

원산지 판단 동 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우선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완제품과 동일한 호(제8207호)에 속하는 원재료가 존재하므로, 해당 원재료는 반드시 원산지 지위를 보유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호에 속하는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였더라도 최소허용기준의 범위내(완제품 가격의 10%) 일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제8207호에 속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최소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한다면 역내부가가치비 율이 40% 이상이 되어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 10.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HS코드(FTA활용률)	제8708.40호(0.7%)			
	세부품명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엔진의 동력을 차량 속도에 맞게 변환하여 구동축으로				
Court 1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				
수출 세율정보 (2019)	세율	기본세율 : 25%			
	세뀰	FTA 세율: 5%			

#### 주요 원재료 (예시)

원재료명	HS 품목번호	원산지	가격비중(%)	
Gear Assy	8708.40	미상	4.5	
SNAP RING	7318.29	한국	0.01	
Needle roller bearing	8482.40	한국	1.5	
GUIDE OIL	8708.99	한국	0.1	
INNER RACE ASSY	8708.40	한국	12	
BRG-THRUST	8482.50	미상	0.3	
GEAR ANNULUS	8708.40	미상	2.2	

#### 원산지결정기준 및 해설

- 1. 기어박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2. 부분품: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제조 공정

동 제품은 엔진의 동력을 차량 속도에 맞게 변환하여 구동축으로 전달하는 부품으로 피니언 조립 및 핀의 압입과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하여 제조된다.

#### 원산지 판단

한-아세안 FTA는 제8708.40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어박스와 부분 품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기어박스의 경우 CTH or RVC40%, 부분품의 경우 RVC 45%로 물품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 부분품의 경우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5% 이상이 되어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동 제품의 경우 완제품 가격 기준으로 비원산지 원재료의 가격비중이 7%에 불과하므로 역내부가가치 비율 45%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원산지재료비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원산지상품 충족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가격 비중이 높은 원재료의 원산지지위 관리가 중요하며 주의할 필요가 있다.





# 말레이시아의 통관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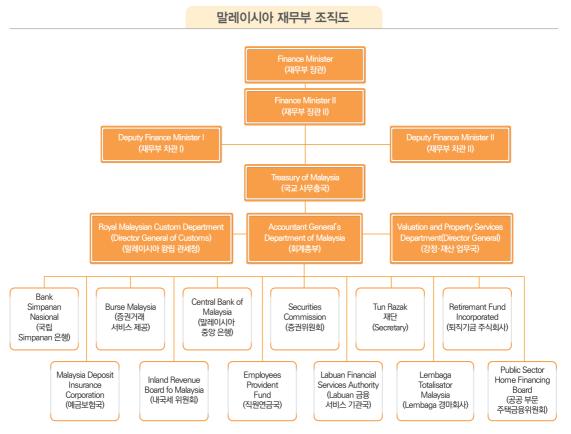
- 1. 통관 조직 및 관련법
  - 재무부 및 관세청
  - 통관 관련법
  - 말레이시아 HS코드 및 관세율 확인방법
  - 말레이시아 관세법 최신 개정내역
  - GST 영세율(0%) 적용 및 SST 제도의 부활
- 2. 수출입 통관
  - 말레이시아의 통관환경
  - 수입통관 절차
  - 수출통관 절차
  - 한-말레이시아 AEO MRA 체결
  - 말레이시아 AEO 공인업체 리스트 조회방법
- 3. 관세일반
  - 관세평가
  - 세울
  - 사전심사제도
  - 불복제도
  - 환급제도
  - 관세 이외의 제세
  - 보세창고 및 자유지역

### 1. 통관 조직 및 관련법<sup>13)</sup>



#### 재무부 및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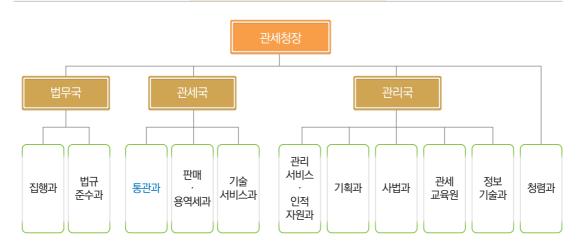
- 말레이시아 재무부는 말레이시아의 세제·경제·예산 및 주택대출 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위기관으로 관세청, 회계국 및 감정·재산업무국 등을 두고 있음
  - (주요업무) 재정 및 화폐의 정부조달 관리감독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외부자원 획득· 분배관리, 연방정부 내국채 등의 집행업무 등



자료: 말레이시아 재무부

- 말레이시아 관세청((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은 재무부의 하위기관 중하나로, 주로 재무부에서 제정한 정책 및 행정의 집행 · 기획업무를 담당함
  - 관세청은 아래와 같이 크게 11개의 부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부서(과)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집행과) 관세 관련 업무의 집행을 관장하며, 마약 및 밀수 단속 · 방지 업무와 몰수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함
    - (법규준수과) 판매허가 소지자 및 수입자의 회계감사 계획과 실행, 세금 및 관세의 정확한 징수 감독을 담당함
    - (통관과) 말레이시아는 총 16개의 지역 세관과 1개의 싱가포르 세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세관에서는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관리업무를 담당함
    - (판매·용역세과) 판매 및 용역세의 정책 및 리스크 관리 업무를 담당함
    - (기술서비스과) 품목분류 및 가치평가(valuation)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업데이트하며, 세입·체납액·고위험화물 관리업무를 담당함

#### 말레이시아 관세청 주요 조직도



자료: 말레이시아 재무부 홈페이지

■ 그 중 말레이시아 통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관과(Customs Division)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통관과는 아래와 같이 총 2개의 Branch와 11개의 Unit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말레이시아 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v.my/en/ci/Pages/ci\_cd.aspx)

• (무역원활화 및 산업 Branch) ① 창고 관리 및 제어, ② 시설 · 인센티브 관리 및 제어, ③ 라이 센싱 데이터베이스 관리, ④ 자유 산업 · 상업지역 관리 및 제어, ⑤ 승인된 제조창고 관리 및 제어 등 총 5개의 Uni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Unit에서 수행하는 상세업무는 다음과 같음

#### 무역원활화 및 산업 Branch의 상세 수행업무

<sup>Unit</sup> 창고 관리 **01** 및 제어

- 국제 모범 사례에 근거하여 정책 · 절차의 수립 및 시행
- 공공인가 창고, 사설인가 창고 및 내륙통관기지의 적용 평가
- 관세 및 내국세의 면제신청(관세법 1965 Section 18, 관세법 1972 Section 33)
- 창고 운영자의 법률준수 관리
- Business community 및 투자자에 대한 상담 · 조언

Unit 인센티브 02 관리 및 제어

- 재무부 장관령 관세 및 면세의 면제 관련 절차, 정책 및 법률 평가
- 재무관련 면제요건의 준수 확보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Scheme(AEO) 신청 평가 및 제도 활성화
- 재무부 장관령 관세 및 면세 신청 평가 및 추천(관세법 1967 Section 14A)
- Business community 및 제조업체의 법률준수 및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 홍보
- Business community 및 투자자에 대한 상담 · 조언

라이센싱 Unit 데이터 03 베이스 관리

- 세관 문제와 관련된 데이터 계획 및 수집
- 세관 활동에 대한 위험 지표 개발
- 데이터를 통한 위험 분석 및 관세관련 현황 파악
- 의사 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 정보 제공
- 모든 주(state)/역(station)에 위험 프로파일 및 경고통지 발송
- 세관 활동관련 게시물 및 보고서 게시

지유 산업
Unit · 상업
04 지역 관리
및 제어

- 법률 및 정책관련 절차의 공식화, 시행
- Business community 및 제조업체의 법률준수를 위한 규정 및 절차 모니터링
- CEPT 요율 · 부가가치 활동 및 관세 면제 신청 평가 · 처리
- Business community 및 투자자, 제조업체에 대한 상담 · 조언

어 등인된
Unit 제조창고
05 관리 및
제어

- 법률 및 정책관련 절차의 공식화. 시행
- CEPT 요율, 부가가치 활동 및 예비 부품으로서의 '교체 부품' 판매를 위한 적용 절차 분석 및 처리
- Business community 및 투자자, 제조업체에 대한 상담 · 조언

자료: 말레이시아 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v.my/en/ci/Pages/ci cd.aspx)

• (수출입 및 국경통제 Branch) ① 수입 관리 및 집행, ② 수출 관리 및 집행, ③ 면세섬(DFI)/면세점(DFS) 관리 및 집행, ④ 여행자/국경 관리 및 집행, ⑤ 과세 관련 정책 수립 및 분석 ⑥ 기관 간 협력 등, 총 6개의 Uni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Unit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수출입 및 국경통제 Branch의 상세 수행업무

Unit 수입 관리 01 및 집행

수출 관리

및 집행

Unit

02

• 수출입 관련 법률 및 정책 절차 수립, 시행

- WCO SAFE 표준 프레임 워크 (FoS), 개정 교토 협약 (RKC) 및 기타 계약 계약을 준수
- 전략무역법 2010. 지적재산권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시행
- 수출입 및 환적 시스템 개선 및 평가
- 일시수출입 및 ATA Carnet의 연장기간 내 절차 처리
- 일반 담보에 대한 절차 적용
- 관세 및 내국세의 면제 신청 절차
- Business community 및 수출입업자에 대한 상담 · 조언

Unit 면세섬(DFI)/ 면세점(DFS) 관리 및 집행

- 면세점/면세점 관련 법률 및 정책 수립, 시행
- 면세점 인가 적용절차 집행
- 면세섬/면세점 인가 절차 및 시스템 평가
- 술 · 담배 · 알코올 등의 수입 허가 관리
- Business community 및 투자자에 대한 상담 · 조언

Unit 여행자/ Q4 국경 관리 및 집행

- 여행자 및 국경 관련 법률 · 정책 수립, 시행
- 선의의 소지인 및 여행자의 이동 관련 절차 및 시스템 평가 · 개발
- 환적화물 이동 촉진
- 새로운 국경 및 법적 양륙지 관련 타당성 조사 수행
- 국경 보안 관련 문제에 대한 정부기관 간 협력
- 금전세탁 및 금융테러 방지법 관련 업무 집행
- 여행자 및 기타 유관기관에 대한 상담 · 조언

Unit 과세 관련 05 정책 수립 및 분석

- 관세 이슈 및 과세정책 효과 등 과세 관련 현행법 연구 및 분석
- 새로운 과세 정책 및 법규 제안
- 세관 서비스 품질 향상 관련 타당성 조사 수행

Unit 기관 간 06 협력

- 투자자 및 MIDA(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에 세관관련 법률 및 정책, 절차 등 문제 사 안에 대한 자문 · 조언 제공
- MIDA(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 등 관세관련 기타 정부 유관기관들 간의 협력 강화

자료: 말레이시아 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v.my/en/ci/Pages/ci cd.aspx)

- 말레이시아 통관과는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하는데 있어, 정해진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 기간 내 정확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에 말레이시아 통관과 고객헌장에는 주요 업무에 대한 업무처리기간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음

#### 말레이시아 통관과 고객헌장에 명시된 주요 업무 처리기한

	E-114141 8C-1 2-1C841 8AC 1 2 61	–
연번	업무	처리기한
1	신속한 수입통관 절차 시행 (항공, 해상, 육상)	각 180분, 130분, 60분
2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시행 (항공, 해상, 육상)	각 30분, 180분, 60분
3	환적화물의 신속한 반송신고 절차 시행 (항공, 해상, 육상)	각 60분, 130분, 30분
4	여행자 휴대품의 신속한 통관	30분
5	일시수입 화물의 1년 이내 재수출 기한 연장 승인	7일
6	이동 제한된 물품의 승인	3일
7	사설 보세창고 및 공공 대리인의 창고 인가 절차	최종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7일
8	공공 보세창고 및 내륙 통관 depot, 면세점 인가에 대한 절차 및 재무부에의 신청	최종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7일
9	내수용 완제품, 수출용 또는 환적용 원재료, 부분품, 기계 및 부품 관련 관세 면제 신청, 국제 조달 센터(IPC) 운영 신청	7일

자료: 말레이시아 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v.my/en/ci/Pages/ci\_cd.aspx)

#### 통관 관련법

• 말레이시아의 통관 관련 법령은 자유지역법 1990(AKTA ZON BEBAS 1990), 전략무역법 2010(AKTA PERDAGANGAN STRATEGIK 2010), 상품공시법 2011(AKTA PERIHAL DAGANGAN 2011), 관세법 (2019), 수출입규제 관세청장령(Customs Order, 2008) 등이 있음<sup>14)</sup>

#### ■ 통관 · 관세제도<sup>15)</sup>

-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은 세관을 거쳐 통관되며 법에 의해 제외된 물품을 제외하고는 관세, 판매세 및 소비세가 부과됨
  - 수입관세는 종가세 또는 종량세가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수입물품에는 종가세가 부과됨
- (관세) 말레이시아는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견지하여 35%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극히 소수이며, 정부는 사치품 및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품목 이외 다양한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지속적으로 인하 · 철폐하고 있음
  - 기계류의 경우 거의 무관세이며, 기타 공산품도 대부분 저관세율이 적용됨
  - 원자재 및 부품 수입시에는 기본적으로 5%의 관세율이 적용되나, 무관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 및 부품의 수입 · 제조 공정상 직접 투입되고 자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 또는 설비의 수입 · 공장 건설 및 시설 확충을 위한 기계 및 플랜트의 도입 등의 경우에는 수입관세가 완전히 면제됨
  - ─ 그러나 국내 제조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섬유류 및 플라스틱 제품 등 일부 품목에 는 20~30%의 고관세율을 적용함

#### 품목별 말레이시아 수입관세율 검색 가능 사이트

- 한국 관세청 FTA 포털: 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말레이시아 관세청: http://mysstext.customs.gov.my/tari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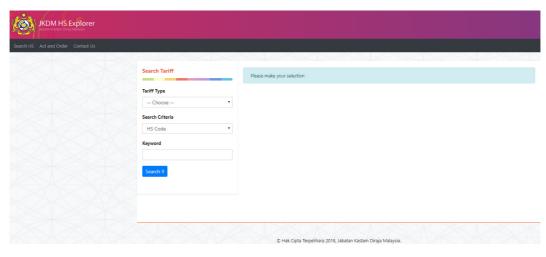
- (판매세 및 소비세) 말레이시아는 최근 자국내 제조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정책으로 다양한 관세무역장벽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준관세 성격의 높은 판매세 및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 특히 자동차의 경우, 관세율도 높은 편이지만 소비세가 매우 높게 부과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말레이시아 자동차 가격은 여타 동남아 시장 평균 가격보다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음

#### 〈말레이시아에서 승용차(HS 8703) 수입시 부과되는 관세 및 소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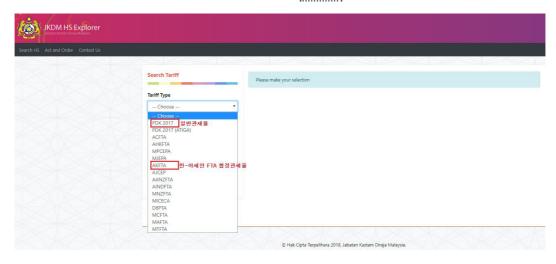
- 관세
-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시) 0%
- (일반수입시) 10~30%
- 소비세
- 승용차 : 75~100%
- 4륜 구동차량 : 60~105%

#### 말레이시아 HS코드 및 관세율 확인방법

- 말레이시아의 통관 물품분류체계(customs nomenclature)는 HS 10단위(2017)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당 품목의 HS코드 및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음
- 1. 말레이시아 관세청 HS 조회 사이트(http://mysstext.customs.gov.my/)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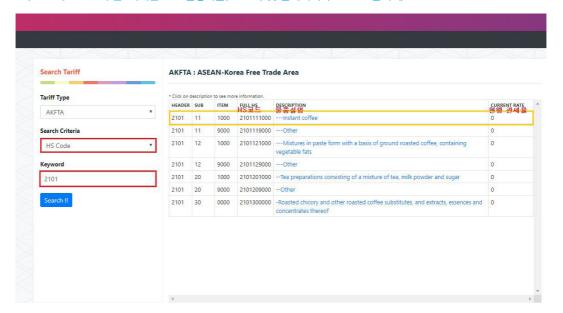


- 2. 검색하고자 하는 관세율 종류(Tariff Type)\* 선택
  - 일반관세율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PDK 2017을
  - 한-아세안 FTA 관세율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AKFTA를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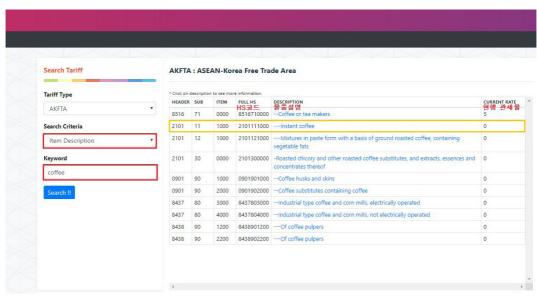
- 3. 검색기준(Search Criteria)에 따라 해당 물품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말레이시아 HS코드 및 관세율 최종 조회 · 확인
  - 해당 물품의 HS코드(최소 4단위)를 알고 있는 경우, 검색기준을 HS Code로 선택하고 조회하고자 하는 HS코드를 입력

(ex - 제2101호의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AKFTA) 및 말레이시아 HS코드 검색시)



- 해당 물품의 HS코드(최소 4단위)를 모를 경우에는, 검색기준을 Item Description으로 선택하고 조회하고자 하는 물품명(전체 또는 일부)을 입력

(ex - 'coffee'의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AKFTA) 및 HS코드 검색시)



자료: 말레이시아 관세청 홈페이지 및 연구자 작성

#### \*검색 가능한 말레이시아 관세율 종류

음식 기용한 클레이지아 단세별 응규						
관세율 약어	관세율 상세	상대국				
PDK	PERINTAH DUTI KASTAM (일반 관세율)	모두				
PDK (ATIGA)	PERINTAH DUTI KASTAM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아세안 국가간 기본 세율)	Brunei, Indonesia,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Cambodia, Lao PDR, Myanmar, Vietnam				
ACFTA	ASEAN — CHINA FREE TRADE AGREEMENT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 세율)	China				
AHKFTA	ASEAN — HONGKONG, CHINA FREE TRADE AGREEMENT (아세안-홍콩 자유무역협정 세율)	Hong Kong				
MPCEPA	Malaysia-Pakistan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말레이시아-파키스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세율)	Pakistan				
MJEPA	Malaysia-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말레이시아-일본 경제협력협정 세율)	Japan				
AKFTA	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세율)	Korea				
AJCEP	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아세안-일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세율)	Japan				
AANZFTA	ASEAN-AUSTRALIA, 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아세안-호주 ·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세율)	Australia, New Zealand				
AINDFTA	ASEAN-India Free Trade Agreement (아세안-인도 자유무역협정 세율)	India				
MNZFTA	Malaysia-New Zealand FTA (말레이시아-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세율)	New Zealand				
MICECA	Malaysi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말레이시아—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세율)	India				
D8PTA	Developing Eight (D-8) Preferential Tariff Agreement (PTA) (D-8 특혜무역협정 세율)	Bangladesh, Iran, Indonesia, Egypt, Nigeria, Pakistan, Turkey				
MCFTA	Malaysia-Chile Free Trade Agreement (말레이시아-칠레 자유무역협정 세율)	Chile				
MAFTA	Malaysi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말레이시아-호주 자유무역협정 세율)	Australia				
MTFTA	Malaysia-Turkey Free Trade Agreement (말레이시아-터키 자유무역협정세율)	Turkey				

자료: http://mysstext.customs.gov.my/tariff/ 및 연구자 작성

#### 말레이시아 관세법 최신 개정내역<sup>16)</sup>

-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개정된 관세법인 '관세법 2019(Custom Act 2019)'를 도입함 (2019. 7. 9 관보 게재)
  - 개정된 관세법은 기존 '관세법 1967(Custom Act 1967)'의 기존 조항 중 96개의 조항을 개정 및 61개의 조항을 신설 · 명문화하였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음

#### 말레이시아 관세법 2019 개정 주요 사항

# Custom Act 2019 1 관세 추징 청구기간 연장

- 납부되지 않은 관세를 추징(Demand)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연장됨
  - 그러나 6년으로 연장된 기간에 사기 혹은 불이행(Default)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나, 불이행에 해당하는 범주가 개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후 법적 논란이 예상됨
- 또한 관세추징 청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에 맞춰 관세에 대한 감사범위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전망됨

#### 2 관세법 적용 가이드라인 제시 근거 마련

- 관세청장이 관세법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인 Public Ruling를 발행할 수 있게 됨
- 이로 관세법 적용 및 해석의 투명성과 예측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공무원의 법 집행권한 강화

- 관세청 공무원은 말레이시아 검사(Public Prosecutor)의 승인을 받은 경우, 관세법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통신에 대한 감시 실시가 가능해짐
- (감시대상 통신형식) 우편물,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메시지 · 대화내용을 모두 포함

#### 4 원산지 규칙 및 특혜·비특혜관세 관련 규정 신설 및 명문화

- · 원산지증명을 발행하는 담당 관청의 지정
- 원산지증명의 신청
- 원산지 신고(declaration of origin) 발행을 위한 등록
- 수입자 · 생산자 · 수출자의 책임
- •특혜관세 청구 요건
- 원산지증명 관련 서류 및 정보의 확인 등

#### 〈특혜 원산지증명 가이드 참고〉

www.miti.gov.my/index.php/pages/view/3911?mid=95

#### (비특혜 원산지증명 가이드 참고〉

www.miti.gov.my/index.php/pages/view/3911?mid=533

#### Custom Act 2019

5 관세법 위반 관련 조항 강화

- 관세법 위반시 적용되는 처벌조항을 제 · 개정하여 이전보다 강화함
-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

개정 전	개정 후
Section 133 - 거짓자료에 기반한 신고 오류에 대한 처	얼
50만 링깃 그리고/또는 5년 이하의 징역	50만 링깃 그리고/또는 7년 이하의 징역
Section 135 - 밀수, 관세포탈, 사기 등에 대한 처벌	
담배(tobacco)를 포함한 궐련 및 알코올이 든 음료를 제외	니하는 과세물건을 포함한 경우
<ul> <li>최초 위반시 벌금(관세액 20배 이하 또는 10만 링깃 중 큰 금액) 그리고/ 또는 3년 이하의 징역</li> <li>2회 이상 위반시 벌금(관세액 40배 이하 또는 50만 링깃 중 큰 금액) 그리고/ 또는 5년 이하의 징역</li> </ul>	<ul> <li>최초 위반시 벌금(관세액 20배 이하 또는 50만 링깃 중 큰 금액) 그리고/ 또는 5년 이하의 징역</li> <li>2회 이상 위반시 벌금(관세액 40배 이하 또는 100만 링깃 중 큰 금액) 그리고/ 또는 7년 이하의 징역</li> </ul>
담배(tobacco)를 포함한 궐련 및 알코올이 든 음료를 제외	l하는 금지품목을 포함한 경우
<ul> <li>최초 위반시 벌금(물품가치의 20배 이하 또는 10만 링깃 중 큰 금액) 그리고/ 또는 3년 이하의 징역</li> <li>2회 이상 위반시 벌금(물품가치의 40배 이하 또는 50만 링깃 중 큰 금액) 그리고/ 또는 5년 이하의 징역</li> </ul>	<ul> <li>최초 위반시 벌금(물품가치의 20배 이하 또는 50만 링깃 중 큰 금액) 그리고/ 또는 5년 이하의 징역</li> <li>2회 이상 위반시 벌금(물품가치의 40배 이하 또는 100만 링깃 중 큰 금액) 그리고/ 또는 7년 이하의 징역</li> </ul>
Section 137 - 뇌물 공여 또는 수수죄	
10만 링깃의 벌금 그리고/또는 5년 이하의 징역	50만 링깃의 벌금 그리고/또는 5년 이하의 징역
Section 138 - 기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20만 링깃의 벌금 그리고/또는 5년 이하의 징역	50만 링깃의 벌금 그리고/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신설) 관세법 위반 행위	

- (신설) 관세법 위반 행위
-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의 조작 및 삭제
- 재수출에 대한 관세 환급(drawback) 및 관세 환급의 불법 청구
- 부정확한 원산지 증명 등

#### 의무 기록 보관기간 연장

- 관세법 관련 기록의 보관기간이 기존 6년에서 7년으로 연장됨
  - (해당 기록물 범위) 회계·관리·재무·판매·유통 관련 기록, 로열티 계약서 등

#### Custom Act 2019

#### 관세 자유지역(free zones) 관련 규정 신설

- 관세 자유지역(free zones)은 관세영역 밖의 지역(outside a principal customs area)으로 간주되며, 말레이시아 역외(outside Malaysia)와는 다른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 자유지역에서의 통관처리 등 이와 관련한 새로운 지침이 생길 수도 있으나 아직 불명확함

#### 환승(Transit) 및 환적(Transhipment) 관련 규정 신설

- 환승(Transit) 및 환적(Transhipment)의 정의 규정
- (환승) 물품이 완전히 다른 국가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내의 2개 이상 관할세관 간의 물품의 이동 또는 외국의 관할세관에서 말레이시아의 관할세관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 (환적) 말레이시아 밖으로 선적하기 위해 선박(비행기)에서 다른 선박(비행기)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 또는 선박(비행기)에서 물품을 하역해 통관하거나 허가된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것
- 환승 및 환적에 대한 상세 절차 도입

7

9

- 이 중 일부는 환승·환적 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항, 환승·환적 물품의 소유자 또는 에이전트가 환승·환적 절차를 방해한 경우 관세 납부 및 벌금을 납부할 책무가 부과됨

#### 허가된 보세창고 관련 규정 신설

- 허가된 제조 보세창고(Licensed Manufacturing Warehouse) 내 관세대상 물품의 결손량 미증빙시 책임 부과
- 허가된 제조 보세창고의 관세대상 물품 수량에 결손이 발생했을 때 결손량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허가 소지자는 불법적으로 물품을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결손 물량에 해당하는 관세를 납부해야함
- 허가 소지자 의무 제공 조항 규정
- 허가 소지자는 자비로 관할세관과 시설을 허가된 보세창고에 의무적으로 제공할 것을 규정함

#### 10 관세 환급 관련 규정 강화

- 선납한 관세의 환급 청구 기간 규정(기존 관세법 16조 개정)
- 원산지증명 확인, 관세불복소 등으로 인해 선납한 관세의 환급청구시, 환급신청서는 원산지증명 확인
   에 대한 판단일, 관세불복소의 판단이 청구인에게 고지된 날짜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
- · 수입물품 수출시 관세환급 기한 단축
- 말레이시아에 수입된 이후 수출된 물품의 관세환급 기한이 기존 관세납부일로부터 12개월에서 관세 납부일로부터 3개월로 단축됨
- 관세환급 신청 최소금액 한도 인상
-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 기존 50링깃에서 120링깃으로 인상됨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

#### GST 영세율(0%) 적용 및 SST 제도의 부활<sup>17)</sup>

#### GST / SST란?

- · GST는 'Goods and Service Tax'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재화용역세로 해석할 수 있음
- SST는 'Sales and Service Tax'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판매용역세로 해석할 수 있음
- GST는 기존에 있던 SST를 대체하면서 도입된 세율이나, 기존의 SST는 5~10%로 기업이 부담하는 Single Stage Tax인 반면, GST는 6%로 단일화된 세율인 동시에 부가가치 창출 단계마다 부과되는 Multi Stage Tax로 최종 소비자까지 부담하는 구조를 지녀, 최근 말레이시아 소비심리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꾸준히 지목되어 왔으며 이로 소비자 및 기업의 불만이 높아짐
- 2018년 5월 총선에서 마하티르가 이끄는 집권여당(PH)은 이러한 민심을 적극 공략하여 주요 공략으로 'GST 폐지 및 SST 부활'을 내세우고 결과적으로 정권을 획득함
  - 이로 마하티르 총리 집권체제 일주일 만에 말레이시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GST 영세율을 발표함(2018, 5, 16 발표, 2018, 6, 1 도입)
  - (변경내용) 기존 GST 6%가 부과되던 상품 및 서비스(수입 포함)에 대해 GST 0%를 적용함 (단, 이미 GST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변동사항 無).
  - GST 영세율 적용은 SST의 부활 및 재도입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에 해당하며, 최종적으로 2018년 9월 1일부로 SST 제도가 본격 시행됨
  - (적용기준) Sales Tax Act 2018에 따라 수입 또는 제조 수준의 과세대상 물품에 대하여 판매세의 경우에는 5%, 10%, 또는 특정세율이 적용되며, 서비스세의 경우에는 6%나 특정세율이 적용됨

구분	GST (Goods and Service Tax, 재화용역세)	SST (Sales and Service Tax, 판매용역세)		
적용대상	거의 모든	재화 · 서비스		
부과 요율	대부분 6% <del>동률</del> 로 부과	5%, 6%, 10% 및 특정세율로 세분화		
부과단계	생산 → 판매로 이어지는 매 단계마다 부과	일반적으로 생산/수입/서비스제공 등 특정 단계에서 한 번만 부과		
주요 장점	(정부측면) 세수의 증가 및 탈세 감시 · 모니터링 용이, 국가신용도 및 투명성 제고	(기업측면) 민간소비 증가 및 내수촉진 유도를 통한 매출 상승, GST 신고비용 감소		

### 2. 수출입 통관



#### 말레이시아의 통관환경18)

■ 각 국의 통관환경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는 크게 물류성과지수(LPI)와 국경 간 무역(Trading across Borders) 용이성 수준 등이 있음

#### 물류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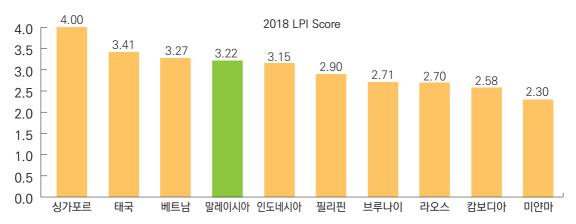
- 세계은행에서 2년마다 전 세계 물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통관절차 · 물류 인프라 · 국제 수송 · 물류경쟁력 · 배송추적 · 적시성 등 6가지 분야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지수
- 점수는 각 항목의 점수를 평균한 것으로 5점 만점이며, 점수가 5점에 가까울수록 해당국의 양하능력 및 물류환경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음

#### 국경 간 무역(Trading across Borders) 용이성 수준

- 세계은행에서 매년마다 각국의 대표 물품, 항구, 상대국 등을 지정하여 이를 해당국으로 수출 또는 수입 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산정하여 백분위로 나타낸 점수
- 100점 만점이며, 점수가 100점에 가까울수록 해당국에서 수출입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물류성과지수) 2018년 말레이시아의 물류성과지수(LPI)는 3.22점으로 이는 세계에서 41위, 아세안국 가운데는 평균을 살짝 웃도는 수치임

#### 연도별 말레이시아 물류성과지수(LPI) (2016-2018)

연도	LPI순위	LPI점수	통관절차	물류인프라	국제수송	물류경쟁력	배송추적	적시성
2018	41	3,22	2.90	3.15	3.35	3.30	3.15	3.46
2016	32	3.43	3.17	3.45	3.48	3.34	3.46	3.65



자료: World Bank

- 앞 표에 의하면, 2018년 말레이시아 물류성과지수는 2016년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강화된 세관 규정, 수입시 과도한 할랄 인증 요구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통관 효율화를 위해 서류 없는 수출거래, 통관정보의 인터넷 제공 강화 및 통관 후 검사 방식 도입 등 여러 정책적인 노력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현지 세관에서는 통관 시 검사 등 임의적인 검사가 일반적으로 수행되고 있음<sup>19</sup>
- (국경 간 무역 용이성 수준) 말레이시아의 국경 간 무역(Trading across Borders) 용이성 수준은 88.5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세계에서 49위, 동아시아 · 태평양 지역 내에서는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수치임<sup>20)</sup>

말레이시아 국경 간 무역(Trading across Borders) 용이성 수준(DB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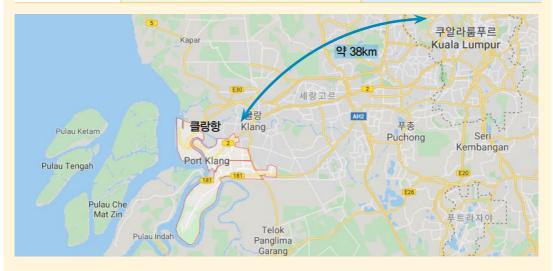
	수출시				수입시				
순위	점수	무역준수 시간	무역준수 비용	문서 <del>준수</del> 시간	문서준수 비용	무역준수 시간	무역준수 비용	문서준수 시간	문서준수 비용
49	88.5	83.0	80.0	94.7	91.3	87.5	82.3	97.7	91.4



자료: World bank

- 각 항목별 점수는 말레이시아에서 지정된 대표 조건(수입품목, 항구, 상대국)으로 수출입시 무역규정 및 문서규정을 준수하여 통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산출하여 백분위로 나타낸 것이며, 지정된 대표조건과 각 항목별 세부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음<sup>21)</sup>
- (대표조건) 말레이시아 수출입시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거래물품, 거래상대국, 거래항구 등을 지정하여 무역준수 및 문서준수 통관 시간 ·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구성함

구분	수출	수입
물품	HS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 · 음성 재생 기 ·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 · 재생 기와 이들의 부분품 · 부속품)	HS 8708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 및 부속품)
상대국	중국	태국
항구	클랑항(Klang port)	클랑항(Klang port)
거리	53km	53km
내륙운송 시간	4h	5h
내륙운송 비용	USD 190	USD 195



• 클랑항(Klang port)은 말레이시아 해안 최대의 관문이자 항구로, 2019년 기준 컨테이너 규모는 세계 12위, 전체 화물 취급량은 세계 17위를 기록하였으며 쿠알라룸푸르에서 약 3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음<sup>22)</sup>

• (무역준수 시간·비용) 지정된 대표조건으로 규정된 무역 및 통관 절차를 준수하여 수출입할 때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세관당국 또는 기타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통관·검사, 항만·국경에서의 처리 등으로 세부항목을 구성하고, 각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산출함

구분		수	출	수	입
세관당국에 의해	시간(h)	5.0		6.0	
요구되는 통관 및 검사	비용(USD)	47.5		47.5	
세관당국 이외 기관에 의해	시간(h)	0,	.0	0.0	
요구되는 통관 및 검사	비용(USD)	0.0		0.0	
항만 및 국경에서의	시간(h)	24.0		36.0	
처리	비용(USD)	165.0		165.0	
	지역	말레이시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균	말레이시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균
무역 준수	시간(h)	28	57.5	36	68.4
(Border compliance)	비용(USD)	213	381.1	213	422.8

- (수출시) 말레이시아의 무역준수(Border compliance) 수출통관 시간과 비용은 각각 28시간, 213달러가 소요되는데, 이는 동아시아·태평양지역 평균대비 시간은 약 51%, 비용은 약 44% 절감효과를 가지는 수치임
- (수입시) 말레이시아의 무역준수(Border compliance) 수입통관 시간과 비용은 각각 36시간, 213달러가 소요되며, 이는 동아시아 · 태평양지역 평균대비 시간은 약 47%, 비용은 약 50% 정도 절감효과를 가지는 수치임

• (문서준수 시간·비용) 지정된 대표조건으로 규정된 문서조건을 준수하여 통관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수출입시 각각 필요한 필수서류항목을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 이들을 모두 구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산출함

구분		수출		수입	
1		세관발행 수출신고서(K2)		세관발행 수입신고서(K1)	
2		상업송장		상업송장	
3		B/L		Packing List	
4		Packir	ng List	В,	/L
5		특혜원산지증명서 (ACFTA Form E)		특혜원산지증명서 (ATIGA Form D)	
6		SOLAS* 인증서		E-Gate(전자게이트) Pass	
7		_		Deliver	y Order
8		-		SOLAS* 인증서	
	지역	말레이시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균	말레이시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균
문서 준수	시간(h)	10	55.6	7	53.7
(Documentary compliance)	비용(USD)	35	109.4	60	108.4

- (수출시) 말레이시아의 문서준수(Documentary compliance) 수출통관 시간과 비용은 각각 10시간, 35 달러가 소요되는데, 이는 동아시아 · 태평양지역 평균대비 시간은 약 82%, 비용은 약 68% 절감효과 를 가지는 수치임
- (수입시) 말레이시아의 문서준수(Documentary compliance) 수입통관 시간과 비용은 각각 7시간, 60 달러가 소요되며, 이는 동아시아 · 태평양지역 평균대비 시간은 약 87%, 비용은 약 45% 절감효과를 가지는 수치임

\*SOLAS: Safety Of Life At Sea(국제해상인명 안전협약)

• 종합해보면, 말레이시아에서의 수출입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은 각각 (수출) 38시간, 248달러 / (수입) 43시간, 273달러로 수출입 모두에서 동아시아 · 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시간 및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남

		수	출	수	입
구분		말레이시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균	말레이시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균
무역 준수	시간(h)	28	57.5	36	68.4
(Border compliance)	비용(USD)	213	381.1	213	422.8
문서 준수	시간(h)	10	55.6	7	53.7
(Documentary comliance)	비용(USD)	35	109.4	60	108.4
국경 간 무역(Trading across borders) 용이성 지수	시간(h)	38	113.1	43	122.1
국경 간 무역 (Trading across borders) 용이성 지수	비용(USD)	248	490.5	273	531.2

- 이는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통관절차 원활화 및 효율화를 위해 통관 후 검사 등 여러 정책 들을 시행하고, 특히 '18∼19년에 걸쳐 말레이시아 최대 항구인 Klang항의 인프라, 장비, 시설 및 운영시스템의 개선과 전자기반의 화물 검사시스템을 도입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 한국에서 말레이시아까지의 해상운송은 여러 선사에서 인천, 광양, 부산항에서 정기선으로 Daily로 운송되며 대만, 싱가포르 등 환적(TS) 여부에 따라 보통 9일에서 최대 17일까지 소요됨
- 다만, 보루네오섬에 위치한 동말레이시아(사라왁, 사바)의 경우 직항 노선이 없으므로 클랑, 싱가폴, 파스 리구당에서 TS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통 21일정도가 소요됨

## 수입통관 절차<sup>23)</sup>

### A. 수입신고 준비



## A-1 통관관련 서류 준비

• 수입통관신고서(Customs Form No.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패킹리스트(packing list), 선하증권(B/L), 국제운송 운임내역서, 특혜원산지증명서(ex. 한-아세안 FTA의 경우 Form AK), Delivery Order, 관련 인증 및 허가서, SOLAS(Safety of life at sea) Certificate 등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함

# 《〈A, 수입신고 준비〉》 단계 유의사항<sup>24)</sup>

- 말레이시아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 통과를 거쳐야하며, 그렇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서는 이를 밀수로 간주하고 처벌함
- 모든 수입물품에는 말레이어 또는 영어로 된 라벨을 부착해야 함 - 따라서 영양 라벨링이 필요한 식품관련 수입품목의 경우 대상목록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수입물품에 대한 할랄 인증에 대한 부분을 미리 대비해야 함
- 수입승인 대상품목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 임시승인증명서(TCOA)를 통한 간이통관이 중단됨에 따라 승인인증서(COA, Certificate of Approval)를 취득해야 함
- 2014년부터 말레이시아 세관규정이 강화되어 B/L 작성을 위한 선적지정 통지서 제출시, 필수기재사 항이 완벽히 기재되지 않으면 통관이 지연됨을 유의

## A-2 적하목록의 제출

- •모든 수입화물은 적하목록의 제출이 요구됨
  - 제출기간은 수입화물 종류에 따라 다른데 선박의 경우 물품도착 후 24시간 이내 하역하기 이전, 항공 및 철도는 물품도착 후 세관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자동차는 수입하는 곳에 도착한 시점에 제출해야 함
- 그리고 화물이 전부 하역되면 하역 후 2개월 이내 또는 세관의 허락을 받은 기간 이내에 적하목록 확인서류 2부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 적하목록 제출시 유의사항

- 적하목록은 규정된 양식에 말레이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것이어야 함
- 원본과 복사본 각 1부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선박에 적하된 모든 화물의 목록, 선박내 모든 저장품의 목록, 통관항에 양륙별 각 상자의 표시, 개수, 내용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만일 적하목록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정확히 기재해야 함
- 선장이나 대리인의 보증 및 확인, 하송인과 화물인수인의 성명이 기재되어야 함

## A-3 양륙허가

- 해상이나 수로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말레이시아 영토 내 법적으로 인가된 장소 및 시간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양륙할 수 있음
  - 세관의 허가 없이 양륙하거나 하선한 경우에는 환적이 불가하며, 만약 허가 없이 양륙을 위해 다른 선박으로 물품을 옮겼을 경우, 원래 선박으로 물품을 이동시켜야 함(단, 허가된 어업용 선박에 실린 생선의 경우는 제외)

## A-4 원산지증명서 준비

•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C/O)는 협정에서 정한 서식인 AK 서식(Form AK)을 사용하여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Form AK) 발급 방법 안내

- (발급방법) Form AK는 기관발급 방식으로, 각 국에서 지정된 기관에서 물품이 원산지물품인지 심사\*한 후 발급받을 수 있음(전자발급 포함)
  - \* 수입예정지 관세당국에 수출품의 HS코드, 원산지판정 등과 관련한 사전심사 요청가능<sup>25)</sup>



- 대한민국: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 ASEAN: 말레이시아(국제통상산업부), 인도네시아(통상부), 브루나이(외교통상부), 캄보디아(상무부), 라오스(상공회의소), 미얀마(상무부), 필리핀(세관), 싱가포르(세관), 베트남(통상부), 태국(상무부)
- 만약 Form AK를 발급하여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세 안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경유국 발급기관에서는 경유 기간 동안의 수출자 신청에 의거, FTA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를 발급할 수 있음

# FTA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란?

- 연결원산지증명서란 최초 수출 당시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중간 수출 당사국에 의해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로, 한-아세안 FTA에서만 정해져있는 규정임
- (FTA 연결원산지증명서 적용가능 국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싱가폴, 미얀마,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한국

## 한-아세안 FTA 협정문 상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

- 2.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상품이 그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수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연결원산지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가.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것
  - 나.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 가 동일할 것. 그리고
  - 다. 제14조(검증)에 규정된 검증절차가 적용될 것

# FTA 연결원산지증명서 활용 예시<sup>2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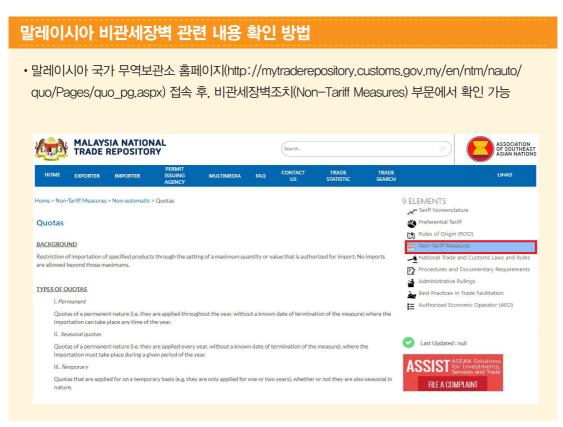
[활용예시] 한국에서 싱가포르 수출을 진행하고,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로 재수출한 경우, 최초 한국에서 발행된 AK Form을 사용하여 싱가포르에서 Back to back AK Form으로 재발행 후, 말레이시아에서 수입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단, 최종발행된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AK C/O)상 원산지는 '한국산(KR)'으로 표시됨



• 한-아세안 FTA 연결원산지증명서 관련 규정은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아국 간 중계무역에서 활용하는 규정으로, 주로 물류기지가 잘 발달되어 있는 싱가포르에서 발급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세안국가와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물류비용이 소요되므로, 물품은 직접 동남아시아 국가 간에 수출되고 서류만 핸들링하는 경우가 많아 연결원산지증명서가 직접 발행되는 일은 드문 편임<sup>27)</sup>

# A-5 수입수량규제. 수입허가 등 비관세장벽 확인<sup>28)</sup>

- 말레이시아의 수입규제는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서는 다소 낮으나, 국가정책상 전략적으로 간주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한된 수입허가시스템으로 엄격히 보호하고 있음
  - 수입허가시스템 적용 분야 : 철강산업, 시멘트, 자동차 부품, 화학생산품(폴리에틸렌 및 폴리 프로필렌) 등
- 수입수량 제한조치는 자주 적용되지는 않으나, 국내 생산업체 보호 및 적정 가격 수준 유지를 위해 일부 품목(쌀. 계란. 우유. 설탕 등)에는 수입시 수량제한이 적용되기도 함
- 말레이시아 국가 무역보관소 홈페이지에는 현재 시행 중인 수입 수량 · 금액 제한조치 등 수입규 제와 관련한 내용을 고시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출 전.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음



자료: 말레이시아 국가 무역보관소 홈페이지

## A-6 수입요건 구비 확인

• 또한 말레이시아 국가 무역보관소 홈페이지 비관세장벽조치(Non-Tariff Measures) 부문에서는 위생 및 검역 대상물품, 기술장벽 대상물품, 수입제한 대상물품 등 수입요건과 관련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음

### 수입관련 요건의 예시

분야	예시
위생 및 식물검역 조치(SPS)	둥근 양배추나 볶지 않은 커피원두의 경우, 말레이시아 검역서비스 사무국(MAQIS)에서 발행한 수입허가가 필요
기술장벽(TBT)	HS제8701호부터 HS제8705호까지의 오토바이부품은 MS 2413, UNECE(유엔유럽경제위원회) Regulation 등에 기재된 사양에 부합하여야 수입 가능
수입허가, 쿼터, SPS 및 TBT를 제외 한 수입 제한조치, 관세율 할당	목재, 둥그런 단면의 통나무는 수입금지규정에서 정하는 품목임

자료: 말레이시아 국가 무역보관소 홈페이지, AFTER MINISTRIES-AGENCIES MEASURES-REV(2)

- 수입 금지 및 라이센스 요구 사항은 2017년 4월에 발효된 Customs (Prohibition of Imports) Order 2017에 따라 규제되었으며, Customs (Prohibition of Imports) Order 2012는 이와 동시에 폐지됨<sup>29)</sup>
- Customs (Prohibition of Imports) Order 2017은 다음과 같이 총 4개의 스케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일부 품목은 수입이 절대 금지되고 일부 품목은 별도의 수입허가를 획득한 경우나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는 수입이 금지됨

## 막게이시아 스인그지제하 스케주 그서내여

	말레이시아 수입금지제한	! 스케울 구성내역	
스케줄	상	네 내용	
첫 번째	수입이 전면 금지되는 품목		
• 일부 방	송 수신기	• 특정 동물 사료	
• 교류 또	는 교류 및 지귤르 사용하는 액체 충전식 전기	가열백, 쿠션, 베개, 파우치 또는 패드	
• 모든 유	형의 차량을 위한 새로운 공압 스노우 타이어 달	및 새로운 재생 스노우 타이어	
•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피뢰기	• 벌집	
• 몬트리음	을의정서에 포함된 <u>물</u> 질	• 유독 화학 물질 및 무기물 등	
	part 1. 수입허가를 제외하고 조건부로 수입이	l 금지되는 품목	
	part 2. 수입허가를 제외하고 조건부를 수입이	금지되며, 특정 자유무역지역(free zone)을	
두 번째	활용할 수 없는 품목		
	part 3. 수입허가를 제외하고 조건부로 수입이		
	Labuan, Langkawi, Tioman 자유지역	(free zone)을 활용할 수 없는 품목	
• 이스라?	<u>벨</u> 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물품	• 설탕	
• 레이더?	당치, 무선 항행 보조장치 등	• 엔진 장착 또는 장착되지 않은 섀시	
• 자동차	차체	• 오토바이 모터가 달린 자전거 등	
• 세미 트	레일러용 도로 트랙터	• 특수목적 차량	
• 중고 브	레이크 및 서보 브레이크 등	• 제조되지 않은 담배	
	로로 에탄	• 광디스크 마스터링 및 복제기계 등	
• 유독 화		• 페닐 에틸 아민 및 그 염의 유도체 등	
• 히드로	클로로 플루오르 카본(HCFC) 등	• 합금강의 플랫 압연 제품 등	
	part 1.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조건부로 수업		
		J이 금지되며, 특정 자유상업지역(free commercial	
세 번째	zone)을 활용할 수 없는 품목		
		기금지되며, 멸종위기에 처한 종에 관한 국제무역법	
	(2008)의 적용을 받는 품목		

- 방탄복, 후추스프레이, 무기 및 탄약, 불꽃놀이
- 유희 기계(기구)
- 로테르담협약 규정 물질
- 중고 가전제품 등
- 맥주, 와인, 기타 발효음료 및 주류 리큐어
- 독성 및 유해 폐기물
- 거친 다이아몬드
- 중고 타이어
- 담배, 가정용 맥주 양조 장치 또는 장비

	part 1. 말레이시아 표준 또는 당국이 승인한 기타 표준 및 규정절차를 준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ᄖᄱᄱ	조건부로 수입이 금지된 품목
네 번째	part 2. 말레이시아 표준 또는 당국이 승인한 기타 표준 및 규정절치를 준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건부로 수입이 금지되며, 자유상업지역(free commercial zone)을 활용할 수 없는 품목

- 시멘트
- 기구가 장착된 플러싱 시스턴
- 전기기기 또는 액세서리 등

- 세라믹제품
-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자료: Malaysia Customs (Prohibition of Imports) Order 2017, WTO TRADE POLICY REVIEW REPORT BY THE SECRETARIAT MALAYSIA

### B. 수입신고 및 세관심사<sup>30)</sup>



## B-1 수입신고 전 준비

• 말레이시아 수입신고는 다강넷(DagangNet)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함

# 다강넷(DangangNet)이란?

- 서류 없는(paperless) 전자통관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말레이시아 통상 · 산업회의소의 위임 아래 설립되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무역원활화 촉진 및 단일통관창구 개발을 위해 지정한 서비스제공자로, 이를 통해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음
- 말레이시아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관세행정의 효율화와 간편성 제고를 위해 서류 없는 수출 거래를 여러 항만과 공항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통관 관련 정보의 인터넷 제공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sup>31)</sup>

# B-2 수입신고

• 말레이시아의 경우, 관세사 제도가 없어 포워딩 업체가 관세사(통관대리인) 역할을 함 32)

# 말레이시아 통관대리인의 자격33)

- 통관업을 할 수 있는 자격(license)을 취득해야만 관세업무를 할 수 있음
-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년에 1번 관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자격증은 2년 단위로 갱신이 필요함
-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포워딩 에이전트는 51% 이상이 부미푸트라(Burniputera, 말레이계 등 말레이시아 원주민을 뜻함) 지분의 회사여야 하며, 직원도 51% 이상이 말레이시아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함

## B-3 통관 서류<sup>34)</sup>

• 말레이시아 수입통관시, 세관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말레이시아 통관에 필요한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Bill of lading or consignment note where appropriate
- · Commercial invoices relating to the goods
- Import (C1) Declaration = Declaration of Goods Imported(Customs No.1)

#### 〈필요시 제출 서류〉

- Import License, Permit, and/or Letter of Approval for regulated commodities
- Foreign Exchange Control documents for export shipments of 100,000 ringgit or greater F.O.B value
- Certificate of Origin of the goods(FTA에 의해 낮은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 · Letter of Credit(endorsed) when used as payment method for the shipment
- Packing List (상업송장이 정확한 수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 C1A Value Declaration Form

(상업용) 수입품이 수입관세의 부분 면제를 받는 경우 추가적으로 1A세관양식의 제출이 필요하며, 이 밖에도 송장, 배송주문서, B/L, C/O, 포장명세서, 수입면허(수입금지 물품인 경우) 등 세관당국이 수출자 신고의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기타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 상업용 수입품은 일반적으로 화물의 송장가치가 1만링깃 이상인 수입물품을 말함

• 또한 말레이시아 서류는 반드시 규정된 형식을 통해 신고 되어야 하며, 해당 서류 작성 시에는 상자의 개수 및 설명, 관세부과 대상 물품의 무게 · 크기 · 수량 · 가치 원산지 등 물품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말레이시아 통관 서류 규정 양식

- (세관 No.1 양식)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상품
- (세관 No.2 양식) 말레이시아에서 수출되는 상품
- (세관 No.3 양식) 서말레이시아 및 동말레이시아 간에 상품이 오가는 경우
- (세관 No.8 양식) 환적용
- (세관 No.9 양식) 보세창고에서의 일시반출용

- 만일 수입품 신고항목의 구체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10일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서면약속을 한 후. 물품을 운송할 수 있음
- 또한 선박의 도착 후 수입품 적하목록이나 환적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세관 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하목록 제출 전에 화물의 양륙이나 환적이 가능함
  - 그러나, 위 경우에도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하고 검사받을 때까지 화물을 수입자나 화물 인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세관의 허가 없이 전달할 수 없음
- 선하증권, 허가서, 선적 적하목록 등을 제출하고 선박의 예상도착시간을 확정하면 선통관이 가능 하며, 물품 반입 14일 전에 서류 및 관세를 처리할 수 있음

## B-4 수입화물의 검사 및 가치평가<sup>35)</sup>

- 세관은 모든 수출입 물품 또는 과정에 대하여 이와 관련한 서류의 제출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음
  - 물품검사는 물품의 10~100% 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실제 말레이시아의 경우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 까다로운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는 편임
  - 말레이시아 통관은 95% 이상 검사없이 출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통관 역시 어렵지는 않으나. 한 번 위반이 적발되면 처벌이 매우 엄격한 만큼 주의가 필요함
  - 특히 수입허가 승인 필요물품의 경우에는 선적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통관이 거절 및 지연될 수 있으므로 더욱 유의해야 함
- 단.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수입허가 이전에 문서 및 샘플링 검사를 시행하며,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직접 조사를 시행함
  - 수입식품 관련 문서는 선박, 항공기 등 모든 수입창구에서 100% 검사되며, 수입식품 직접 검사는 육로의 경우에는 70% 정도가, 해상은 40%, 항공은 35% 정도가 실시됨

#### 수입식품 자동통관 조사와 샘플링, 샘플링 완료 후에 통관 01 Level 조사와 샘플링, 샘플링 완료 후 억류, 그 분석결과가 1983년도 관련문서 검사 후 통관 02 식품법과 1985년도 식품규제에 위반되지 않을 시 통관

수입 식품의 위험성을 결정하는 6가지 단계

의무조사를 수행하고 실험실 분석을 위해 샘플링

Level 수입식품 자동거절 06

Level

04

Level

05

03

• 세관에 신고한 수입상품의 가치는 WTO 세관평가시스템에 기초한 세관규정(1999)에 따른 거래 가치와 동일해야 함

## WTO 세관평가시스템에 기초한 세관규정(1999)에 따른 거래가치란?

- 말레이시아로 수출될 때의 가격 또는 상품에 지불되었거나 지불할 수 있는 가격으로, 이때 거래는 독립된 두 집단 간의 거래여야 하며, 만약 독립된 두 집단 간 이루어진 거래가 아닐 경우, 세관은 신고된 해당 수입물품의 가치가 실제 가치보다 낮게 신고 되었는지 조사하고 사후 수입검사를 실시함
- 사후 수입검사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관계를 조사하며, 두 집단 간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지와 서로 관련된 기업인지를 조사함(독점판매·프랜차이즈 등은 거래가치에 영향을 주는 합의로 간주됨)
- 사후 수입검사에서 세관이 수입물품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신고된 것을 발견한 경우, 세관은 세관 평가규칙을 통해 제품가치를 재평가함
- 세관직원은 관세법 위반 또는 그에 따른 규칙 · 면허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함이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모든 물품과 일체의 관련 물품 및 이동수단을 몰수할 수 있음
  - 물품 포장용기·포장·운송수단·등록된 순 중량이 2백톤을 초과하지 않는 선박이나 국제 운송에 관련된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 일체의 장부나 문서를 육상 또는 영해 내의 어떤 장 소에서든 몰수할 수 있음
- 몰수를 담당하는 세관직원은 지체 없이 몰수에 대한 내용 및 근거를 물품 소유자에게 인편으로 전달하거나 주소 또는 거처에 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통보함
  - 단, 해당자에 대한 몰수가 위반자 · 소유자 대리인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나 선박 · 항공기에서 선주나 조종사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보가 필요하지 않음

### C. 관세납부 및 신고수리



## C-1 관세 납부<sup>36)</sup>

말레이시아의 수입신고부터 수리까지는 대략 1~2일 정도가 소요되며,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 및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

## 〈〈C. 관세납부 및 신고수리〉〉 단계 유의사항<sup>37)</sup>

- 수입시 관세 등은 수입물품이 반출되기 전 수입된 장소 관할 세관에 현금, 수표 또는 은행 어음을 통한 방법으로 납부되어야 함
- 수표를 통한 납부의 경우에는 은행의 보증이 확인되어야 함
- 소매식품류, 가구류, 의류 및 철강제품의 경우 관세가 통관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여 직접 세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소비세는 자동차, 담배, 4륜 구동차량, 오토바이, 주류 등에 부과되며 최소 20%에서 최대 150%까지 부과될 수 있음
- 세관에서 임의로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낮다고 판단하여 송장가격을 높여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수입통관 시 수입물품에 대한 판매세 및 소비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 납부 후 환급보다는 허가된 보세공장(Licensed Manufacturing Warehouse, LMW)이나 보세창고(Bondedn Warehouse, BW)에서 무관세로 들여오는 것이 좋음

# 수입물품 관세율 적용시점

-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경우, 세관의 허가를 받아 물품을 보세창고에서 반출시키는 날의 관세율이 적용됨
- 관세가 철폐되었거나 관세부과대상이 아니었다가 관세가 정해진 물품, 수입금지 해제로 관세를 정해야 하는 물품 등의 경우에는 세관이 물품을 내보내는 날의 관세율을 적용함
-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물품은 비통관 물품임이 밝혀진 날의 관세율 또는 물품이 압수된 날의 관세율 중 더 높은 것을 적용함

## C-2 관세 감면<sup>38)</sup>

• 말레이시아에서 수입관세를 감면받는 방법은 크게 한-아세안 FTA를 통한 관세감면과 MIDA를 통한 관세감면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1) 한-아세안 FTA를 통한 관세감면

-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로서, 한-아세안은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말레이시아 수입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를 통해 관세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 한-아세안 FTA 관세감면 혜택은 HS코드에 따라 FTA 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정확한 HS코드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함
- 말레이시아로 물건을 수출하는 경우, HS코드가 우리나라와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상대국 (말레이시아) 수입자로부터 HS코드를 확인받는 것이 좋음
- 한-아세안 FTA 관세감면은 협정에서 정한 규격 및 지침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적용되며, 원산지증명서가 잘못 발급된 경우에는 관세감면혜택에 배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말레이시아의 경우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Form AK)를 구비하면 세관에서 FTA 세율적용이 가능

## (2) MIDA를 통한 관세감면(Surat Pengesahan MIDA, SPM)

- 말레이시아 현지기업이 판매하지 않으며 제조업체가 직접 제조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 또는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이 취급하지 않는 소재·부품·포장소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음
- 또한 이를 말레이시아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도 판매세의 감면이 가능함
- MIDA를 통한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수입업자가 신청서를 MIDA(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에 제출해야 하며, 또한 수입자는 수입상품을 모니터링하고 관련서류와 기록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이 때 수입물품은 재무부가 허가한 수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허가기간 동안 수량 초과 시 초과 수량에 대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함
- 일부 서비스 산업(운수업 · 물류업 · 항만 및 공항 운영 · 수도 · 가스 등 공공서비스 · 통신서비스 · 연구 개발 · 호텔 및 관광사업 등)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혜택이 적용되어 해당 서비스업에 사용하기 위해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 및 장비, 소재를 수입하거나 말레이시아 공급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판매세의 감면이 가능함

• SPM을 적용받고자 하는 업체는 MIDA에 사전 신청 후 MIDA의 확인서 및 감면대상 물품의 리스트를 세관에 제공하여 세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MIDA 감면 신청	관세 감면 적 <del>용</del> 신청	판매세 감면 적용신청
https://investmalaysia.mida.gov.my.	주 세관관리국(산업부문)	https://mysst.customs.gov.my/
온라인신청, 전자서명 형태로 발급	서면신청	온라인신청

관세감면 관련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 홈페이지
 www,mida,gov,my/home/forms-&-guidelines-for-manufacturing-sector/posts/

## C-3 관세의 면제 및 보증

• 말레이시아로의 일시적 수입 또는 수리를 위한 수입 등, 일부 수입의 경우에 한해 관세 및 판매 세가 면제됨

# 일시적 수입

- 홍보, 전시회, 무역박람회 및 조사 또는 재수출을 위해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로, 이 경우 수입관세와 판매세가 면제되며 관세면제는 수입시점에서 요구할 수 있음
- 이 때 세관의 수입관세와 판매세 납부금액에 대한 보증은 은행이 수행
- 관세면제가 적용된 해당 일시적 수입물품은 판매되거나 처분될 수 없으며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수출되어야 함

# 수리를 위한 수입

- 수리를 위해 수입되며 최종적으로 재수출되는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로, 이 경우 수입관세와 판매세가 면제대상이 됨
- 이때 해당 조건은 동일한 경로로 수입되고 재수출 되는 상품이거나, 상품의 수입 및 재수출이 세관공 무원에 의해 등록된 경우, 은행의 보증을 받은 경우 등이 있음

## C-4 수입물품 국내운송 및 불법수입물품

- 세금 납부 후, 말레이시아 내에서 물품 운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관 No.3 양식 및 물품관련 기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 불법수입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은 국가에 귀속되며 이에 대한 관세, 창고비, 하적비 등의 기 타비용을 모두 수입자가 납부해야 함

## D 물품반출 및 환급신청<sup>39)</sup>



- 수입품목에 대한 품목분류와 서류 및 물품검사가 모두 끝나고 이에 대해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 관세를 비롯한 각종 비용을 납부하면 물품반출이 최종적으로 허가되며 통관절차가 마무리됨
- 또한 만일 아래와 같이 관세를 지불한 수입물품이 재수출되거나, 말레이시아에서 제품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원료 · 포장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관세의 90~100%를 환급받을 수 있음

# 말레이시아에서 관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

- 수출되는 완제품이 관세청장이 승인한 토지에서 제조되는 경우
- 관세청장이 제조나 포장에 사용된 물품의 수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보관한 경우
- 수입관세 지불 후 수입일로부터 12개월 또는 관세청장이 허가한 그 이상의 기간 내 제품이 재수출된 경우
- 수출신고서에 관세환급 요청을 할 것이라는 서면 공지를 하고, 재수출후 6개월 또는 관세청장이 허가한 그 이상의 기간 내에 규정된 양식으로 환세환급을 요청한 경우
- 관세청장이 허가한 장소나 경로를 통해 완제품이 수출된 경우
- 재수출되는 반품 물품의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관세 부과 대상 수입물품이 말레이시아 도착 후 세관의 통제범위를 벗어나기 전 손상 및 파괴되거나 사고로 분실된 경우
-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 그러나 실제 말레이시아에서 환급처리 시, 업무처리 기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환급 금액이 납부금액보다 감액되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함
  - 따라서 말레이시아 수입 시,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기 보다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보세제조 창고(LMW) 허가 취득 후 처음부터 무관세로 들여오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보다 효율적 인 방법임
- 수입 물품에 대한 사후조사는 말레이시아 관세법 제17조에 의거, 과거 3년간의 수입실적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따라서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절차가 마무리 되어도 물품 소유자는 수입 후 최대 6년까지 물품의 구매, 가격, 가치 등 물품 수입과 관련한 모든 서류 및 기록을 보관하여야 함
  - 수입관련 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경우 물품가치의 최소 2배 이상, 최대 10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만링깃~50만링깃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수출통관 절차40)

### ■ 수출통관 절차 및 요건

• 말레이시아 수출통관 역시 수입통관과 비슷한 절차로 이루어짐



- 수출신고는 수출자 · 물품의 소유자 또는 위탁자 · 세관이 승인한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음 $^{41)}$
- 수출신고를 하는 자는 수출신고시 세관의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제시할 의무가 있음

# 말레이시아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 B/L
- 모든 송장
- C/O 또는 분석 확인증
- Packing List
- 수출 허가서(수출 금지물품인 경우)
- Foreign Exchange Control Form(외화관리양식) (수출품의 가치가 100,000링깃 이상인 경우)
- 세관이 수출자의 신고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타 문서
- 세관 No.2 양식(말레이시아 수출서류 규정양식)
- 수출신고는 수출 후 7일 이내에만 하면 됨
  - 그러나 송장이나 선적서류 등은 수출을 위한 물품 이동시 항구에서 필요할 수 있음
  - 송장에는 물품의 가치, 용도, 수량, 수출 목적지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 세금. 요금 및 부과금

- 수출세는 일반적으로 원유 팜유 등 말레이시아의 주요 수출 원자재에 대해 부과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수출세로 상품의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세율을 사용함
- 수출관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4.5%에서 20%이내의 비율로 수출세율이 부과됨
  - 산 동물, 특정씨앗 및 라탄 등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특별세율이 적용

### 말레이시아 수출세(2017)

라인의 수	수출세율	품명
10	특별세	산동물, 특정씨앗. 라탄
5	4.5~8.5%	크루드 팜오일
2	5% 20%	팜넛 및 커널(파종에 적합한 것) 팜넛 및 커널(파종에 적합하지 않은 것)
110	15%	거친 상태의 나무(108라인), 특정 가공되지 않은 납, 납 웨잉스트 및 스크랩
21	10%	팜 커널 오일, 크루드 페트로늄 오일, 철 웨이스트 및 스크랩, 구리의 웨이스트 와 스크랩, 구리의 모합금, 니켈 매트, 소결한 산화니켈,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니켈로 합금한 것, 알루미늄 웨이스트 및 스크랩
69	5%	특정 산동물, 팜넛, 팜 커널오일(정제,탈색,탈취한 것), 슬래그, 회 및 잔재물, 은, 플래티늄, 정제한 동, 가공하지 않은 것, 정제하지 않은 아연의 괴

자료: 말레이시아 관세당국. WTO TRADE POLICY REVIEW REPORT BY THE SECRETARIAT MALAYSIA

- 최근 상당 물품의 수출세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4년 482라인(HS 9단위)부터 2017년 217라인(HS 10단위)이 해당됨
  - 해당 품목의 수출세가 감소됨에 따라 말레이시아 수출세 관련 재정수익은 2012년 19.7억 링깃에서 2016년 9.8억 링깃으로 감소함
- (수출세의 면제) 무역견본으로 신고한 수출품의 경우에는 수출관세가 면제되며, 재수입이 가능함

## ■ 수출금지 및 제한

- 수출금지 및 제한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요건을 취득해야만 수출이 가능하며, 수출금지 물품의 수출 라이센스는 다음과 같이 구분됨
  - 해당 수출금지 및 제한 품목은 말레이시아 Customs Order 2017 수출금지 조항에 의거함

수출금지	ᅵ민ᅵᄀ	니네니	、게히
アコロハ			: /기긛

구 분	설 명
1	수출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물품
2	수출 라이센스 하에서 수출금지가 제외되는 조건적 금지물품
3	특정 부분에서 제외되는 조건적 금지물품

- 특정부분에서 제외되는 조건적 금지물품, 국제멸종된 종에 대한 국제무역의 통제물품(2008 Act)

자료: Customs Order 2017(수출금지)

## 한-말레이시아 AEO MRA 체결<sup>42)</sup>

- 2017년 10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아시아 · 유럽정상회의(ASEM) 관세청장 회의에서 한-말레이시아 AEO MRA(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를 체결함
  -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로 수출을 진행하는 국내 AEO 기업들에게는 통관시 검사비율 축소, 우선 통관진행, 수입서류의 간소화 등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됨

# AEO MRA란<sup>43)</sup>?

-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에게 수출입과정의 세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여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기로 한 관세 당국 간의 약정

#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AEO MRA 체결국가 및 체결년도<sup>40</sup>

기준국가	체결국수	체결국가(체결년도)
한국	20개국	캐나다('10), 싱가포르('10), 미국('10), 일본('11), 뉴질랜드('11), 중국('13), 홍콩('14), 멕시코('14), 터키(''14), 이스라엘('15), 도미니카공화국('15), 인도(''15), 대만('15), 태국('16), 호주('17), 아랍에미리트('17), 말레이시아('17), 페루('17), 우루과이('17), 카자흐스탄('19), 몽골('19)
말레이시아	3개국	일본('14), 홍콩('16), 한국('17)

## 말레이시아 AEO 공인업체 리스트 조회방법

• 2019년 12월 기준, 말레이시아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AEO 공인업체는 총 57개사임



자료: 말레이시아 관세청 홈페이지

-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있으며 파나소닉, 인텔, 3M, 로레알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AEO 인증을 받아 혜택을 누리고 있음

말레이시아 AEO 업체 혜택 □ 관세 후불 납부 가능 □ 관세 환급 절차 간소화 □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시 상호인정국가에 대해서도 동일 혜택 부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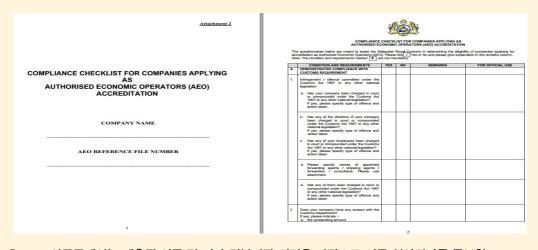
## ■ 말레이시아 AEO 신청 절차

• 말레이시아 AEO 신청 가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짐

# 말레이시아 AEO 신청 절차<sup>45)</sup>



- ① 신청 기업은 신청서, 적합성 점검표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AEO 사무국에 제출함
  - (제출서류) AEO Secretariat, Rotal Malaysian Customs(RMCD), Trade Facilitation and Industrial Section, Customs Division, Level 4 North, No 3. Persiaran Perdana, Precint 2, 62592 Putrajaya, Malaysia
  - (적합성 점검표) 세관의 요구사항, 상업용 기록물 관리 시스템, 직원교육 및 훈련, 정보교환 및 접근, 화물 보안, 위기관리 및 사고 복구 등 66개 문항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문서



- ② AEO 사무국에서는 제출된 서류 및 기타 정부기관 의견을 바탕으로 서류 심사결과를 통보함
- ③ 서류심사 합격시, AEO 사무국 및 계정관리자는 해당 신청 기업의 현장 유효성 검사를 실시함
- ④ 현장 유효성 검사에서 요구사항을 충족한 경우, AEO 패널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AEO 공인업체로 선정 가능

## ■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 현황

• 2019년 기준,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는 총 259개 업체임(AEO 공인여부 공개에 동의한 기업에 한함)



자료: 한국 AEO진흥협회

• 우리나라 AEO 공인 효과



자료: 한국 AEO진흥협회

- 우리나라 AEO 공인의 효과는 크게 기업 및 정부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우리나라 AEO 신청 방법 및 절차<sup>46)</sup>
  - 인터넷을 통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신청서, 자체 안전관리 평가서, 안전관리 현황 설명서, 이외 업체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작성 및 신청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UNI-PASS(http://portal.customs.go.kr) → 업무처리 → AEO 포탈 → 신청서 작성
- 서류심사 및 예비심사 관련 문의: 한국AEO진흥협회(http://www.aeo.or.kr)
- 신청서 및 서류 접수 후에는 공인심사 또는 종합심사가 실시되며, 심사가 통과되면 AEO 심의 위원회에서 결과처리를 통해 최종적으로 AEO 공인 및 증서교부가 이루어짐

#### 공인심사와 종합심사의 절차비교

구분	공인심사	종합심사		
대상	AEO 신규 신청 업체	유효기간 만료 예정인 AEO 업체		
접수	관세평가분류원	관세청 AEO센터		
서류심사	(사)한국AEO진흥협회	(사)한국AEO진흥협회		
공인(등급조정)	AEO심의위원회	AEO심의위원회		
유효기간	1. A등급 : 5년 2. AA등급 : 5년 3. AAA등급 : 5년	1. A등급 : 5년 2. AA등급 : 5년 3. AAA등급 : 5년		

# AEO 공인 및 증서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산정되며, 종합심사에 따른 새로운 유효기간은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됨

99

제 || 절 | 말레이시아의 통관제도

# 3. 관세일반



## 관세평가<sup>47)</sup>

- 말레이시아는 2000년에 개정된 1999년 관세 규정(Rules of Valuation)에 근거 WTO 관세평가 협정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수입과세가격은 CIF를 기준으로 함
  - 관세평가 협정에 따라 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평가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의 거래 가치, 공제가치, 계산된 가치 또는 유연한 기타 평가를 기반으로 함
  - 재무부 장관은 관세평가 관리 섹션에서 권장하는 최소 상품 가치를 승인하며, 승용차 및 오토바이의 가치 평가와 관련해서는 세관이 거래 가치 방법을 채택하기 위한 관행을 검토함

# 세율<sup>48)</sup>

- 2017년 기준, 전체 수입품목의 56.2%에 면세가 적용되었고, 42.8%에는 종가세가, 1.0%에는 종가세 이외의 관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됨
  - 종가세 이외의 관세부과는 주로 농산물에 적용되며 실질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결정됨
    - 종가세 이외의 관세 종류에는 종량세, 복합관세, 선택관세가 있으며 2017년 기준 부과 건수, 비율 및 품목은 다음과 같음

## 2017년 말레이시아 종가세 이외 관세 부과 상세목록

세율	종가세 이외의 관세 내	상세			
세프	부과비중	품명	품목수		
종량세 약 50%		파인애플	1 개		
	약 50%	알코올 음료	58 개		
		궐련,담배	5 개		
복합관세	약 40%	식용과일	20 개		
		담배제품	21 개		
		재용해용 잉곳스크랩	1 개		
선택관세	약 10%	특정 종이	1 개		
		특정 팬(fan)	1 개		

## 말레이시아의 품목군별 세율 수준

	실행세율			MFN 세율		
품목군	산술 평균 관세율	면세 비율	관세율 상한	산술 평균 관세율	면세 비율	관세율 상한
동물성생산품	30.9	7.9	168	3.2	89.4	50
유제품	20.8	5.0	288	3.7	82.5	50
과일, 채소, 시굴	101.4	11.0	<b>\1000</b>	2.9	74.0	90
커피, 차	18.1	4.2	69	5.6	44.4	15
곡물 및 곡물조제품	14.4	18.7	312	5.5	68.9	50
종유, 지방및유지	31.5	4.2	<b>&gt;</b> 1000	1.9	65.2	20
당류와설탕과자	14.9	0	32	2.4	82.4	15
음료및담배	230.1	0	<b>&gt;</b> 1000	81.6	27.7	<b>&gt;</b> 1000
면	4.0	20.0	5	0.0	100.0	0
기타농산물	7.2	28.5	235	0.6	92.8	25
어류및어류제품	7.7	50.8	40	0.7	91.7	20
광물및금속	17.6	0.1	30	7.1	50.3	60
석유	5.0	0	5	0.6	87.8	5
화학제품	11.5	0.8	65	2.5	84.7	50
목재, 지류 등	19.1	4.1	35	9.7	47.4	40
직물	19.0	0	35	8.8	31.3	30
의류	20.7	0	30	0.2	99.0	20
가죽제품, 신발류 등	21.8	0	40	10.3	54.9	40
기계류	9.1	8.8	40	3.2	75.9	35
전자기기	13.8	25.8	30	4.1	73.1	30
운송장비	14.2	3.9	35	12.0	39.1	50
기타제품	10.0	19.2	35	4.5	70.2	50

자료: http://stat.wto.org/TariffProfiles/MY\_E.htm, 세계무역기구 통계(2019. 11월 검색)

## 사전심사제도<sup>49)</sup>

- 말레이시아는 품목분류,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에 대하여 관세청에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사전심사는 관세국장이 서면 발행하는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관세법에 따른 수입·수출· 제품의 생산·제조 소비세법 및 서비스세법에 따른 과세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에 대한 지침 역할을 함
  - 사전심사 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 · 신청인의 대리인이 관세청 기술부서나 주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대상은 한 개의 물품 · 활동 또는 서비스에 한함
  - 각 신청에 대하여 수수료 200링깃이 부과되고, 분석이 필요한 경우 분석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본 발급신청 시 발급비 50링깃이 부과됨
- 세관의 사전심사결과는 신청 접수 후 90일 이내에 발급되며, 추가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석기관으로부터 분석결과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가 발급되고, 사전심사 결과는 3년간 유효함
  - 세관의 결정에 수정을 요하는 오류가 있거나, 사실 또는 법적 근거에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관련 법령의 변경, 판단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사실 또는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경우, 세관 판결의 수정을 요청하거나 판결에 대해 거부할 수 있음
  - 세관의 결정에 대해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신청 시 갱신이 가능하며, 갱신이 승인된 경우 기존 결정의 만료일로부터 2년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됨

• 말레이시아의 사전심사 결과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Dagangan : PARTS FOR ELECTRICAL

DISCHARGE MACHINE

Nama Perdagangan : Diamond Guide

Jenama : OEM Model : M117

#### Kod Tarif (Perintah Duti Kastam 2012):

8466.93 000

Tarikh Kelulusan : 02 Februari 2016

#### Keterangan barangan:

Barangan yang di namakan sebagai diamond guide adalah merupakan parts yang digunakan untuk plastic mould wire electrical discharge machine (WEDM).

Barangan diperbuat daripada seramik dan *diamond piece* dengan *casing* yang diperbuat daripada *metal*.





Kegunaan/fungsi barangan adalah sebagai : guide the sparking brass wire to cut the variable profiles in the steel plate/block. The movement of the sparking brass wire which led by both diamond guides is to control via Computer Numerical Control (CNC).

Barangan digunakan secara berpasangan (pair) semasa wire electrical discharge machine beroperasi. Satu diamond guide akan dipasang pada bahagian atas dan satu lagi akan dipasang pada bahagian bawah pada workpiece di mana steel material berada di antara keduadua diamond guide tersebut atau ditengah-tengah.

Ketua Pengarah Kastam Malaysia memutuskan barangan tersebut sesuai diperjeniskan di bawah kod tarif 8466.93 000 sebagai parts and accessorie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machines of headings 84.56 to 84.65: For machine of headings 84.56 to 84.61 berdasarkan fakta-fakta dan keterangan di atas.

Barangan merupakan *parts* yang digunakan khusus untuk *Wire Electrical Discharge Machine(WEDM)* .

자료: 말레이시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my)

### 불복제도<sup>50)</sup>

- 관세 항소법원(CAT: Customs Appeal Tribunal)은 1967년 관세법, 1972년 판매세법, 1975년 서비스세법 및 1976년 국내소비세법에 정한 사항에 대한 관세청장의 판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재심 청구에 대해 심리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기구임
  - 또한 관세청 판정은 상기의 관세법, 판매세법, 서비스세법 및 국내소비세법에 의거해 기업부 문의 사업 활동 계획에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됨
  - 관세청이 내린 판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당해 판정은 일정 기간 신청인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관세청 판정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음
    - 상품의 품목 분류·관세 부과대상 서비스 여부 판정·상품과 서비스의 가액결정 원칙에 관해 관세청 판정 신청 가능
    - 판정 신청 시 충분한 사실 자료와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한 서면제출 필요
    - 상품 수입 또는 서비스 제공 전에 관세청 판정을 신청하여 판정을 받을 수 있음

## **환급제도**51)

- 관세법 section93에 의거, 국내에서 추가 가공되어 추후 재수출될 물품의 경우 관세 환급이 가능하며,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은 아래와 같음
  - 수출물품은 세관의 승인을 받아 제조되었어야 함
  - 제조공정에서 완제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재료와 부품에 대하여 적절한 회계계정이 존재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함
  - 원재료와 부품이 제조자에 의해 수입되고, 수출물품의 일부분으로써 관세/세금이 납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수출되어야 함
  - 제조공정이 관세법에 따른 "제조"의 정의에 부합하여야 함
  - 환급신청이 관세환급의 경우 JKED no.2 서식, 판매세법의 경우 Sales Tax Form 3.또는 8.에 의해 제출되어야 함
  - 위의 서류는 수입거래의 경우 Customs Form1.에 의해, 수출거래의 경우 Customs Form 2.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함
    - 환급금이 지불된 후에 세관에 의해 환급에 대한 검증이 있을 수 있음

### 관세 이외의 제세

## ■ SST(Sales and Service Tax/판매용역세)<sup>52)</sup>

- 2015년 4월부터 말레이시아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6%의 GST(상품용역세)가 부과 되었으나, 판매용역세를(SST)를 재도입하는 "2018 판매세법"과 "2018 용역세법"이 '18년 8월 국회를 통과하여 9월 1일자로 시행되었음
  - 말레이시아는 유가 하락으로 세수가 줄어들자 SST를 폐지하고 '15년 4월 1일부로 GST (상품용역세)를 도입하여 거의 모든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던 세금을 6%의 동률로 적용하였으나, 마하티르 총리의 재집권 이후 GST 법안 철폐를 주요 공약으로 삼아 이를 실현함
- 판매세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조, 판매, 사용, 처분을 등록한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조품과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됨
  - 판매세율은 통상 10%로 부과되며, 「2018 판매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상품은 예외적으로 5%, 자동차, 알코올 음료, 양주, 담배, 궐련, 타이어, 튜브 등을 제외한 상업 목적이 아닌 개인 수화물이나 말레이시아로 들여오는 수입품에 대하여는 상품별로 차등 부과됨
- 용역세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용역에 해당하는, 「2018 용역세법」 제9조에 규정된 과세대상 용역에 6%가 부과되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발급과 갱신, 그리고 보조 신용카드와 발급과 갱신에 각각 25링깃의 용역세를 부과함
- SST 제도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GST는 2018년 6월 1일자로 영세율(0%)이 적용되어, 동해 8월 24일자 「2018 상품용역세(폐지)법」으로 정식 폐지됨<sup>53)</sup>

#### 이전(GST 제도)

\*GST(Goods and Services Tax) 생산에서 유통까지 각 단계마다 부과되는 소비세

대부분 품목의 세율 6%로 동률 세액공제가 되는 세금 환급제도가 있음

폐지일: 2018년 8월 24일

#### 이후(SST 제도)

\*SST(Sales and Service Tax) 생산·수입·서비스 등의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한번 부과되는 소비세

세율 5~10%로 세분화됨: 수출품목별 세율 확인 필요 세금 환급제도가 없음: 수출품목별 면세여부 확인 필요

시행일: 2018년 9월 1일

자료: 농식품수출정보(지구촌리포트 70호). 2018.08

### ■ 특별소비세

- 국내 소비세는 1976년 국내 소비세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제세를 뜻함
- 과세 대상 상품은 2004년 국내 소비세법에 기재되어 있으며, 주요 대상 및 적용세율은 아래와 같음

자동차: 65~105%사륜차: 60~105%이륜차: 20~30%

• 주류: 주종에 따라 상이하나 맥주류의 경우 리터당 175링깃, 와인류의 경우 150~450링깃 등

• 담배: 개당 0.40링깃

• 유당음료(Sweetened Beverages): 리터당 0.4링깃

## ■ 법인세

- 말레이시아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따라 부과되는 법인세는 말레이시아 거주자가 영위하며 말레이시아에 의해 관리되고 통제되는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경우에 따라 보통 17~24% 정도의 세율이 부과됨
- 거주 기업과 비거주 기업: 24%
- 과세 연도 개시일 현재 납입 자본금 250만 링깃 이하인 거주 기업
  - 과세 소득의 최초 50만 링깃: 17%
  - 초과분 과세 소득: 24%
- 석유 산업의 석유 채굴 등 상류 부문(petroleumupstream)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38%의 석유 소득세(Petroleum Income Tax)가 부과됨

## ■ 개인소득세

• 말레이시아의 개인소득세는 소득구간에 따라 0%에서 28% 정도 부과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는 개인소득세 인상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60만~100만 링깃: 개인소득세 26% 부과
100만 링깃 초과: 개인소득세 28% 부과
비거주자(non-resident): 28% 부과

- 모든 개인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 파생되거나 또는 말레이시아로 송금되는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음. 그러나 비거주자는 말레이시아 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가짐
- 세율은 개인의 거주자 신분 여부에 의해 차등 적용되고, 거주자 신분은 1967년 소득세법 7절에 따라 체류 기간에 의해 결정되며, 통상적으로 1년에 182일을 초과하여 말레이시아 내에 거주 하는 개인을 거주자로 간주함<sup>54)</sup>

# 보세창고 및 자유지역55)

# (1) 말레이시아 보세제도

■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물품은 도착 또는 착륙 즉시 세관의 보세창고나 관세청장이 승인한 특허보세창고(Licensed warehouse) 중 한 곳에 보관되어야 함

# 보세창고(Bonded Warehouse, BW)

- 보세창고란 세관장의 허가 하에 세관이나 개인 및 법인이 설치하여 외국물품 혹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하는 곳으로, 수입수속이 끝나지 않은 회물을 보관하는 창고이므로 수입물품이 이 이 창고에 보관되는 동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 보세창고의 종류는 크게 세관관할 보세창고와 개인 또는 법인이 신청을 하면 세관장이 특허를 주는 특허보세창고(Licensed Warehouse)로 구분할 수 있음
  - 단, 세관 보세창고가 없거나 해당 물품의 무게·수량·부피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세관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경우, 해당 물품은 관세청장의 허가 하에 세관이 관할하는 기타 장소에 보관될 수 있음
  - 또한 가연성 물품이나 다른 물품에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품의 경우, 세관의 허가 없이 어떠한 보세창고에도 장치될 수 없음
- 보세창고에 보관되거나 보세창고의 보관 면제를 받은 모든 관세부과 대상 물품의 수입자는 보세창고 관할세관에 수입품을 신고하여야 함
  - (신고기한) 물품이 세관의 통제를 벗어나기 전 또는 물품이 양륙한지 1개월 내에 이동하지 않는 경우
  - (신고방법) 수입자 또는 수입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규정된 양식인 세관 No.9 양식을 작성하여 보세창고의 세관 공무원에게 제출
  - (관세납부)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통관시킬 경우, 수입관세 및 판매세 등의 제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통관 당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부과됨

- 특허보세창고(Licensed Warehouse)는 개인 또는 법인이 신청을 하면 세관장이 특허를 주는 보세창고를 말하며, 이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특허보세창고 면허를 취득해야 함
  - 관세청장은 보세창고에 관세부과 대상 물품이나 기타 물품의 보관을 허가하는 면허를 교부 또는 취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 (면허 취득방법)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신청인의 무역 방식 사항, 보관 물품 종류 및 보세 창고의 위치, 기간, 조건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류를 보세창고가 위치한 지역 담당 세관에 제출
  - (관세의 면제) 특허보세창고에 보관된 관세부과 대상물품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관세의 전체 또는 일부가 면제됨
    - 물품이 재수출을 목적으로 일시 수입된 경우
    - 물품이 무역거래를 위한 견본품으로 신고된 경우
    - 파손 · 누출 등 불가항력의 사고로 인해 대상 물품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 보세제조창고(Licensed Manufacturing Warehouse, LMW)는 물품의 완제품 제조공정 및 포장 등의 활동이 허가된 보세구역으로, 특허보세창고(Licensed Warehouse)에 제조공정 면허가 추가된 보세창고를 말하며, 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보세허가 창고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보세제조창고(LMW)는 주 관세지역(Principal Customs Areas, PCA) 내 어떤 곳에든 설립이 가능하며, 수출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
  - (허가 신청방법) 일반적으로 생산제품 전체를 수출용으로 생산하는 회사 또는 원자재나 부품을 주로 수입하는 회사에 한하여 보세창고 신청에 필요한 정보 및 제조사의 위치 등 추가정보가 기입된 신청서를 지역담당 세관에 제출해야 함
  - (관세의 면제) 보세제조창고(LMW)에서 제조공정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자재, 부속품 및 기계장비 등은 관세 면제 대상임
    - 보세제조창고(LMW) 반입 시, 관세가 면제되는 원재료 및 부품 목록은 보세제조창고 승인 시에 함께 발급됨
    - 보세제조창고(LMW)에서 제품을 생산 및 제조공정을 수행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으나, 세관의 사전승인 없이 과세대상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이 이루어져서는 아니 됨

- (물품 반출방법) 보세제조창고에서 제조된 물품은 관세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국내소비 또는 수출을 위한 목적으로 반출될 수 있음
  - 물품을 국내소비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보세공장 담당 세관에 세관 No.9 양식을 제출하고 수입물품의 관세 계산 방식으로 산출 및 부과된 관세를 납부해야 함
  -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 담당 세관에 세관 No.8 양식을 제출 후 반출해야 함

# (2) 말레이시아 자유지역(Free Zone)

■ 말레이시아 자유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및 산업에는 최소한의 통관절차만 적용 되며, 관세법(1967) 제31조 수출입 금지 조항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 관세지역 (Principal Customs Areas, PCA) 외의 지역으로 간주됨

# 자유지역(Free Zone, FZ)

- 말레이시아 자유지역법(Free Zone Act, 1990) 및 규정(Free Zone Regulation, 1991)에 의거 중계무역 촉진, 수출용 물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재무부 장관이 지정한 곳을 말함
- 자유지역(FZ)은 크게 **자유산업지역**(Free Industrial Zone, FIZ)와 **자유상업지역**(Free Commercial Zone, FCZ)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자유산업지역(Free Industrial Zone, FIZ)는 물품의 제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유지역을 말함
  - (주요혜택) 완제품 수출 등 통관시 최소한의 절차 및 수출지향 입주 업체 대상 제조공정투입 원료·컴포넌트 부품·기계류 및 장비의 면세 혜택 제공
  - (입주요건) 전체 제품 또는 제품의 80% 이상\*을 수출하는 회사 또는 원료 및 부품을 주로 수입하는 회사
    - \* 단, 말레이시아 재무부 내 위원회 및 세관의 승인 하에 의무 투자비중을 60%까지 낮출 수 있음
- 자유상업지역(Free Commercial Zone, FCZ)은 거래(소매거래는 제외) · 소분(breaking bulk) · 분류 · 재표시 및 운송을 포함하는 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유지역을 말함
  - (주요혜택) 최소한의 통관절차, 판매 및 기타 부가가치 활동 등 상업활동의 수행 가능
  - (지정현황) Klang Port 북항, 남항, 서항 및 자유지역, Pulau Indah MILS 물류허브, Butterworth, Bayan Lepas, KLIA 등 13개 지역

# 자유산업지역(FIZ) 내 제세별 면제 요건

제세 종류	면제 요건
관세	완제품 내 현지조달 부품의 가치가 40% 이상인 경우, 또는 완제품 내 현지조달 부품의 가치가 40% 미만이나 최종제품 생산과정에서 비원산지재 료가 실질적인 변형을 거쳤음을 입증한 경우
상품용역세 (GST)	자유지역(Free Zone) 간 물품의 반출입
서비스 공급 판매세	수출용 상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ex. 제조 서비스 · 선박 및 항공기 건축 및 개조 서비스 · 부유식 구조물 유지보수 및 수리점검 서비스 · 물품 설치 서비스 · 수리 및 개조 등을 위한 서비스, 석유 및 가스산업 균질화 서비스, 가열 및 기타 관련 활동의 혼합 서비스 등)를 제공하고, 서비스 공급 60일 이내에 해당 물품이 수출되는 경우

# 자유상업지역(FCZ) 내 제세별 면세 요건

제세 종류	면제 요건
관세/ 상품용역세(GST)/ 서비스 공급 판매세	자유상업지역(FCZ) 내 거래, 자유상업지역(FCZ) 간 거래, 자유상업지역(FCZ)으로의 반입거래, 자유상업지역(FCZ)으로부터의 반출거래 등거래유형에 따라부과 또는 면제됨

# ■ 핵심허브(Principal hub)<sup>56)</sup>

- Principal Hub('PH') 혜택에 관한 법률이 2018년 12월 3개의 공보 주문을 통해 제정되었으며, 2019년 10월 말레이시아 투자 개발국("MIDA")은 PH 2.0 인센티브로 언급하여 PH 인센티브를 개선했다고 발표함<sup>57)</sup>
  - 이로 인해 변경된 사항 중 하나는 기존에 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 Procurement Center)
     또는 지역물류센터(Regional distribution Center)로써의 지위를 승인받은 업체를 PH에 포함하는 내용임

- 국제조달센터(International Procurement Center, 'IPC')는 말레이시아 및 해외에 소재하는 기업에 원재료, 부품, 완제품을 조달 · 판매하는 회사들의 모임을 통칭하며, 지역물류센터는 회사의 그룹이 자체 브랜드로 생산한 완제품, 부분품 및 부품을 말레이시아 국내외의 판매점, 수입 업체, 자회사 또는 비관계회사로 배송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화물의 재포장, 라벨링 등의 부가 가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임
- PH는 위험관리, 의사결정, 전략적 비즈니스 활동, 거래, 재무, 관리 및 인적 자원을 포함한 주요 기능을 관리, 제어 및 지원하기 위해 지역 또는 글로벌 비즈니스 및 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기반으로 하는 현지 법인을 의미함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PH는 영업활동에서 파생 된 거래 및 서비스 수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감된 소득세율(concessionary corporate income tax rates 'CIT RATE')을 적용할 수 있음<sup>58)</sup>
  - PH는 또한 원자재, 부품 또는 완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유통하기 전에 자유산업지역, 허가된 제조창고, 자유상업지역 및 생산·재포장·화물통합을 위하여 보세 창고로 반입할 때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말레이시아의 통상정책

- 1. 최근 말레이시아의 통상정책 동향
  - 말레이시아의 전반적인 동향
  - 정권 교체를 통한 61년만의 신정부 출범
  - 동아시아 및 중동 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 주력
  - 온라인 · 모바일 쇼핑객의 증가 및 전자결제 시장의 발전 가능성
  - 온라인 식료품 시장의 더딘 성장 및 발전 가능성
  - 한-말레이시아 양국 간 이슈 사항
  - 한 · 말, 할랄 협력 등 4건의 양해각서(MOU) 체결
  - 제3차 한국-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최
  - 한·말, 정상회담 개최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협의
  - 말레이시아, 한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
  - RCEP, 15개국 협정문 체결에 따른 동아시아 경제통합 가시화
- 2. 말레이시아의 수입규제
  - 말레이시아의 비관세장벽
  - 말레이시아의 무역구제
  - 수입허가 및 할랄인증
- 3. 말레이시아의 수출규제
  - 수출규제
- 4. 말레이시아의 전자상거래

# 1. 최근 말레이시아의 통상정책 동향



#### 말레이시아의 전반적인 동향59)

#### ■ 정권 교체를 통한 61년만의 신정부 출범

- 지난 2018년 5월 총선에서 마하티르(Mahathir)가 이끈 희망연대(PH)가 여당연합인 국민전선 (BN)을 누르고 승리하면서, 1957년 영국 독립 이후 61년 만에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룸
  -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경제 정책은 최근 큰 변화 양상을 갖게 됨
- 새롭게 출범한 마하티르 신정부는 공공부채 감축, 민생 부담 경감, 제도 개혁, 실용주의에 입각한 대외경제정책 추진 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함<sup>(6)</sup>
  - 특히 대외경제와 관련해서는 "동방정책"의 부활을 통해 한국 및 일본과의 경제협력 강화, 신규 자동차 브랜드 육성, 對중국 경제의존도 축소 등을 구체적인 방향으로 설정함

# 동방정책이란?

-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은 인적자원 개발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등 제조업 강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발전을 추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마하티르 총리가 지난 1983년부터 추진한 정책을 말함
- 동방정책은 최근 마하티르 총리의 정계복귀로 다시금 재조명 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정부에서 현재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는 '신남방정책'과도 기조를 같이함
- 따라서 우리나라의 '신남방정책'과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이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조화롭게 추진될 경우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2019.03.13.)

# ■ 동아시아 및 중동 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 주력

- 2019년 10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기존의 'Vision 2020'을 대체하여 향후 10년간 국가발전 전략의 토대가 될 '공동번영 Vision 2030(Shared Prosperity Vision 2030)'을 발표함<sup>61)</sup>
  - 말레이시아의'공동번영 Vision 2030'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아시아의 경제중심(Economic Centre of Asia)이 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최근 말련 정부는 주요 교역국과 전략적으로 FTA를 추진 및 체결 중에 있으며, RCEP 협상 등 다자간 무역 자유화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sup>62)</sup>
  - RCEP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역내포괄적경제파트너십으로 체결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통합 글로벌 공급망을 원활하게 하여 말레이시아의 투자처로서의 매력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전망됨<sup>63)</sup>
- 이뿐만 아니라 말련 정부는 최근 이슬람 국가 및 비동맹 국가 등의 지위도 적극 활용하여 중동 지역과의 경제협력도 대폭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중동 시장은 신규 수요와 발전 기회가 많은 블루오션으로 말련 정부는 이슬람 금융, 교육, 의료관광 등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중동시장 진출 및 이슬람 시장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sup>64)</sup>

# ■ 온라인 · 모바일 쇼핑객의 증가 및 전자결제 시장의 발전 가능성<sup>65)</sup>

-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로 2017년 말레이시아의 온라인 쇼핑 및 모바일 쇼핑 매출은 2012년 대비 각각 376%, 243%씩 큰 폭으로 증가함
  - **(인터넷 이용률)** 2012년 66% → 2017년 81%로 약 15% 증가(▲)
  - **(스마트폰 보유율)** 2012년 40% → 2017년 73%로 약 33% 증가(▲)
- 말레이시아 온라인 · 모바일 쇼핑객들은 주로 20~30대 연령의 젊은 층이며, 이들이 온라인 · 모바일 쇼핑을 선호하는 까닭은 주로 '저렴한 가격' 때문으로 나타남(말레이시아 통신 및 멀티미디어 위원회 설문, 2017)
- 추후 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어 투자가치가 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 시장이 매우 발달한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업체의 진출이 다소 유리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온라인 · 모바일 쇼핑객의 증가와 동시에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은 전자결제 시장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보안과 안전, 신중한 소비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전자결제보다는 현금결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말레이시아 국가 및 소비자 특성상 전자결제 시장의 성장은 온라인 · 모바일시장 성장 추세에 비해 매우 더딘 편임
  - 하지만 현재 말레이시아의 높은 인터넷·스마트폰 보급률과 신기술에 대한 적응력· 흡수력이 빠른 젊은 층으로 구성된 주 소비층은 전자결제 시장이 성장하기에 매우 유리한 환경임
  - 따라서 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 및 전자결제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거래'를 기반으로 신중한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는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온라인 식료품 시장의 더딘 성장 및 발전 가능성<sup>66)</sup>

- 최근 말레이시아 온라인 · 모바일 쇼핑 시장이 급성장 하는 추세에 있으나, 온라인 식료품 시장은 매우 느리게 성장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은 특히 식료품의 경우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며 냄새를 맡아 신선도를 확인하는 것을 선호함
  - 이는 말레이시아 인구 대부분이 무슬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종교적 영향도 다소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온라인 · 모바일 시장 및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온라인 식료품 시장 역시 발달할 가능 성은 충분히 존재함
  - 최근 말레이시아 여성의 대학진학 비율과 독신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말레이시아 여성들의 경제력과 구매력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1인 여성 소비자의 구매력 증가는 '도시에 거주하는 싱글 여성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자신을 위한 소비'를 추구하기 때문에 건강·신선제품 위주의 식료품, 미용 및 개인관리용품 등의 시장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함
  - 이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혼밥·혼술·혼영(혼자 밥이나 술을 먹고, 영화를 보는 것) 등 혼자 즐기는 문화가 주를 이룬 우리나라의 트렌드와도 상통하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말레이시아의 온라인 식료품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기업이 있다면, 이러한 말레이시아 소비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식료품의 신선도와 품질에 대한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의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통해 유통과정 및 신선도 정보를 제공하거나 콜드체인 기술의 도입, 할랄인증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 구매력이 강한 1인 여성 소비자를 공략하여 간단한 조리과정만 거치면 요리가 완성되는
     1인분 반조리 식품이나 남는 식재료 없이 특정 요리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적정량의 식재료와 레시피를 함께 판매하는 '레시피 딜리버리' 서비스 등의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음

# 한국-말레이시아 양국 간 이슈 사항

# ■ 한-말, 할랄 협력 등 4건의 양해각서(MOU) 체결

• 지난 '19년 3월, 한-말 정부는 양국의 협력 증진을 위해 산업·교통·스마트시티·할랄 산업 등 4개 분야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한-말 MOU 체결 분야 및 주요 내용

협력 분야	주요 내용 및 목적
① 산업	제조업 4.0 대응을 위한 전기차, 스마트제조, 의료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공동연구 추진 및 한-말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독려
② 교통	육상·해상·항공 등 교통 전 분야에서 회물·여객 수송, 안전·보안, 친환경 교통,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협력 증진
③ 스마트시티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관련 협력 사업 추진 및 양국 스마트시티 관련 경험 공유
④ 할랄산업	할랄인증 및 표준개발, 할랄제품개발, 할랄 공급망 확대 등 협력을 통한 할랄시장 저변 확대 및 제3국 할랄시장 공동진출

자료: 산업부 '경제외교 활용포털'

- 이와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MOU 체결을 통해 한─말 양국 간 경제 및 정책 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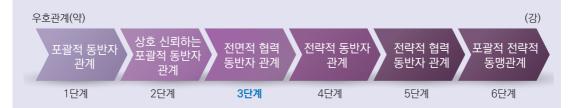
# ■ 제3차 한국-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최<sup>67)</sup>

- 지난 '19년 9월, 제3차 한국—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말 FTA) 공식 협상이 4일간 서울에서 개최됨
  - 금번 협상에서는 상품·원산지·협력·통관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상품시장 추가자유화 및 양국 경제협력 기반 구축,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됨
-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제4대 교역국이자 신남방 정책 중심 국가로서 한-말 FTA 체결 시, 우리기업의 교역 다변화 기반을 확보하고 수출동력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 한-말. 정상회담 개최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협의

- 지난 '19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말레이시아 마하 티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짐
  - 양국 정상은 한-말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이를 반영해 수교 60주년을 맞는 2020년,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함

# 전략적 동반자 관계란? (88)



- 보통 수교를 맺은 국가는 두 국가 간의 '관계'를 다양한 수식어를 붙여 정의하는데, 이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이나 규정은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안보·경제 분야의 우호관계에 따라 관계를 위와 같은 6단계로 정의하고 있음
- 1단계에서 6단계로 갈수록 우호관계가 긴밀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3단계에 해당하는 관계로, 보통 '전략적'이라는 수식어는 양국 간 군사·안보적 협력관계의 필요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고, 국제사회 다자관계 속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며, 우리나라가 '전략적 동반자 단계'를 맺은 국가는 EU,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캐나다, UAE, 말레이시아 등이 있음
- 참고로, 우리와 최상위 단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은 국가는 미국이 유일함

자료: 외교부, 한겨레신문

# ■ 말레이시아. 한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sup>69)</sup>

-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20. 01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 일본 · 베트남 등 4개국産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함
  - 철강제품은 말레이시아 수입규제 관련 제소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분야로, 현재 한국산 철강제품에는 해당 조치를 포함해 총 3건의 반덤핑 조치가 부과되어 있는 상황임

# 현재 한국산 철강제품에 적용되는 말레이시아 반덤핑 관세 조치 내용

적용 품목	HS CODE	주요 내용	적용 기간
두께 0.3~6.5mm, 너비 1,600mm 이상의 iron 또는 non-alloy steel 냉연코일(CRC)	7219.31.0000 7219.32.0000 7219.33.0000 7219.34.0000 7219.35.0000 7220.20.1000 7220.20.9000	<ul> <li>제소기업: Bahru Stainless Sdn Bhd</li> <li>대상국가: 한국, 중국, 대만, 태국</li> <li>한국 적용관세: 현대BNG스틸 0%, 현대제철 0%, 포스코 4.44%, 기타 7.27%</li> </ul>	18. 02. 08- 23. 02. 07 (5년)
두께 0.2~2.6mm, 너비 700~1300mm 이상의 iron 또는 non-alloy steel 냉연코일(CRC)	7209.15.0000 7209.16.1000 7209.16.9000 7209.17.1000 7209.17.9000 7209.18.9900 7225.50.1000 7225.50.9000	- 제소기업: CSC Steel Sdn Bhd - 대상국가: 한국, 중국, 베트남 - 한국 적용관세: 포스코 0%, 현대제철 11.55%, 기타 21.64%	19. 05. 08– 21. 05. 23
너비 1,300mm 이상의 iron 또는 non-alloy steel 냉연코일(CRC)	7209,15,0000 7209,16,9000 7209,17,9000 7209,18,9900 7225,50,9000	<ul> <li>제소기업: Mycron Steel CRC Sdn Bhd</li> <li>대상국가: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li> <li>한국 적용관세: 포스코 0%, 기타 3.84%</li> </ul>	19.12.26– 24.12.24

자료: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 Federal Government Gazette, KOTRA

• 금번 조치는 주로 냉연코일을 생산하는 말레이시아 현지 철강업체가 한·중·일·베트남산 철강제품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자국 철강산업에 큰 피해를 미치고 있다고 문 제를 제기하며 기소한 것에 따른 결과임

#### 금번 한국산 냉연코일(CRC) 관련 말레이시아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 과정

사건 및 일 자	개 요
반덤핑 조사 개시 19. 03. 29	<ul> <li>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이하 MITI)는, 한국・중국・일본・베트남산 냉연코일(Cold-rolled Coil)에 대한 새로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함</li> <li>제소기업: Mycron Steel CRC Sdn Bhd(마이크론 철강 그룹)</li> <li>해당품목[HS CODE]: 폭 1,300mm 이상의 iron 또는 non-alloy steel 냉연코일(CRC)</li> <li>[HS 7209.15.0000, 7209.16.9000, 7209.17.9000, 7209.18.9900 및 7225.50.9000]</li> </ul>
예비 판정 19. 08. 27	MITI는 한 · 중 · 일 · 베트남산 냉연코일(CRC)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을 완료했음을 발표함     - 예비판정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일(예비판정일)로부터 최종 판정일까지 한국 기업의 경우 포스코를 제외한 기타 기업에 대해 3.84%의 관세가 부과되며,     - 최종 판정은 말레이시아 「상계 및 반덤핑 관세법과 규정 1993(The Counter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Act 1993)」에 의거, 예비 판정일로부터 120일 내에 이루어져야 함
최종 판정 19. 12. 26	• MITI는 한 · 중 · 일 · 베트남산 냉연코일(CRC)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최종판정 결과, 위 4개산 수입제품들이 말레이시아 국내 철강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최종 결정 · 개시됨을 발표함 - 구체적으로 최종 결정된 한 · 중 · 일 · 베트남産 철강제품의 반덤핑 세율은 한국의 경우 3.84%로 가장 낮게 책정되었으며, 일본은 최대 26.39%, 중국은 최대 26.38% 또는 베트 남산과 함께 다른 별도의 반덤핑 세율이 부과됨 - 반덤핑 관세의 최대 부과기한은 5년이며, 이에 따라 금번 반덤핑 수입규제 조치는 2024년 12월 24일까지 시행됨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2019, 04, 02)

- 최근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주요국의 대한(對韓) 수입규제조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철강제품 은 전체 수입규제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적용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수입규제 품목임
  - 최근 말레이시아의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어 당장 중국이나 베트남 기업에 대한 경쟁력은 확보할 수있으나, 향후 말레이시아 정부의 철강 관련 수입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계속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
  - 따라서 우리 정부 및 말레이시아 철강 수출 기업은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RCEP, 15개국 협정문 체결에 따른 동아시아 경제통합 가시화<sup>70)</sup>

# RCEP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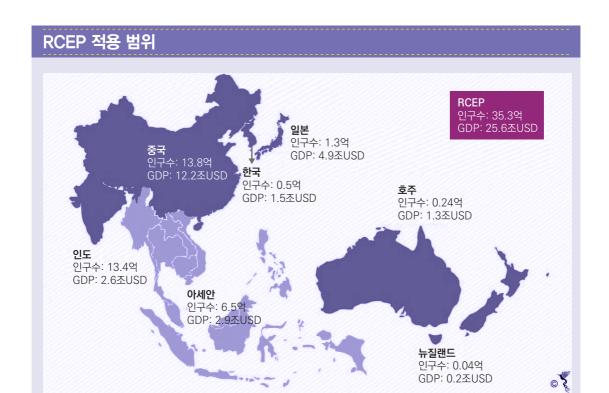
•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약자로, 아세안 10 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체결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 FTA

자료: 관세청 FTA 용어집, 산통부 보도자료

- 지난 '19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3차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 참여국 정상들이 협정문 타결을 선언함
  - RCEP은 '13년 5월, 1차 협상이 개시된 이후 약 7년간 협상이 진행돼왔으며, 현재 20개 챕터에 대한 협정문을 타결하고 상품·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협상도 막바지 단계로 일부국 간의 합의만 남겨둔 상태임
  - 금번 RCEP 협정문 타결과 함께 참여국 정상들은 현재 협정문 타결에서 제외된 인도의 동참을 돕고, 2020년 최종서명을 목표로 노력하는 것에 합의함
- RCEP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포괄적인 수준의 경제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통합 글로벌 공 급망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말레이시아의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RCEP 참여국은 모두 말레이시아의 무역 및 투자 파트너로 말레이시아 무역 비중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수출 61,3%, 수입 63,6%)
  - RCEP 체결을 통한 16개국 내의 무역 개방 확대와 장벽 감소는 이미 개방된 경제구조를 가진 말레이시아에 부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우리기업들은 RCEP 참여국에 고르게 진출해 있는 상황으로, 투자진출기업 간 유기적인 분업과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RCEP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인도 등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동남아 진출 시 말레이시아를 테스트베드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 채널을 구축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123



주: 인구수 및 GDP는 World Bank(2017) 기준

자료: The ASEAN POST, KOTRA 해외시장뉴스(2019.01.09.), World Bank(2017)

# 2. 말레이시아의 수입규제



# 말레이시아의 비관세장벽<sup>71)</sup>

- 말레이시아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입장을 지지하며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추구하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일부 비관세조치를 시행·강화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지녀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큰 위험이 있으며, 실제로 말레이시아 반덤핑 조사신청 건수는 평균 1년에 1건 정도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매우 적은 편임
  - 그러나 일부 산업, 특히 자동차 산업이나 화학 및 식품관련 산업의 경우에는 소비자 건강· 안전 및 환경보호,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말레이시아 당국의 강력한 보호와 비관세조치가 적용되고 있음

# 비관세장벽 및 비관세조치(Non-Tariff Barriers or Measures)란

#### (1) 용어 정의

-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 : 분명하게(surely) 무역의 교역량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관세 이외의 정책 조치
-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NTM) : *잠재적으로*(potentially) 무역의 교역량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세 이외의 정책 조치
  - 이처럼 비관세장벽(NTB)과 비관세조치(NTM)는 이론적으로는 상이한 개념이나, 실제로는 자주 혼용 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상호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움(따라서 동 책자에서는 두 용어를 동일 하게 보며, 구분지어 사용하지 않음)

#### (2) 분류 체계

- 비관세조치 분류 체계에는 여러 기준이 존재하나, 동 보고서에서는 가장 널리 통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 MAST의 비관세조치(UNCTAD\*, 2012)의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함
- (MAST의 비관세조치 분류체계) 비관세조치를 A부터 P까지 총 16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1) 수입관련 조치와 (2) 수출관련 조치로 분류하며 (1) 수입관련 조치는 다시 (a) 기술적 조치와 (b) 비기술적 조치로 분류함
- \*UNCTAD TRAINS(Trade Analysis Information System) DB: UNCTAD와 WTO, World Bank가 공동으로 구축한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NTB 관련 종합 데이터베이스

비관세장벽 분류체계 및 코드(UNCTAD)

	분류 및 코	<u> </u>	내용
	기스되	А	동식물위생검역조치(SPS)
	기술적 조치	В	무역기술장벽(TBT)
		С	선적 전 검사 및 기타 절차
		D	조건부 무역보호 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Е	수량제한 조치
		F	가격통제조치(부가세 및 부가요금 포함)
수입		G	금융 조치
관련		Н	경쟁 관련 조치
조치	조치 비기술적 조치		무역 관련 투자 조치
		J	유통 제한
		K	판매 후 서비스 제한
		L	보조금(수출보조금 제외)
		М	정부조달 제한
		N	지적재산권
		0	원산지 규정
수출 괸	년 조치	Р	수출 관련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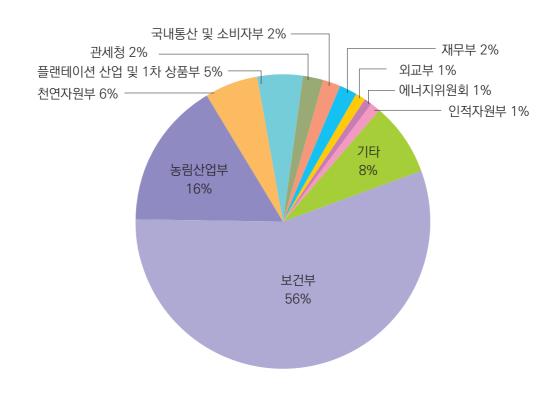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2018)

#### 〈참고사항〉

동 자료는 UNCTAD NTM DB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UNCTAD는 참여 국가(현재 기준 한국 포함 총 91개국)의 제출자료 및 국내법령을 기반으로 일관된 방식의 데이터를 구축하므로, 통계상 비교는 용이하나 자료 구축 대상이 다소 제한적이고, 법령내용을 정량화 하여 수집하는 과정에서 과대해석 및 왜곡의 가능성이 있음을 분석에 앞서 밝힘(검색일자: '20, 2월)

▷ 이에 따라 동 자료에서 나타나는 비관세조치 건수는 각 국가/산업 및 유형별로 식별되는 비관세조치 내용의 단순합계를 의미함. 따라서 해당 건수가 높다고 하여 그것이 해당 국가와 산업에 강력한 규제가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음. 그러나 건수가 많다는 것은 실제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비관세조치와 관련된 근거법률과 조항이 얼마나 많이, 또 복잡하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척도를 제공하므로, 비관세조치 건수는 조치의 존재여부 및 해당국가 내 비관세조치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의미를 가짐

- 말레이시아의 비관세조치는 현재 보건부, 농림산업부, 천연자원부, 관세청, 재무부, 외교부 등 총 19개의 정부부처에서 관할하고 있음
  - 이 중, 대부분의 비관세조치는 보건부 · 농림산업부 · 천연자원부 위 3개 기관에서 시행됨 (약 78%)  $^{72}$



# ■ 국가별 비관세조치 적용 현황

#### 국가별 비관세조치(NTM) 적용 현황

순			비관세장벽 유형(코드)								
위	국기당	총합	Α	В	С	D	Е	F	G~0	Р	
	전체	73,550	29,719	25,736	1,784	332	6,420	1,452	323	7,784	
1	중국	7,256	1,642	4,054	113	0	312	51	58	1,026	
2	미국	6,757	3,244	2,583	481	0	191	39	1	218	
3	파나마	4,736	4,239	383	72	0	22	8	0	12	
4	인도	4,598	2,311	1,483	47	0	212	43	23	479	
5	페루	3,618	3,161	142	7	12	255	10	0	31	
6	태국	3,276	1,257	1,098	178	4	116	170	1	452	
7	뉴질랜드	3,090	1,569	1,382	29	0	41	5	3	61	
8	한국	1,929	706	723	27	0	94	71	1	307	
9	캐나다	1,735	234	1,153	20	0	158	32	2	136	
10	호주	1,715	278	839	3	0	101	69	1	424	
18	말레이시아	920	324	372	6	0	49	29	0	140	

주 1: UNCTAD NTM DB, 순위는 총합 기준(검색일자: 2020, 02, 07)

주 2: 비관세장벽 유형 코드는 이전 장의 [표 – 비관세장벽 분류체계 및 코드(UNCTAD)]를 참고

자료: UNCTAD TRAIN

- UNCTAD DB 기준, 국가별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적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중국 〉미국 〉 파나마 〉인도 〉 … 〉 한국 〉 … 〉 말레이시아 순으로 많게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A(동식물위생검역조치, SPS)와 B(무역기술장벽, TBT) 유형을 가장 높게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A(SPS)와 B(TBT)가 높은 건수를 기록한 까닭은 해당 유형들이 모두 사람과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동시에 전 분야에 걸쳐 가장 폭넓게 적용되는 조치이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국가별 비관세조치 적용 현황 중 상위에 위치한 중국, 미국 등의 경우 국내법상 비관세조치 목적과 관련된, 그 중에서도 특히 SPS 및 TBT를 목적으로 하는 조항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시사됨
  - 또한 **말레이시아**의 경우 비관세조치는 총 920건으로 전체 조사대상 국가 중 18위를 차지하였으며, 유형은 A(SPS)와 B(TBT)가 전체의 약 76%로 역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냄

# ■ 말레이시아 10대 비관세조치

• 다음으로는 말레이시아의 주요 비관세조치 현황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말레이시아 10대 비관세조치를 추출함

#### 말레이시아 10대 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순위	NTM 유형(코드)	조치 내용(상세)	건수	비중
1	무역기술장벽(B)	제품 품질 · 안정성 · 성능 요건	166	18.0%
2	동식물위생검역조치(A)	식품 · 사료 내 특정물질의 제한적 사용	127	13.8%
3	무역기술장벽(B)	라벨링 요건	90	9.8%
4	동식물위생검역조치(A)	라벨링 요건	73	7.9%
5	무역기술장벽(B)	제품 특이 요구사항	40	4.3%
6	동식물위생검역조치(A)	인증 요건	37	4.0%
7	수량제한조치(E)	비(非)자동 라이센스	34	3.7%
8	수출관련조치(P)	재수출 관련 조치	18	2.0%
9	수출관련조치(P)	수출금지	17	1.8%
10	동식물위생검역조치(A)	포장 요건	16	1.7%
	말레이시아 1	618	67.7%	
	기타(10대 순위	302	32.8%	
	<u>ā</u>	920	100%	

자료: UNCTAD TRAINS(검색일자: 2020, 02, 20),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표준협회(2018)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가공

-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많이 시행된 비관세조치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제품 품질· 안전성·성능 요건으로 나타남(166건, 1위)
- 다음으로는 동식물위생검역조치(A) 관련 식품·사료 내 특정물질의 제한적 사용(127건, 2위), 무역기술장벽(B) 관련 라벨링 요건(90건, 3위), 동식물위생검역조치(A) 관련 라벨링 요건(73건, 4위) 등으로 나타남

# ■ 말레이시아 주요 비관세조치 유형별 적용 품목(HS 2단위)

- 말레이시아 10대 비관세조치 유형에 해당하는 A(동식물위생검역조치), B(무역기술장벽), E(수량제한조치), P(수출관련조치)의 주요 적용품목을 HS 2단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 말레이시아 비관세조치는 대체로 소비재보다는 동물, 채소, 식품, 의약품 등에 시행되는 경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비관세조치(NTM)			주요 적용 품목
코드	유형	HS (2단위)	품 명
		제07류	식용의 채소 · 뿌리 · 괴경(塊莖)
		제0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 멜론의 껍질
А	동식물위생검역조치 (SPS)	제15류	동물성 ·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 · 식물성 납(蠟)
	(3. 3)	제20류	채소 · 과실 · 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 · 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무역기술장벽	제29류	유기화학품
		제20류	채소 · 과실 · 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В		제03류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TBT)	제02류	육과 식용 설육(屑肉)
		제90류	광학기기 · 사진용 기기 · 영화용 기기 · 측정기기 · 검사기기 · 정밀기기 · 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제01류	살아 있는 동물
Е	수량제한조치	제30류	의료용품
		제29류	유기화학품
		제01류	살아 있는 동물
Р	수 <del>출</del> 관련조치	제03류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제29류	유기화학품

주: UNCTAD TRAINS 자료를 HS 2단위로 분류  $\cdot$  집계한 후 상위 3위 $\sim$ 5위까지 나타냄 자료: UNCTAD TRAINS(검색일자: 2020, 02, 20)

# 비관세장벽 중 SPS와 TBT란<sup>7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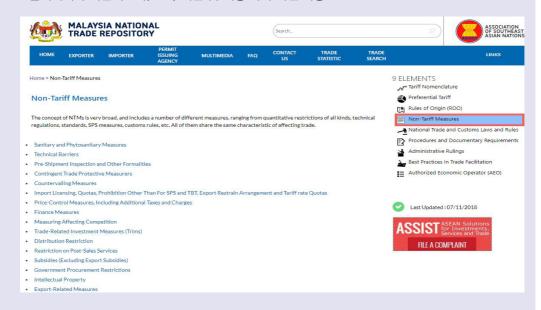
- 위생 및 식물위생에 관한 협정(SPS) : 사람과 동 ·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 및 검역 조치를 말하나 본래 목적과 달리 무역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보통 WTO SPS 협정을 따르며 동 협정에서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식품안전) 식품(ex. 첨가제·오염물질·독성물질·식품이나 사료 등에 함유된 질병 유발 유기물 등)으로 인해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에 가해지는 위험
  - -(질병) 질병을 매개하는 동물, 식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제품으로 인해 인간 건강에 가해지는 위험
  - (해충) 해충의 침입 · 정착 · 확산 또는 질병(유발) 및 질병 매개 유기물로 인해 동식물에게 가해지는 위험
- 무역기술장벽(TBT) :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 표준 ·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의미함. WTO TBT 협정 또는 FTA 협정문내 TBT 규정을 존중하며, 주요 TBT 유형은 다음과 같음
  - (라벨링) 특정 라벨 부착의 의무화로 주로 특정 생산요소에 대한 차별화 또는 기술력이 부족한 국 가에 대한 기술장벽
  - (강제검사 및 인증제도) 중복적인 검사요구, 검사절차상 과도한 시간 소요, 특정 인증마크의 획득 의무화 등으로 인한 기술장벽
  - -(기술규정) 본래 자국민의 보건·안전 및 환경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규정이나,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 통관시 정부의 강제검사제도에 활용될 경우 외국기업에게 불리한 점이 발생하면서 작용하는 기술장벽
  - -(표준) 일반적으로 강제성은 없으나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실질적인 강제성을 가질 수 있으며, 정부 강제검사제도 운영시 이를 인용할 경우에는 더욱 강력하게 작용 가능한 기술장벽

SPS와 TBT는 'SPS와 TBT 조치의 중복 입력 불가 원칙'으로 협정 간 처리 범위에서는 중복이 발생하지 않지만, 동일한 규정이 SPS와 TBT를 모두 포함할 수는 있음

# 말레이시아 비관세조치(NTM) 정보 확인 사이트

# (1) 말레이시아 무역 관련 정보 단일플랫폼(MNTR)

- http://mytraderepository.customs.gov.my/
- 말레이시아 비관세조치(NTM) 개관 및 시행 목록 확인 가능



#### (2) WTO 비관세장벽 포털(I-ITP)

- https://i-tip.wto.org/
- WTO 협정 및 통보문 기반 비관세조치(NTM) 종합 데이터베이스로 연도별 추이 및 관련 세부정보 (제소 및 조치 상태, 양자간 비관세자료, 제소건 정보 등) 파악 가능



# 말레이시아 비관세조치(NTM) 정보 확인 사이트

#### (3) UNCTAD 비관세장벽 포털(TRAINS)

- https://trains.unctad.org
- 자체 국내 법령 및 규제 조사 기반 비관세장벽(NTM) 종합 데이터베이스로 국가별/산업별 비교 및 세부 조치별 파악 가능



# (4) WTO 해외기술규제 통보문 정보 시스템(Technical Barriers to Trad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https://www.knowtbt.kr/
- -WTO 회원국 TBT 통보문 및 TBT 관련 현황 확인 가능

#### (5) 우리나라(한국) SPS 정보관리시스템

- www.koreasps.kr/
- 서비스 제공 대상 국가별 SPS 및 TBT 통보문을 제목·국가·관련품목·HS코드 등 사용자가 원하는 키워드를 지정하여 국문 및 영문으로 확인 가능(단, SPS 통보문 한글 번역본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며, 법적효력 및 관련 내용 최종 확인 시에는 반드시 SPS 통보문 영어(원문) 확인 필요), SPS 통보문 관련 통계데이터 확인 가능

#### (6) 우리나라(한국) 국가기술표준원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KNOWTB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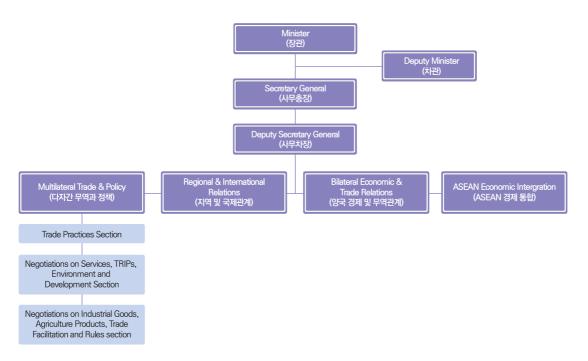
- # https://www.knowtbt.kr/
- -WTO 회원국 TBT 통보문 검색 및 관련 내용(원문/한글) 확인 가능

자료: 각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 말레이시아의 무역구제74)

## ■ 말레이시아의 무역구제 개요

- 국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 산하의 무역관행 담당 부서(Trade Practices Section)에서 무역구제조치 관련 모든 업무를 담당함
  - 무역관행 담당부서는 조사 실무와 그에 따른 판정을 담당하며, 최종 조치의 부과는 국제통 상산업부 장관이 결정함
- 말레이시아는 WTO 회원국으로 WTO상의 무역구제를 적용하고 있음
- 무역구제조치 관련 담당부서가 포함된 국제통상산업부의 조직도는 아래와 같음



자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 말레이시아의 무역구제 현황

# ■ 반덤핑 현황(세계)

- WTO자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반덤핑 조사 누적건수(1995년~2018년까지) 총 83건임
- •특히 2015년 반덤핑 조사건수는 역대 최다로 14건을 기록함

# 세계 반덤핑 조사건수(1995~2018)75)

[ 단위 : 건 ]

국가	1995~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합계 	3,619	236	230	300	250	195	4,830
인도	611	38	30	69	49	32	829
미국	408	19	42	37	55	34	595
EU	346	14	12	14	10	8	404
브라질	294	35	23	11	7	7	377
아르헨티나	222	6	6	25	8	16	283
중국	207	7	11	5	24	16	270
호주	168	22	10	17	16	12	245
터키	164	12	16	17	8	6	223
캐나다	159	13	3	14	14	14	217
한국	84	6	4	4	7	5	110
말레이시아	55	8	14	0	4	2	83

## ■ 말레이시아 반덤핑 현황

• (국가별) 말레이시아가 1995년부터 2018년까지 반덤핑조사를 가장 많이 실시한 국가는 한국 (15건, 18%)으로 중국, 인도네시아(각 13건, 16%),대만, 태국(각 8건, 10%) 순으로 나타남

#### 말레이시아의 국가별 반덤핑 조사 건수

[ 단위 : 건 ]

연번	상대국	1995~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비율
	합계	55	8	14	0	4	2	83	100%
1	한국	9	3	2	0	1	0	15	18%
2	중국	5	3	3	0	1	1	13	16%
3	인도네시아	10	2	1	0	0	0	13	16%
4	대만	6	0	1	0	1	0	8	10%
5	태국	7	0	0	0	1	0	8	10%
6	기타	18	0	7	0	0	1	26	30%



자료: WTO, World Trade Organization(http://www.wto.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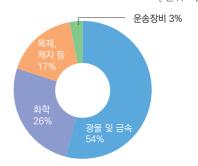
• (품목별) 품목군별로 말레이시아가 반덤핑조사를 시행한 주요품목은, 광물 및 금속 분야(37건), 화학(18건), 목제·제지(12건), 운송장비(2건) 등임

#### 말레이시아의 품목군별 반덤핑 조사 건

[ 단위 : 건 ]

연번	품목군	조사건수 (1995~2018)	비율
1	광물및금속	37	54%
2	화학	18	26%
3	목재, 제지등	12	17%
4	운송장비	2	3%

자료: WTO, World Trade Organization(http://www.wto.org)



# 긴급수입제한조치 현황<sup>76)</sup>

- 1995년부터 2018년까지 말레이시아는 상계관세에 대한 조사는 개시한 사례가 없는 반면, 긴급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조사는 다섯 차례 개시함
-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광물 및 금속 품목군에 대하여 주로 적용되고 있음

# 전세계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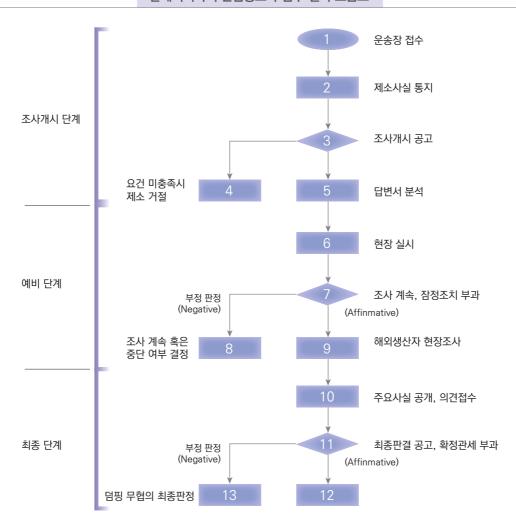
[ 단위 : 건 ]

국가	1995~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합계	272	23	17	20	10	22	364
인도	32	7	2	1	1	0	43
인도네시아	23	3	1	0	0	2	29
터키	17	3	1	0	2	3	26
칠레	15	0	4	0	0	1	20
요르단	16	1	0	1	0	0	18
말레이시아	1	1	1	2	0	0	5
기타	168	8	8	16	7	16	223

자료: WTO, World Trade Organization(http://www.wto.org)

# 말레이시아 반덤핑조사 업무 절차77)

#### 말레이시아의 반덤핑조사 업무 절차 흐름도



자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http://antidumping.kita.net/import/countryProcedure.screen?menuid=ntb040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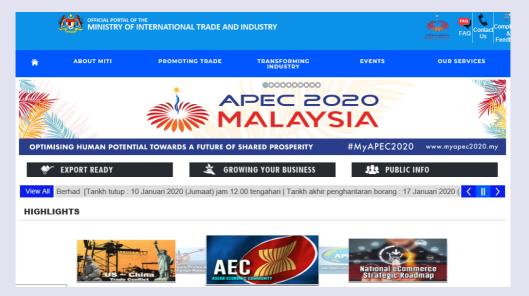
# 말레이시아 반덤핑 조사 업무 절차 상세

절 차	상세
① 제소장 접수	<ul> <li>제소장은 조사대상 물품과 동종 제품을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가 덤핑 혹은 보조금 지급 사실과 그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문서로써 제출할 수 있음</li> <li>제소장에는 국내산업 생산량의 50%를 초과하는 물량을 생산하는 자들의 찬-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찬성하는 자들의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25%는 되어야 함</li> <li>이러한 생산량 기준의 제소 요건은 말레이시아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제통상산업부홈 페이지에 제소요건을 설명하는 자료에만 기재되어 있음<sup>78)</sup></li> </ul>
② 조사 개시	<ul><li>조사당국은 30일 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li><li>조사개시를 결정하면 제소자에게 동 사실을 통지하고 조사개시 사실을 공고함</li></ul>
③ 예비 판정	<ul> <li>조사개시일로부터 120일 내에 이루어지며, 30일을 한도로 연장이 가능</li> <li>조사개시로부터 예비판정 전까지 질문서와 답변서과 반복되는 것은 타국가와 동일</li> <li>수출자에 대한 현장 실사는 예비판정 이후 최종판정 전에 이루어지나, 국내산업과 수입업자에 대한 실사는 예비판정 전에 이루어짐</li> <li>덤핑 혹은 보조금 지급사실이 발견되고 이로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여 긍정의 예비판정 이 내려지면, 조사당국은 이를 국제통상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잠정조치 부과 여부를 결정함</li> <li>잠정조치는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0일 간 연장이 가능하나 반대로 부정(negative) 판정이 내려지면 조사당국은 동 판정 이유를 공지함</li> </ul>
④ 공청회	<ul> <li>예비판정문이 공고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이해당사자들은 공청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음</li> <li>조사당국이 공청회 개최를 결정하면, 개최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공청회 개최 시간과 장소를 통지함</li> <li>공청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문서로써 참석을 신청해야하며, 이해당사자 자격을 설명해야함</li> </ul>
⑤ 최종 판정	<ul> <li>최종판정은 예비판정이 공고된 날로부터 120일 내에 내려지며, 현장실사가 이 기간 중 이루어짐</li> <li>현장 실사 이후 최종판정에 사용될 주요 사실을 공개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접수음</li> <li>최종적으로 긍정 판정이 내려지면 확정 관세가 5년 간 부과되며, 부정 판정이 내려지면 조사는 종결</li> </ul>
⑥ 이행 약속	<ul><li>덤핑 조사 및 보조금 조사 모두 이행약속(undertakings)을 허용함</li><li>이행약속은 예비판정에서 긍정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루어질 수 없음</li></ul>
⑦ 재심	<ul> <li>재심은 확정 관세의 부과가 공고된 날로부터 최소한 1년이 경과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음</li> <li>환급을 위한 재심 신청도 가능하나 아직 신청한 사례는 찾을 수 없음 (물품 통관 후 30일 이내에 세관에 충분한 증거와 함께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됨)</li> <li>환급 신청을 하는 대상 기간은 직전 12개월이며, 재심은 180일 이내에 종결됨</li> <li>동 재심을 통해 덤핑마진을 재산정하고, 과거 12개월간 납부한 관세가 동 덤핑마진을 초과하게 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li> <li>새로이 결정된 덤핑마진은 이후에 통관되는 물품에 그대로 적용됨</li> </ul>

자료: http://antidumping.kita.net/import/countryProcedure.screen?menuid=ntb040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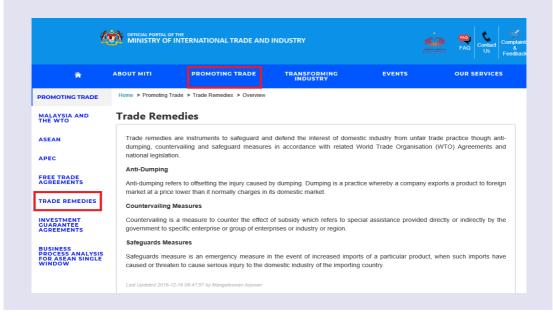
#### 말레이시아 무역구제 및 현황 조회방법

1.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홈페이지 접속(https://www.miti.gov.my/)



# 2. 확인하고자 하는 무역구제(TRADE REMEDIES)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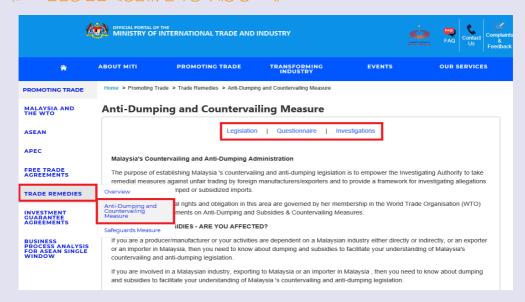
• 말레이시아의 반덤핑(Anti-Dumping), 상계관세 조치(Countervailing Measures), 세이프가드 조치 (Safeguards Measures)에 대한 정보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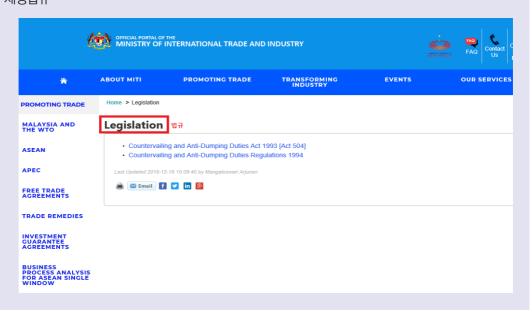
#### 3. 말레이시아 무역구제 항목 최종 조회 · 확인

- ① Legislation(제정법규)
- ② Questionnaire(질의)
- ③ Investigation(확정적 최종 행정 검토 결과 통지 내용 열람 가능)

(ex - 반덤핑 관련 제정법규, 질의 통지내용 등 조회)



• 제정법규



자료: https://www.miti.gov.my 및 연구자 작성

# 수입허가 및 할랄인증

- 1. 말레이시아 수입허가제도(Approved Permit, AP)<sup>79)</sup>
- 말레이시아의 수입금지 관련법\*에 따라 수입제한품목을 수입하기 위해 수입허가면허 (Import Permit License)를 허가취득 대행인\*(PIAs)을 통하여 취득해야함

#### \* 말레이시아 수입금지 관련법:

• Customs Act 1967, Customs(Prohibition of Imports) Order 2008 등에 따름

#### \* 수입허가면허 취득 대행인(PIAs):

- 수입 품목별로 관할 기관이 다르며, 각 관할기관을 대행하는 대행인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http://www.mytradelink.gov.my/permit—issuing—agency
- 말레이시아로 차량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수입업체에만 배정이 되는 수입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수입허가 면허는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기업,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에 등록된 기업만 취득가능하고, 면허 취득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품목별로 다름
- 수입제한 품목의 수입허가 처리기간은 최대 7일이며, 6개월간 유효함

#### 말레이시아 수입허가 대상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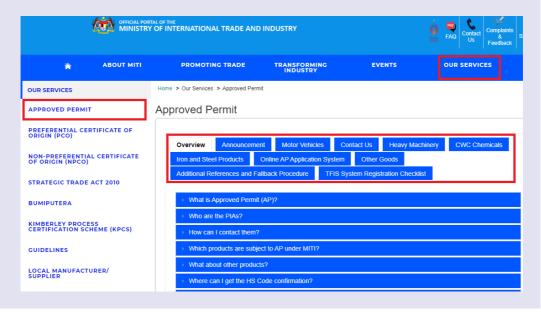
구분	상세
차량	CBU (완전 조립) 및 CKD (완전 분해)로 수입 된 모든 자동차 및 오토바이 (상업용 차량 포함)
철강	HS 코드 7208, 7209, 7210, 7211, 7212, 7225, 7227, 7303, 7304, 7305, 7306 및 7614에 해당하는 철강 제품
중장비	HS 코드 8426, 8701, 8704 and 8705에 해당하는 중장비
CWC 화학물질	화학 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및 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1993 (CWC)에 포함되는 독성 화학 물질 및 그 전구체
기타품목	바틱, 중고 브레이크 및 서보 브레이크), 재사용 가능한 자동차 및 오토바이 배터리

#### 수입허가제도 관련 정보 확인방법

1.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홈페이지 접속(https://www.miti.gov.my/)



- 2. 확인하고자 하는 승인허가(APPROVED PERMIT) 선택
- 말레이시아의 승인허가 대상 목록, FAQ 등 확인 가능



자료: https://www.miti.gov.my 및 연구자 작성

#### 2. 수입면허 취득 조건부 수입허가

### ■ 말레이시아는 일부 품목의 경우 주관부서에서 수입면허를 발급 받으면 이에 근거하여 수입을 할 수 있는 물품이 있음

• 규제의 목적은 국제협약의 준수, 자국산업 보호, 소비자 안전 보장 등임

#### 말레이시아 조건부 수입허가 대상 및 상세내역

규제목적	상세	관할기관
국제협약 준수	<ul> <li>몬트리올 의정서*해당 품목</li> <li>*지구오존층의 보호를 위해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국제환경협약</li> <li>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관련 품목</li> <li>화학무기금지협약 해당 품목</li> </ul>	관련 정 <del>부부</del> 처로부터 수입허가 획득 필요
	<ul><li>- 공공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에 부착되거나 연결된 기구 및 장비</li><li>- 3,000GHZ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모든 무선통신 장비</li></ul>	SIRIM(표준산업연구원)Berhad으로부터 수입허가 획득 필요
	- 철강제품, 말레이시아 전통의상	국제통상산업부(MITI: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alaysia)로부터 수입허가 획득 필요
자국 산업 보호	- 양배추	연방농업마케팅청(FAMA: The Federal Agriculture Marketing Authority)에서 수입허가 획득 필요
	- 비건 <del>축용</del> 철강제품	SIRIM(표준산업연구원) Berhad으로부터 인증 획득 필요
	<ul><li>전자제품(스위치, 다리미, 주전자, 토스터, 워터히터, 면도기, 헤어드라이어기 등)</li></ul>	전기가스공급청(JBEG: Jabatan Bekalan Elektrik & Gas Malaysia, Department of Electricity & Gas Supply)
지비소	– 안전벨트	SIRIM(표준산업연구원) Berhad으로부터 수입허가 획득 필요
안전	<ul><li>시멘트, 세라믹 제품, 건축물에 사용되는 철 및 철강제품</li></ul>	건설산업개발위원회(CIBD: Construction Industry Development Board) 의 승인 획득 필요
	– 살충제, 방사능 물질	농무청(DOA: Department of Agriculture)로부터 수입 면허 획득 필요
	- 독극물	환경청(DOE)으로부터 수입면허 획득 필요
소비자 안전	- 특정 동식물	축산청 (DVS: Department Of Veterinary Services), 농무부(MOA: Ministry of Agriculture and Agro- Based Industry)

자료: KOTRA

- MITI(국제통상산업부)가 무역 기술장벽과 관련, WTO관련 이행의무를 총괄하는 관할기 관임
  - MITI의 위임을 받은 말레이시아 표준국(DSM: 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이 무역 기술장벽 관련 업무의 중점이며, WTO에 대한 조회와 통지 창구로서의 역할은 말레이시아 SIRIM이 담당

#### 3. 자동차 수입허가제

■ 기업이 말레이시아에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아래의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말레이시아 자동차 수입 요건

구분	내용
1	완성차 수입을 위한 AP할당량*을 보유
2	완성차 업체의 프렌차이즈
3	반제품 자동차 현지 조립업체
4	클래식 자동차 및 고전 자동차 수입
(5)	연구개발, 전시회, 자동차 경주대회의 출전 예정

#### 〈참고사항〉

- \* AP(Approved permit) **할당량**: 말레이시아 AP 할당량은 연간 신규 등록차량 대수의 약 10% 선으로 제한되어, 1년에 약 5~6만대 정도만 허용됨
- 자동차 수입허가제는 제1차 국가자동차정책(National AutomotivePolicy, NAP)에서 철 폐하기로 시한을 발표했으나, 제2차 NAP에서 철폐기간을 연기
  - 말레이시아는 교통제한 및 소음 표준뿐 아니라 자동차 분야에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오토 바이의 사용에 영향력을 행사함<sup>80)</sup>
  - 2018 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2 년까지 새로운 국산 자동차 생산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동 정책 추진에 따라 수입 자동차의 시장 접근이 더욱 제한 될 수 있음

- 4. 폐가전 및 폐건전지 수입불허<sup>81)</sup>
- 말레이시아는 바젤협약\* 체약국으로 원칙적으로 폐가전\*과 폐건전지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수출은 수출면허를 갖춘 기업에 한해 허용함

#### 바젤협약이라?<sup>82)</sup>

\* 바젤협약의 공식명칭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처리의 규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으로, 유해 폐기물의 교역 극소화. 불법교역 규제 등에 관한 국가간의 공동지침을 확립한 것을 말함

#### 폐가전의 분류

- \* 전자제품이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고 외관상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생산한지 3년이 지나면 폐가전으로 분류됨
  - 폐가전으로 분류되면 말레이시아로 수입을 할 수 없고, 수출을 하더라도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 우에만 가능함

#### 말레이시아로부터의 폐가전 수입 요건

구분	내용
1	해외소재 폐가전 처리 시설에서 동의하고 , 그 처리 시설의 기술이 말레이시아의 처리기술 보다 나을 경우
2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출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경우
3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수출이 수입국에서 허용이 되고, 수입국의 환경 관련 법규에 부합될 경우
4	수출이 바젤협약에 부합될 경우

- 말레이시아에서 폐건전지 또한 수입이 불가하며, 수출하는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DOE(환경청) 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기업만 가능함
  - 수출허가는 말레이시아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기업은 불가하며,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 (SSM: Suruhanjaya Syarikat Malaysia, 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에 등록된 기업만이 받을 수 있음<sup>83)</sup>
- 따라서 말레이시아 기업이 폐건전지를 우리나라로 수출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여 우리기업에 접근할 경우, 해당 기업이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에 등록된 기업인지, 수출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sup>84)</sup>

- 5. 증류주에 대한 기술장벽<sup>85)</sup>
- 말레이시아 정부는 알코올음료(주류)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료품에 관한 법규를 개정 하고자 함
  - 이 개정안은 표준화된 제품범주에 속하지 않은 주류를 판매금지하고, 혼합독주(compounded hard liquor)라는 새로운 제품범주를 만드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혼합독주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해를 생성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주류의 분류가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2018년 말 기준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상기 개정안을 시행하지는 않은 상태
- 6. 위생 및 식물위생 (농업생명공학) 86)
- 말레이시아는 식품과 식품원료에 유전자 변형 (genetically engineered, GE) 물질의 함량이 3% 이상인 경우 이에 대한 필수 표시를 요구하는 규정을 시행할 예정에 있음
  - 2018년 11월 현재, 말레이시아는 시장 출시를 위해 식품, 사료 및 가공에 사용되는 36개의 농업 생명 공학 제품 (면화, 유채, 옥수수, 콩 등)에 대하여 승인한 바 있으며, 이는 2017년 말 승인된 농업 생명 공학 제품 29개에서 24% 증가한 수치임

#### 7. 정부조달<sup>87)</sup>

- 말레이시아는 전통적으로 공공정책(말레이계 민족의 경제참여 독려, 기술의 현지이전, 외환유출 방지, 현지기업 사업기회 확장, 수출능력 향상 등)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조 달 계약 정책을 사용해 옴
  - 말레이시아정부는 국산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국제입찰에 부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은 투찰에 앞서 Bumiputera인종으로 인증받은 토착민 파트너를 고용해야 하는 경우가 보통임
  - 말레이시아는 정부조달에 관한 WO협정(GPA)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2012년 정부조달에 관한 WTO 위원회의 참관국이 되었음

- 8. 말레이시아의 할랄인증 제도 (식품, 의약품, 화장품) 88
- 연방 차원에서는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이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지방 차원에서는 JAIN/MAIN이 담당함

#### (1) 표준참조문서

- 할랄식품표준은 식품의 생산, 준비, 취급 및 저장에 관한 일반지침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 부의 표준부가 JAKIM과 협조하여 제작하며 품질, 위생, 안전에 기초하여 할랄식품의 준비와 취급에 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 할랄 의약품표준 또한 과학기술혁신부의 표준부가 JAKIM과 협조하여 제작한 것으로 의약품의 범주, 참고자료, 인증요구사항 등의 일반적을 요구사항을 담고 있음
- 할랄 의약품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의약품 제조관리기준) 적용을 위한 상세요건, 품질관리, 제조에 관한 지침 등은 PIC/S GMP 지침과 PIC/S 부속서에 기재되어 있음

#### 말레이시아 할랄인증 표준참조문서

	I	
식품	의약품	화장품
할랄 식품표준 (MS1500:2009)	할랄 의약품표준 (MS2424:2012)	할랄 화장품표준 (MS2200-1:2008)
인증 절차 매뉴얼 Manual Procedure for Halal Certification Malaysia,	PIC/S GMP 지침 PIC/S 부속서	화장품 관리지침 (GUIDELINES FOR CONTROL OF COSMETIC PRODUCTS IN MALAYSIA 2009
시스템구축지침서 Guidelines for Halal Assurance Management System of Malaysia Halal Certification		말레이시아 화장품 우수품질관리지침

- 할랄 화장품표준은 할랄 화장품의 범주, 참고자료, 할랄인증 요구사항 등의 일반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표준 내에는 화장품의 안전성, 품질 및 효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장품의 성분, 효능, 부작용, 신고 및 허가 등에 관한 지침이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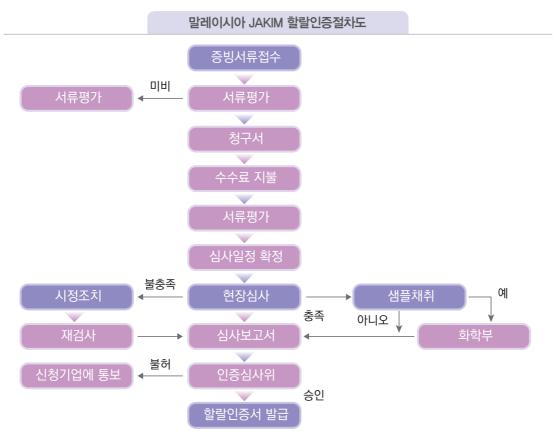
#### (2) 인증신청 절차

#### ① 국제신청 요건

- 말레이시아 할랄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은 말레이시아에 에이전트가 있어야 함
- 신청과 관련된 연락활동은 말레이시아의 에이전트를 통해 이루어짐
- 에이전트가 JAKIM 심사원의 출장과 현장심사에 동행함
- 에이전트의 언어가 유창하지 않은 경우 통역을 제공함

#### ② JAKIM 할랄 인증 신청

- 말레이시아 할랄인증 홈페이지(http://apps.halal.gov.my)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 → 감사 · 보고 → 승인 · 인증의 3단계로 진행, 인증 조건 및 절차 준수 시 약 6~9개월 소요
- 유효기간(2년) 만료 이전에 재승인 신청 후 동일한 절차 및 비용 부담을 거쳐 인증 기간 연장
- 할랄 인증서를 발급받을 당시와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JAKIM에 서면 보고 실시



자료: 주요국할랄인증안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 (3) 할랄인증신청 필요서류

구분	필요 서류
1	회사소개
2	법인 등록 사본
3	인증제품 소개
4	사용된 원료목록
5	재료공급업체 및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
6	제품에 투입되는 각각의 생산 원료에 대한 할랄인증 사본
7	포장 재질의 종류
8	제품 제조 공정 및 절차
9	타 인증서의 예) HACCP, ISO, GHP, GMP
10	현장 또는 공장의 위치지도

- (4) 인정된 해외 인증기관(RECOGNITION OF FOREIGN HALAL CERTIFICATION BODIES, FHCB) 승인<sup>®)</sup>
  - ① 말레이시아 해외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JAKIM은 79개 해외 인증기관과 45개 정부당국을 승인(2019, 8, 1, 기준)
  - ② JAKIM이 승인한 한국 인증기관은 이슬람교중앙회(이하 KMF)로, 2013년 7월 1일 JAKIM 공 식 할랄 인증기관으로 인정
  - ③ 승인된 해외 할랄인증기관의 권한은 2년간 유효하며, 만료시점에 재승인 심사 실시
  - ④ 할랄인증 신청대상 제품의 재료 중 증빙서류로서 할랄인증서가 있는 경우, JAKIM이승인한 할랄인증기관이 발급한 것인지를 검증, 승인된 인증기관의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적합한 할랄인증서로 불인정

#### 한국소재 FHCB 요약

Organization & Address	Contact	Halal Logo	
Korean Muslim Federation (KMF) 39 Usadan-ro 10gil Yongsan-gu Seoul 04405 Korea	Dr. Hussein Kim Dong Eok ( President ) Mr. Ahmad Cho Min Haeng ( Chairman ) Tel : +82-2 793 6908 / +82-2 794 7307 Fax : +82-2 798 9782	HALAL HALAL	
	Email: kmfhalal@naver.com		

자료: HE RECOGNISED FOREIGN HALAL CERTIFICATION BODIES & AUTHORITIES As at October 1st, 2019

#### 9. 수입인증 제도

#### ■ 의무인증(SIRIM)

- 말레이시아에서는 재무부 산하의 SIRIM(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 이라는 정부 산하 기관이 있어 산업연구 및 개발, 제품표준 및 품질관리 역할을 수 행함
  - SIRIM CERTIFICATION은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에서 발행 받을 수 있으며.
  -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될 일부 품목은 의무적으로 SIRIM 마크를 획득해야 함



• 의무인증 제품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인증 미취득시 수입 및 유통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함

#### 의무 인증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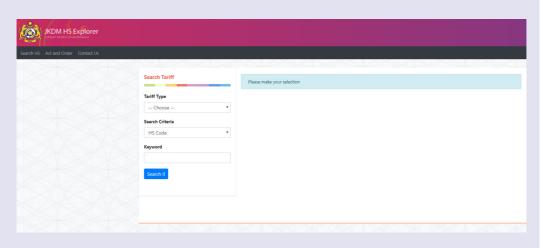
구분	상세	
오토바이용 안전 헬멧	Road Transport Dept.(도로교통청)	
운전자 안전 벨트	Road Transport Dept.(도로교통청)	
- 가전제품	Energy Commission, EC(에너지 위원회)	
화재 안전제품	Fire & Rescue Services Dept.(화재 및 구조청)	
Communication equipment	Malaysia Communication and Multimedia Commission, MCMC (통신 및 멀티미디어 위원회)	

#### ■ 임의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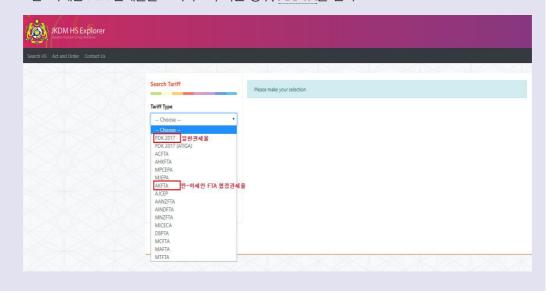
- 의무인증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임의 인증이 원칙임
- 임의인증 제품의 경우 국가에서 정하는 인증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인증표 준규정을 제시하여야 함
- 임의 인증절차는 의무 인증 발급절차와 동일함

#### 수입물품 요건대상 확인방법

1. 말레이시아 관세청 HS 조회 사이트(http://mysstext.customs.gov.my/tariff)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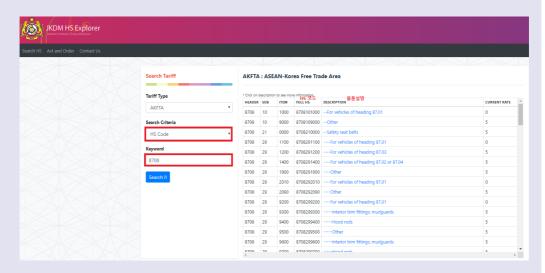


- 2. 검색하고자 하는 관세율 종류(Tariff Type)\* 선택
  - 일반관세율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PDK 2017을
  - 한-아세안 FTA 관세율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AKFTA를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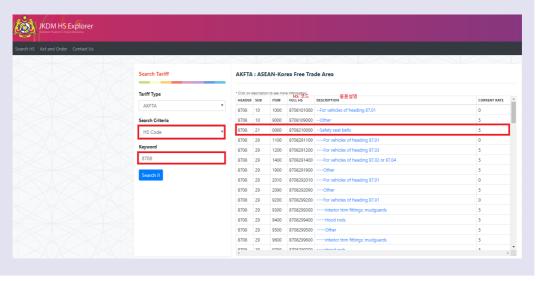
- 3. <u>검색기준(Search Criteria)</u>에 따라 해당 물품관련 정보를 입력한 후 말레이시아 HS코드 및 관세율 최종 조회 · 확인
  - 해당 물품의 HS코드(최소 4단위)를 알고 있는 경우, 검색기준을 HS Code로 선택하고 조회하고자 하는 HS코드를 입력

(ex - 제8708호의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AKFTA) 및 말레이시아 HS코드 검색시)



• 해당 물품의 HS코드(최소 4단위)를 모를 경우, 검색기준을 <u>Item Description으로</u> 선택하고 조회하고자 하는 **물품명(전체 또는 일부)**을 입력

(ex - 'Safety seat belts'의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AKFTA) 및 HS코드 검색시)



자료: http://mysstext.customs.gov.my/tariff/ 및 연구자 작성

## 인증 발급절차

	인능 필급열사
단계	세부내역
질의	① 신청자가 SIRIM QAS International Bhd에 질의서(Questionnaire)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② SIRIM QAS International Bhd 실제로 인증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 타당성을 테스트하고 인증 업무가 진행된다고 판단되면 견적서를 신청자에 송부 ※ 질의서는 PCS/FOR/01-1 양식을 사용해야 함. 또한 SIRIM 인증은 말레이시아 정부에 서 의무적으로 하는 인증이 아닌 이상 신청자가 표준(Standard)을 특정(Identify)해야 함
신청	① 신청자는 견적서를 수취한 후 신청서 (Application Form)을 작성하여 제출 ② 신청자는 인증 관련 비용을 납부 ※ 신청서는 양식 PCS/FOR/01-2를 사용해야 함. 필요 시 SIRIM QAS International Bhd 에서 요청하는 부대서류를 같이 제출
서류 평가	인증 표준에 맞추어 제출 서류를 평가
<del>공</del> 장 실사	• 품질관리 계획(Quality Control Plan)의 적정성, 시험 장비(Test Equipment)의 적정성, 측정 • 표준(Calibration) 및 기록시스템(Record-keeping System)의 적정성을 점검
샘플 테스트	• 공장 실사 중 시험관이 샘플을 선정하여 테스트를 실시 ※ 테스트는 SIRIM QAS International Bhd나 SIRIM QAS International Bhd가 인증하는 시 험기관에서 실시
인증서 발급	① 공장실사와 샘플 테스트에 문제가 없으면 인증 보고서 (Certification Report)를 작성하고 인증 발급을 결정 ② 미납 비용을 모두 납부하면 인증서를 발급
감시	① 인증 품목이 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계획에 의한 점검이나 불시 재검사를 실시 할 수도 있음 ※ 보통은 제품에 대한 고발이 있을 시 시장에서 샘플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
갱신	인증 유효기간이 1년인 바 매년 인증 갱신이 필요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2019, 08, 20)

# 3. 말레이시아의 수출규제



#### 수출규제

#### ■ 수출세(팜유, 고무, 목재 및 금속제품)<sup>90)</sup>

- 말레이시아는 내수공급을 보장하고,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라 팜원유에 수출세금을 부과함(정제된 팜유에 대해서는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음)
- 수출가격이 톤당 링깃2,250을 초과하는 경우, 4.5%에서 8.5% 내의 세율에서 수출세를 부과 하며, 2019년 초 기준, 수출세율은 FOB가격의 6%에 근접함
- 말레이시아는 국내 가공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무, 목재, 금속제품에 수출세를 부과함

#### ■ 수출허가<sup>91)</sup>

• 말레이시아는 광물 및 광석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에 대해 자동이 아닌 수출 허가 요건을 부 과함

#### ■ 전략물자 수출규제<sup>9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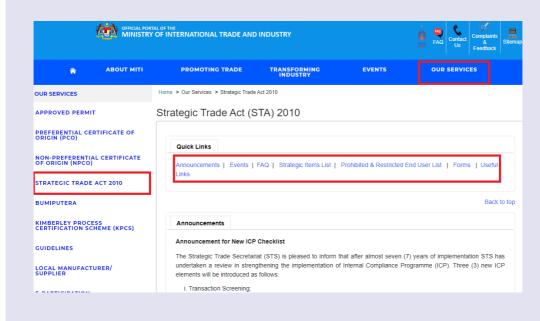
- 말레이시아는 반테러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전략물자 관리부문에서 동남아에서 최초로 2012년 부터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
- 전략물자의 수출, 환적, 환적 중 반입, 중개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고 수출 등을 할 수 있음
- 담당부서는 국제무역산업부(MITI) 내의의 전략물자사무국(STS) 임
- 전략물자는 STA2010하에서 통제되는 상품 및 기술을 말하며 목록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전략물자 STA 2010 확인방법

1.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홈페이지 접속(https://www.miti.gov.my/)



- 2. OUR SERVICES → 전략물자(STRATEGIC TRADE ACT 2010) 선택
  - 말레이시아의 승인허가 대상 목록, FAQ 등 확인 가능



자료: https://www.miti.gov.my 및 연구자 작성

http://www.federalgazette.agc.gov.my/outputp/pua\_20181015\_PUA263.p

# 4. 말레이시아의 전자상거래<sup>9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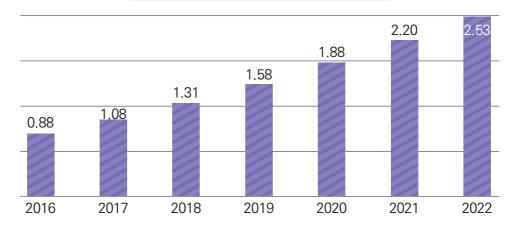
■ 말레이시아의 B2C 전자상거래 시장은 많은 인구와 국민수준의 향상, 높은 인터넷 보급률 및 발달된 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 인구**: 1억 5,300만 명 (2018년 기준)

• 말레이시아 온라인 쇼핑객 : 인구의 50% 정도
 • 말레이시아 1인당 GDP : 27,736불 (2018년 기준)
 • 말레이시아 인터넷 보급률 : 전체 가구의 약79% 정도

☞ 'World Bank 2018 Report'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전자상거래가 가장 발달한 국가임

#### 말레이시아 온라인 쇼핑객 증가 추이



• 이러한 전자상거래 시장 발달에 유리한 환경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6년 10월, 전자상거래 전략 로드맵을 발표함

### 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 전략 로드맵(National eCommerce Strategy Roadmap)

- 2016년 10월, 없는 상품 및 서비스 거래시대에서 국가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책 전략
- 이는 2020년까지 전자상거래 부문의 GDP 기여도를 20% 이상 올리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 전자상거래 전략 로드맵의 적극 추진을 위해 국가전자상거래 위원회(National e-Commerce Council, NeC)를 설립하고, 6개의 추진전략과 11개의 프로그램을 수립함

#### • 주요 추진전략

- ① 전자상거래 판매자 확대
- ② 거래에 있어 전자조달 시스템 도입 확대
- ③ 비관세 장벽 제거
- ④ 경제적 인센티브 조정
- ⑤ 일부 전자상거래 기관에 대한 전략적 투자
- ⑥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있어 국내 브랜드 프로모션 등
- 말레이시아는 위 6개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알리바바 등 민간기업들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디지털 자유 통상지역(Digital free trade zone)을 구축할 계획이며, 해당 지역에는 e물류 허브와 위성서비스 허브, e서비스 플랫폼 등을 건설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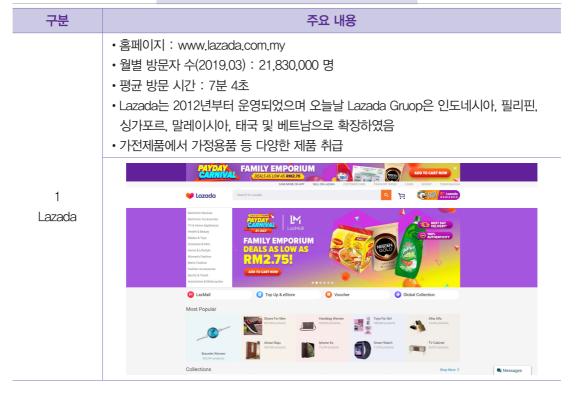
자료: 2018년 글로벌 정보보호 산업시장 동향조사\_한국인터넷진흥원

#### ■ 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 소비자 실태<sup>94)</sup>

- 말레이시아 통상멀티미디어위원회에서 실시한 전자상거래 소비자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말레이시아에서 전자상거래 이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남부 지방에 위치한 푸트라자야(70.5%)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라부안 (60.5%), 프를리스(44.5%) 지역으로 나타남
  - (남녀별) 성별 기준으로는 여성(53.9%)이 남성(48.8%)보다 전자상거래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거래당 금액은 남성(690링깃)이 여성(450링깃)보다 240링깃(약 19만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품목별)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로 주로 거래한 품목은 의류 및 액세서리 (68.7%), 스포츠용품·가전제품(56.1%), 음식 및 식료품(43.7%) 등으로 나타남

- (이용요인) 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 고객들이 오프라인 보다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까닭은 '편리함'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할인혜택' 등의 응답도 높게 나타남
- (결제수단) 온라인 거래시,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결제 방법은 온라인뱅킹(62.1%), 신용 카드(32.7%), 체크카드(28.5%), 현금(17.3%) 순으로 나타남
- (이용방법) 온라인 쇼핑 이용방법은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답했으나, 40대 이상의 경우 스마트폰 보다 컴퓨터나 노트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제품 구매비중) 말레이시아 전자상거래 고객들의 외국제품 구매 비중은 중국제품 (84.8%)이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미국(15.9%), 한국(6.5%), 홍콩(5.4%), 일본 (4.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말레이시아통계부(DoSM)에 따르면 2017년 말레이시아의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858억링 깃(약 24조원)에 이르며,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12,5%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IT시장 조사기관 eMarketer에 의하면 말레이시아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소매 전자상거래 판매액 분야에 있어 동남아에서 5번째를 기록 중임

#### 말레이시아 주요 온라인 쇼핑 업체 현황



 구분
 주요 내용

 • 홈페이지: shopee.com.my

 • 월별 방문자 수(2019.03): 22,960,000 명

 • 평균 방문 시간: 9분 30초

 • Shopee는 2015년부터 운영되었으며, 오늘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및 필리핀으로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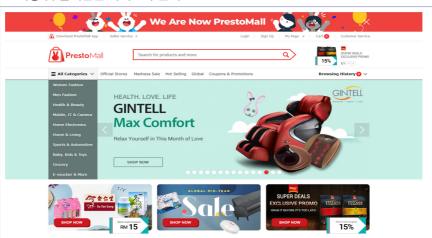
 • 자체 모바일 앱 출시하여 모바일 상거래 활발히 활용 중

2 Shopee



- 홈페이지: www.prestomall.com
- 월별 방문자 수(2019,03): 1,460,000 명
- 평균 방문 시간 : 2분 18초
- PrestoMall(이전 11street)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이며, 현제 PrestoMall은 온라인 시장 뿐 아니라 사용자의 쇼핑, 엔터네인먼트, 지불, 신용, 여행 및 음식관련 카테고리 존재

3 PrestoMall (Formerly known as 11street)



자료: https://www.sitegiant.my/malaysia-marketplace-comparison/





# 우리기업의 對말레이시아 수출애로 및 대응방안

- 1. 세관발행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사례
- 2.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오류로 인한 C/O 불인정 사례
- 3. 품목분류 상이로 인한 애로 사례
- 4. 서명권자 불일치 관련 사례
- 5. 원산지증명서 소급발행문구 미기재에 따른 애로 사례

# 1. 세관발행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사례



#### ■ 애로사항

•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A기업은 흑백 원산지증명서를 출력하여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고자 하였으나, 협정배제<sup>95)</sup>

#### ■ 관련규정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 기관발급
-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제도를 채택함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말레이시아 원산지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MITI: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alaysia)

#### ■ 문제해결

- 흑백으로 출력하여 보냈을 경우 상대국 세관에서는 스캔본으로 오인할 가능성의 여지도 있으므로 컬러로 출력 후 다시 발송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방법 고려할 필요 있음
- 참고로 아세안 국가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인쇄 상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흑백인쇄, 뒷면(Overleaf Note) 미인쇄, 뒷면(Overleaf Note)을 별도의 종이에 인쇄하는 경우 정당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sup>96)</sup>

#### 〈관련 법령 참조〉

1.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 제1조

발급기관이란 이 부록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정부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권한 있는 당국을 말한다.

#### 제5조

- 1. 원산지증명서는 A4 용지의 첨부 1 AK 서식으로 작성된다.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 2. 원산지증명서는 1부의 원본과 2부의 사본으로 구성된다. 원산지증명서의 원본과 사본의 색상은 당사국 상호 합의에 의한다. 다수 품목 신고의 경우, 당사국은 본래의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도록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게 부여된 선택권을 저해함이 없이, 첨부 2 서식을 원산지증명서의 추가된 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
-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3항

####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 ③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브루나이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 2.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
- 3.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
-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상공회의소
- 5.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 6.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
- 7.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
- 8.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
- 9.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
- 1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
- 1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제외한다).

# 2.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오류로 인한 C/O 불인정 사례



#### ■ 애로사항

• 스테인리스 스틸 튜브를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B기업은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국에 송부하였으나, B기업의 스테인리스 스틸 튜브는(제7306호: 기타 봉합한 관) 원산지결정기준 중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을<sup>97)</sup>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선택함

HS 4단위	원산지결정기준
제7306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자료: 한-아세안 협정문 원산지기준

• B사는 원산지증명서 8번란 원산지 결정기준을 "CTH"로 기재하여야 하나, "CC(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잘못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함

#### ■ 관련규정

- 원산지증명서 작성관련 근거규정 :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증 명서 작성방법(서식 뒷면)
- 작성방법: 원산지 기준 충족 상품에 대해서,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는 동서식 제8란에 해당 원산지 기준을 아래 표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함

원산지결정기준 작성 방법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수출당시국의 영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협약」(HS)상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CTH 또는 RVC 40%
(c)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3) 일정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예: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 상인 물품) (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가치포함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예: 재단 및 봉제공정)	CTC WO-AK RVC % (예: RVC 45%) CTH + RVC % Specific Process

자료: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서식 뒷면)

#### ■ 문제해결

•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물품의 HS번호에 해당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협정문의 원산 지증명서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히 기재하여야 FTA 특혜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증명 서 작성 전 해당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해 재확인 필요

		힌	는아세안 FTA 원선	난지증명서 작성방법		
	0 H	네안회원국	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	식	(앞쪽)
Original(Dupli				cate/Triplicate)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KOREA-ASEAN FREE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K  Issued in  (country)  See Notes Overleaf		LTARIFF		
as known)  Preferential Tar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eatment Given Und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5.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package goods(in where a	and type of s, description of neluding quantity ppropriate and HS of the importing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that the declaration b	on the basis of control of the exporter is correct to the exporter is control of the exporter is control of the exporter in the exporter is control of the exporter is correct to the exporte		
			nibition	☐ Back-to-Back CO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국가에 적용됩니다.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2.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야 합니다.
  -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9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다.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3.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 4. 제2란에는 수입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입국을 적습니다.
- 5. 제3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 6. 제4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 7. 제5란에는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8. 제6란에는 물품에 대한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9. 제7란에는 포장개수 · 포장형태 · 품명 · 수량 · 품목번호 등을 적습니다.
  - 가.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고, 상표도 적습니다.
  - 나. 품목번호(HS No.)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에 따른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 10. 제8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협약」(HS)상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CTH 또는 RVC 40%
(c)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체약당시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3) 일정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예: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 이상인 물품) (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가치포함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예: 재단 및 봉제공정)	CTC WO-AK RVC % (예: RVC 45%) CTH + RVC % Specific Process

- 11.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과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하여 본선인도가격(FOB가격)을 적습니다.
- 12. 제10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 13. 제11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 14. 제12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 인합니다.
- 15. 제13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 가.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제7란에는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적습니다.
  - 나.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의 전시를 위해 수출당사국에서 제3국으로 송부된 물품으로서 제3국에서 전시 도중 또는 전시 후에 수입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해 판매된 경우 "전시(Exhibition)"란에 "√" 표시를 합니다.
  - 다. 연결원산지증명서인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란에 "√"표시를 합니다.

자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3. 품목분류 상이로 인한 애로 사례



#### ■ 애로사항

• 말레이시아로 수출하는 M기업은 수출물품에 대해 OO으로 신고하였으나, 말레이시아 세관 측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가 잘못 발급된 것이라며 협정세율 적용을 거부

#### ■ 관련규정

- 수출국과 수입국의 다른 HS 품목번호가 상이할 경우는 품목분류번호 해석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따름
- 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코드가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 협정상대국의 HS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 에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코드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 공식서류는 당해품목에 대한 협정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상대국 HS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

- 가) 수입신고필증
- 나) 품목번호 확인서
- 다)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 리)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 마)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공식서류는 최초 C/O발행시 제출하고. 이후 동일 물품의 C/O신청시 제출 생략 가능함

자료: 품목분류번호 해석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2018,07,09,)

#### ■ 원산지 검증시 대응

- 품목분류 상이에 해당되는 물품은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HS코드 모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되어야 함
- 수입국 HS코드로만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원산지 검증시 불충족 위험이 있음을 유의할 것

#### ■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 ① 공식서류로 HS코드가 다름이 확인되고 ② 우리나라 HS코드로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요 건을 갖춘 경우, 해당품목에 대해 협정상대국의 HS코드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여부를 확인 하고 협정상대국의 HS코드로 추가 인증 처리
- 다시 말해, 상대국과 수입국의 HS가 다른 경우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을 때, 우리나라의 HS코드로 인증을 받은 후 상대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되는 서류를 제출한 후 해당 HS코드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인증을 받을 수 있음

#### ■ 문제해결

• 수출자는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상대국 HS코드를 공식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품목번호 확인서, 협정상대국 관세 · 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협정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를 제 출해야 함

### 4. 서명권자 불일치 관련 사례



#### ■ 애로사항

• 말레이시아 세관은 전자적인 방식으로 우리나라 세관의 인장과 서명이 날인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였고, 기 원산지증명서의 서명권자의 서명과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원산지증명서 발급 담당자 추가건)이 상이함을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거부하였음<sup>98)</sup>

#### ■ 관련규정

•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협정	부속서 3	
한–아세안	제2조	각 당사국은 발급기관의 명칭, 주소, 견본 서명 및 견본 관인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모든 당사국에 제공한다. 동 목록의 변경사항은 즉시 동일한 방법으로 제공한다.
	제4조	3.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매 신청마다, 그 권한과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당 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 한다. 가. 원산지증명서가 서명권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되고 서명될 것
	제6조	원산지증명서상의 삭제 또는 덮어쓰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변경 시 잘못된 부분은 줄을 그어 지우고, 추가사항을 기재한다. 그러한 변경은 발급기관이 지정한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인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여백은 추가기재를 방지할 목적으로 줄을 긋고 지운다. 대신에, 잘못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다. 발급당국은 본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을 신규 원산지증명서에 명시한다.
	제13조	4.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과 관련된 정보는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 지증명서에 서명할 권한이 있고 적절한 정부 당국이 인정한 공무원이 제공한다.

자료: 한-아세안 FTA 협정문

#### ■ 문제해결

- 전자방식 원산지증명서의 인증여부에 대해서는 한-ASEAN FTA 제8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 SOD 발췌문을 제공하였으며, 원산지증명서 서명 상이에 대해서는 한국세관 C/O 진위 확인 사이트를
  - ☞ http://english.customs.go.kr 〉Information Plaza 〉Certificate of Origin 안내함으로써 원산 지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후 협정관세 적용 통관

자료:http://www.customs.go.kr/kcshome/co/CertificateOfOriginViewNew.do?layoutMenuNo=21027&layoutSiteld=null&layoutType=null

# 5. 원산지증명서 소급발행문구 미기재에 따른 애로 사례



#### ■ 애로사항

• 말레이시아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Q사는 말레이시아로 선적후 발행된 C/O에 대해 "ISSUED RETROACTIVELY"라는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 거부하였음

#### ■ 관련규정

•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협정	부속서 3
한–아세안	제7조 4.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원인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선 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 할 수 있다.

자료:협정문

• 한-아세안 FTA의 국가별 협정관세 사후신청 규정은 하단과 같으며, 말레이시아는 수입 후 1년 이내 소급발행이 가능함

국가	신청기간	신청요건
한국	수입신고 수리일 로부터 1년 이내	요구조건 없음
브루나이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사후신청 의사 통지
캄보디아	소급 기간 없음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
인도네시아	소급 기간 없음	수입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
라오스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 시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 의사 통지 수입자는 지급해야 하는 관세와 세금에 대해 보증금 120%를 납부
말레이시아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 통지
미얀마	소급 기간 없음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

국가	신청기간	신청요건
필리핀	수입일 후 6개월 이내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 통지 MFN 세율과 AKFTA 협정세율간의 차이에 상응하는 사후보증서(Post guarantee bond)*제시 *수입 후 6개월 내에 원산지 증명서가 제시되면 이 bond는 취소, 미제 시시보증서 몰수
싱가포르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허가를 신청할 때,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명 특혜관세 사후신청 및 적용 이후에 수입자에게 관세(duties) 환불
태국	수입 후 1년 이내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를 통지
베트남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한-베 FTA의 경우 1년 이내)	수입 시 소급적용신청 의사를 서면으로 관세당국에 제출

#### ■ 문제해결

• 말레이시아는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신청에 대한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아세안 국가는 개별국가마다 사후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도 존재하므로 해당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1)	말레이시아 개황, 외교통상부(2019,02), 2019 국별 진출전략 말레이시아편, KOTRA(2019)
2)	매일경제 시사용어사전
3)	2019 국별 진출전략 말레이시아편, KOTRA(2019), 말레이시아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8)
4)	Trade Focus 아세안 할랄시장 허브로서의 말레이시아의 잠재력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KITA(2018)
5)	KOTRA 해외시장뉴스(2009.05.12.),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말레이시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8)
6)	KOTRA 해외시장뉴스(2019.12.17.),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 Malaysia Shared Prosperity Vision 2030
7)	2019 국별 진출전략 말레이시아편, KOTRA(2019)
8)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259940&memberNo=32752880 (사진자료), 말레이시아 관광(Malaysia. Travel), 위키백과
9)	FTA 강국, KOREA(http://www.fta.go.kr/)
10)~12)	부산세관 분석실(사진자료)
13)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말레이시아편, KIPF(2016)
14)	세계 법제 정보센터
15)	2019 국별 진출전략 말레이시아편, KOTRA(2019), Tradenavi 말레이시아 무역정보
16)	KOTRA 해외시장뉴스(2019.08.20.)
17)	KOTRA 해외시장뉴스(2018,05,18., 2018,09,20.)
18)	KOTRA 해외시장뉴스(2019,08,20.)
19)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말레이시아편, KIPF(2016)
20)	Doign Business 2020 MY
21)	World Bank
22)	위키백과 Klang port, google(사진자료), https://lloyds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one-hundred-container-ports-2019
23), 24)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말레이시아편, KIPF(2016)
25)	말레이시아의 통관절차, 한국식품연구원(2014)
26), 27)	가디언관세사(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okcus29&logNo=221183505837&proxy 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30), 31)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말레이시아편, KIPF(2016)
32)	KOTRA 말레이시아 국가 · 지역정보
33)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말레이시아편, KIPF(2016)
34)~36)	KOTRA 말레이시아 국가 · 지역정보,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말레이시아편, KIPF(2016)
37)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말레이시아편, KIPF(2016)
38)	KOTRA 말레이시아 국가 · 지역정보
39)	KOTRA 말레이시아 국가 · 지역정보,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말레이시아편, KIPF(2016)
40)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말레이시아편, KIPF(2012)

# 참고자료

41)	MALAYSIA: REGULATIONS AND CUSTOMS
42)	KOTRA 해외시장뉴스(2018,03,06.)
43)	관세청
44)	한국AEO진흥협회(http://www.aeo.or.kr/main/aeoMainView.do)
45)	KOTRA 해외시장뉴스(2018,03,06.), 말레이시아 관세청
46)	관세평가분류원
47), 48)	WTO TRADE POLICY REVIEW REPORT BY THE SECRETARIAT MALAYSIA
49)	말레이시아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v.my/)
50)	WTO TRADE POLICY REVIEW REPORT BY THE SECRETARIAT MALAYSIA
51)	말레이시아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v.my/)
52)	KOTRA
53)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 홈페이지(https://www.mida.gov.my/)
54)	Malaysia Customs, Trade Regulations And Procedure Handbook Vol.1 Strategic and Practical information, International Business Publications USA
55)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말레이시아편, KIPF(2016),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말레이시아편, KIPF(2012)
56)	베이커맥킨지((http://www.bakermckenzie.com/)
57)	말레이시아 전자관보
58)	세계 법제 정보센터
59)	2019 국별 진출전략 말레이시아편, KOTRA(2019)
60)	
61)	KOTRA 해외시장뉴스(2019,12.17.)
62)	2019 국별 진출전략 말레이시아편, KOTRA(2019), 말레이시아 개황, 외교부(2019.02)
63)	KOTRA 해외시장뉴스(2019.01.09.)
64)	2019 국별 진출전략 말레이시아편, KOTRA(2019)
65)	KOTRA 해외시장뉴스(2019.09.10.)
66)	KOTRA 해외시장뉴스(2019.09.10.), 매일경제 뉴스(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16/09/680819/)
67)	산통부 보도자료(2019.09.02.)
68)	한겨레 신문기사(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802301.html)
69)	수입규제 관리카드표 말레이시아,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KOTRA 해외시장뉴스(2019,04,02., 2019.09.16.), 2019 국별 진출전략 말레이시아편, KOTRA(2019),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말레이시아 퉁상무역부(MITI), 코트라, 말레이시아 반덤핑조치 관련 신문기사 자료 등 참고
70)	FTA 강국, KOREA(http://www.fta.go.kr/), 산통부 보도자료(2019.11.05.), KOTRA 해외시장뉴스 (2019.01.09.)

# 참고자료

71)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2019), KOTRA 해외시장뉴스(2019.11,11.), 아세안 비관세조치 보고서(Non-Tariff Measures in ASEAN-An Update) 말레이시아편, ERIA(동아시아·아세안경제연구소)(2019), ASEAN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과 대응방안, KIEP(2010), UNCTAD의 비관세장벽 DB에 나타는 TBT 정보의 현황과 시사점, 국가기술표준원·KSA(2018),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KIEF(2017), UACTAD TRAINS NTM DB 등
72)	KOTRA 해외시장뉴스(2019.11.11.), 동아시아 · 아세안경제연구소(2019)
73)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 FTA 강국 KOREA(https://www.fta.go.kr/), SPS 정보관리시스템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koreasps.kr/), UNCTAD의 비관세장벽 DB에 나타나는 TBT 정보의 현황과 시사점, 국가기술표준원 · KSA(2018
74)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75), 76)	World Trade Organization(http://www.wto.org/)
77)	Malaysia MITI(https://www.miti.gov.my/)
78)	2018년 무역장벽보고서, KOTRA(2018)
79)	2019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2019)
80)	2019 국별 진출전략 말레이시아편, KOTRA(2019)
81)	2019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2019)
82)	환경규제종합정보망(https://www.compass.or.kr/)
83), 84)	2019 국별 진출전략 말레이시아편, KOTRA
85)~88)	2019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2019)
89)	KOTRA 해외시장 뉴스
90)~92)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말레이시아편, KIPF(2016)
93)	글로벌 정보보호 산업시장 동향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2018)
94)	아시아경제 보도자료(https://www.asiae.co.kr/article/2019061111081545301)
95)	말레이시아 기업애로조사, 관세청(2017~2018)
96), 97)	FTA 원산지증명서 오류 사례집, 관세청 · 서울본부세관(2018)
98)	 수출입물류정보 커뮤니티(https://www.forwarder.kr/)